

#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인쇄/1999년 2월 23일

발행/1999년 2월 25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통일정책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9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

ISBN 89-87509-68-0

7,500원

연구보고서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 성 훈

민족통일연구원

#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에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정보생산의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군사적 투명성 제고에 관련된 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스라엘·이집트간에 진행된 시나이반도의 경험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을 비교·검토하고 남북한이 상호협력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시나이반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원칙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제고는 정보의 생산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정보생산의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기본전략과 종합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전략은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점진적·포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구성된다. 종합전략은 남북한의 군비통제와 군축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기본전략에서 개발된 정보생산방안들을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배치한 단계별 실천전략이다.

## 1. 군사적 투명성 제고: 이론과 사례

상호협력은 분쟁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 정책을 조정하는 목표지향적 행위이다.

투명성의 제고란 서로에 대한 정보생산욕구가 존재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상대방의

자신에 관한 정보공개활동 및 제3자에 의한 정보지원활동을 통해 투명성 제고의 대상, 즉 서로에 대한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투명성의 요체는 투명성 제고의 대상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1973년 10월부터 시나이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6개항 협정, 시나이정전협정 I, 시나이정전협정 II 및 평화협정 등 네 가지 협정을 합의·이행하였다. 시나이반도의 사례는 20년이 넘게 지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지역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남북한이 고려해야 할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양측이 정전협정을 이행하면서 독자적으로 실천하거나 유엔비상군과 미국 등 제3자가 실시한 다양한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의 협상과 이행과정을 정치·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능성

북한정권과 군부의 폐쇄성, 남북한 정보수집능력의 불균형 및 시나이반도와 한반도 사이의 차이점이 남북한이 상호협력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정권과 군부의 폐쇄성은 북한 군사정책의 모호성을 증대하고 남북한 군사협상에서 조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증을 어렵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북한이 인적 정보에 앞선 반면, 남한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영상정보와 신호정보에 앞서 있다는 정보수집능력의 불균형도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시나이반도와 한반도 사이에 환경·지리·군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시나이반도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남북관계가 지난 수 년간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군사대화의 재개를 가져올 것이며, 이 경우 군사적 위협이 크지 않는 투명성 제고방안은 양측이 우선적으로 합의·이행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의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 군비통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우선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북한이 흡수통일의 위협에서 점차 벗어남으로써 남한과의 군사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군사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4자회담이 진행중에 있으며, 남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 가입함으로써 군축협상에 보다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나이반도와 한반도 사이에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 3.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 (1) 원칙적 고려사항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양측이 군사적 투명성의 제고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안보를 증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고 군사협력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제3자(국제기구나 제3국)가 남북한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 노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자의 정치·경제·기술·군사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협상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인내를 갖고 협상의 통과 추진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2) 기능적 고려사항

기능적·기술적 차원에서는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지리·환경·정치적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성 제고기술과 인적 자원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상호보완적으로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셋째, 제3자의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투명성 제고활동의 주체를 다층화하고 사용되는 기술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양측이 보유한 국가기술수단(NTM)의 활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군인 대신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이 양측 군대간의 직접 조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과정을 지원하는 제3자로서 특정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반도투명성 제고기구」(Korean Peninsula Transparency Enhancement Organization: KTEO)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KTEO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콘소시엄으로써 4자회담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설립될 수 있다.



#### 4.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구상

##### (1) 정보생산활동의 분류

정보생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생산주체가 제1인칭 정보수집자인 경우 감시(monitring)가, 정보수집대상자인 제2인칭 상대방인 경우 입증(demonstration)이 정보생산활동이 된다. 정보생산활동은 주체와 대상간에서 일방적으로(unilaterally) 혹은 상호협력적으로(cooperatively) 이루어지는가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정보생산활동을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일방적 감시(unilateral monitoring: UM), ②협력적 감시(cooperative monitoring: CM), ③일방적 입증(unilateral demonstration: UD), ④협력적 입증(cooperative demonstration: CD). 감시와 입증 활동을 상호협력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수집대상자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정보생산을 통한 투명성의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지도와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인지도는 정보생산주체가 정보생산대상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다. 인센티브는 정보생산주체로 하여금 정보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정보생산주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남북한간의 투명성 제고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제1인칭 정보 수집자인 남한의 관점을 기본관점으로 삼는다. 즉 남한의 감시와 상대방인 북한의 입증활동을 통해 북한의 의도와 행위, 정책 및 태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전략구상의 초점을 맞춘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이 UM 과 CM 활동이며, 남한을 향한 북한의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활동이 UD와 CD 활동이다.

(가) 기본전략: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활성화

개별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의 구도를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기본구도를 바탕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과 더불어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남한이 북한에 대해 그리고 제3자가 남북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차원의 반대급부 및 남북한이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많은 방안들이 남북한의 협력정도가 높아짐에 비례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단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점진적 개념을 따르고 있다.

<표 1> 한반도에서 개별 정보생산활동 활성화 구도

	인지도 향상	인센티브 제고
U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M 능력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인센티브 상시 존재</li> <li>◦ 남북관계 긴장고조시 또는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할수록 인센티브 증대</li> </ul>

	인지도 향상	인센티브 제고
C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협력: 정보수집능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OSI</li> <li>- OSS, OSD</li> <li>- 협력공중검사</li> </ul> </li> <li>◦ 간접적 협력: 감시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목표 조정</li> <li>- 수동적·능동적 방해금지방안</li> <li>- 다양한 식별조치</li> <li>- 훼손방지번호표</li> <li>- 위치지정방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인센티브 상시 존재</li> <li>◦ 남북관계 긴장고조시 또는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할수록 인센티브 증대</li> <li>◦ 제3자로부터의 인센티브 제공 중요</li> <li>◦ 부수정보수집 제한 위한 조치 필요</li> </ul>
U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자신에 대한 상황 대부분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방안: 입증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고 손해가 없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에 의한 보상 가능</li> </ul> </li> <li>◦ 소극적 방안: 입증을 통해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비난·규제를 자제</li> <li>◦ 입증방안에 대한 국내 관련세력의 지지획득이 필요</li> <li>◦ 남한의 UD를 통해 북한의 UD 유도</li> </ul>
C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정보공개 목표 선정능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D와 기본적으로 유사</li> <li>◦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등한 입증방안 실시 (상호 의무이행에 의한 보상)</li> </ul>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여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여러 분야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주목한다.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군사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외교·경

제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 문제를 기술적, 기능적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다.

#### (나) 종합전략: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통합운동

종합전략은 상호협력을 염두에 두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행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전략이다. 종합전략은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이행수준을 기준으로 다섯가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세부 정보생산방안들을 실현가능한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제1단계는 투명성 제고의 초기단계로서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이 실시된다. 제2단계는 군사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단계로서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방안들이 실시된다. 제1, 2단계에서는 군비통제와 군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제3단계는 군비통제 단계로서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를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이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일부 공격용무기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4단계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주요 공격용무기의 감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이상의 네 단계에 걸친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된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방법과 내용 .....	5
II. 군사적 투명성 제고: 이론과 사례 .....	8
1. 이론적 검토 .....	8
가. 상호협력 .....	8
나. 투명성 .....	10
2. 시나이반도의 사례분석 .....	13
가. 평화조약 체결 이전 .....	15
나.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	37
III.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능성 .....	48
1. 부정적 요인 .....	48
가. 북한의 폐쇄성 .....	48
나.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불균형 .....	51
다.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	53
2. 긍정적 요인 .....	56
가. 남북관계 개선가능성 .....	56
나. 한반도 군비통제에 우호적 여건 조성 .....	59
다. 시나이반도 사례의 긍정적 교훈 .....	65

<b>IV.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수립시 고려사항</b> .....	71
1. 원칙적 고려사항 .....	71
가.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 입장 정립 .....	71
나. 점진적, 단계적 접근 .....	73
다. 제3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	74
라. 건설적인 협상방향 설정 .....	78
2. 기능적 고려사항 .....	79
가.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극복 .....	79
나. 기술적·인적 요소의 복합체제 .....	80
다. 활동주체의 다층화, 기술수단의 다양화 .....	82
라. NTM 활용의 묵시적 인정 .....	84
마. 준수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	86
바. 남북한의 민간인 활용 .....	87
사. 제3자의 선정 .....	88
<b>V.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구상</b> .....	90
1. 정보생산활동의 분류 .....	90
가. 일방적 감시(UM) .....	92
나. 협력적 감시(CM) .....	93
다. 일방적 입증(UD) .....	100
라. 협력적 입증(CD) .....	100
마. 정보생산활동간의 상호관계 .....	109
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	112
가. 기본전략: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활성화 .....	114
나. 종합전략: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통합 운용 .....	140

VI. 결 론 .....	149
약어정리 .....	151
참고문헌 .....	154
부 록 .....	162

## 도 표 목 차

<그림 2-1> 제 I 협정하에서의 시나이반도 .....	18
<그림 2-2> 제 II 협정하에서의 시나이반도 .....	21
<그림 2-3> 평화조약하에서의 시나이반도 .....	40
<표 2-1> 미국·유엔의 감시기구간 협조관계 .....	33
<표 2-2> 시나이정전협정 I, II의 검증체계 .....	34
<표 2-3>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의 복합적 검증체계 .....	45
<표 3-1>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비교 .....	52
<표 3-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가능성 진단 .....	69
<표 5-1> 정보생산활동별 실시가능한 방안의 사례 .....	108
<표 5-2> 한반도에서 개별 정보생산활동 활성화 구도 .....	114
<표 5-3> 한반도에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세부 정보생산방안들 .....	136
<표 5-4> 한반도에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세부 정보생산방안들 ...	137



## I. 서 론

### 1. 연구배경

대결보다는 화해, 봉쇄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대북노선을 견지하는 남한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지난 5년간에 비해 다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정책을 포기하며,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3대 원칙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sup>1)</sup>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의 성사, 7년간 중단되었던 북한·유엔사간의 대화 재개, 1998년 6월 하순에 발생한 잠수정사건에서 보여준 북한의 자제된 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군사력 위주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견지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8월 중순 영변 북쪽에 건설중인 대규모의 지하구조물이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되어 다시 한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야기되었다.<sup>2)</sup> 또한 북한은 8월 말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일면 모순되어 보이는 북한의 정책은 햇볕론에 근거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출범한 남한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1)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1998).

2) David Sanger, "North Korea site an A-Bomb plant, U.S. agencies say," *New York Times*, August 17, 1998.

## 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간에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군비통제와 군축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쌍방 군사력의 제한과 축소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겨냥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는 무력에 대한 적절한 규제없이 진정한 신뢰와 평화가 조성될 수 없는 것이다.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는 한반도에서 뿐 아니라 지역안보질서의 재편과정에 있는 동북아에서도 핵심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와 지역안보 차원에서 군비통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에 대비한 남북한의 경험과 준비상황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1991년 1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비통제협상을 진행한 바 없으며 제한적인 신뢰구축방안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1992년 후반 북한 핵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모두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당시 초보적인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양측 군사당국자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핵의혹 해소를 위한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그럴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양측의 군사력을 운용적·구조적으로 통제하기에 앞서 군사적 의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현가능성도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군비통

제와 군축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방법이라는 전제하에,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북한 양측의 군사적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통제의 기반을 조성할 뿐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포괄적인 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상호협력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구상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행 방식(관련 당사자들간의 협력에 의해 혹은 독자적으로 실시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일방적 투명성 제고방안(unilateral transparency enhancing measure: UTEM)과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cooperative transparency enhancing measure: C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UTEM은 상호협력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행하거나 상호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상대방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상호협력의 개념에 바탕으로 두고 UTEM과 CTEM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전략, 즉 포괄적 투명성 제고전략(comprehensive transparency enhancing strategy: CTES)을 제시하고자 한다. CTES를 구성하는 일부 방안은 기존 협정의 이행이나 새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남북한 양측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증대하여 긴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즉시 합

#### 4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의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CTES의 다른 방안들은 기존 합의사항이나 새로운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조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방안(verification measure)이 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군비통제문헌에 나타나는 몇 가지 관련 용어의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감시(monitoring)는 주권국가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타국과의 조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일방적으로 항시 진행되는 정보수집활동이다. 통상 “국가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이라고 칭하는 자국보유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감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대국 뿐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검증(verification)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한된 정보생산활동이다. 검증을 위해서는 조약에서 규정한 검증방안 이외에 NTM도 사용할 수 있다. 군사적 투명성을 증대한다는 것은 적대당사국들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투명성의 증대는 신뢰의 증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상호협력에 바탕을 두고 이행되는 투명성 제고방안, 즉 CTES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 CBM)으로 간주된다.

CTES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의 적대행위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여 분쟁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분쟁발발시 피해를 줄인다. 둘째, 적대당사국간의 위기수준을 낮춤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적대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쌍방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은 남북한이 현 상황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전략임과 동시에, 앞으로 체결될 군비통제조약의 검증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에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정전협정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CTES는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과 내용

군사적 투명성 제고라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과학기술적 지식과 정책의 집행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정책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적 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긴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특히 필자가 1998년 8월부터 1999년 1월까지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sup>3)</sup> 초청으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연구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본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필자는 샌디아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적·경험적 자산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

---

3) 샌디아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는 미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직원은 8,000명 정도이고 연간 예산은 약 13억불이다. 샌디아연구소는 핵무기의 제조에 관한 연구와 생산을 주요 임무로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보다 다양한 국제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로 기술적, 정책적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샌디아연구소의 부설인 협력감시센터(Cooperative Monitoring Center)는 상호협력적 감시를 지역분쟁을 해결하고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감시기술과 활용방안을 개발중에 있다.

## 6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한편, 본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의 유관기관과 접촉하여 군사적 투명성 및 검증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당면한 문제점을 여러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국방부 군비검증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통일원 통일정책실, 남북회담사무국, 과기부산하 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관련 담당자들과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일차적으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와 함께 군비통제협상을 촉진하고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측면도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제I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II장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상호협력과 투명성의 개념을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검토하였고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동의 시나이반도에서 진행된 평화정착과정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조약체결과 이행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적 긴장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바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검증체제를 가동하여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을 선도한 시나이반도의 경험은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이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역사적 사례이다. 제III장에서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상호협력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진단하였다. 먼저 부정적 요인들을 검토한 후 이 보다 우세한 긍정적 요인들이 생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제IV장에서는 시나이반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원칙적 차원의 고려사항을 논하고, 그 다음 기술적, 기능적 차원의 세부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제V장에서는 정보생산속구가 존재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정보를 생산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을 독창적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기본전략과 종합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VI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의 성과와 의의 그리고 한계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 II. 군사적 투명성 제고: 이론과 사례

### 1. 이론적 검토

본 절에서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의 기본 개념인 상호협력과 투명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실제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론적으로 불확실한 점이 없어야만 개념에 의거하여 성취하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상호협력

많은 학자들이 협력은 “행위자들이 정책조정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상대방의 실제 혹은 예측된 선호도에 맞출 때 발생한다”<sup>4)</sup>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정책조정이란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있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도록 자신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관계에서 협력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상대방의 이익추구 노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조화롭게 그들의 정책을 조율할 때 발생한다.”<sup>5)</sup>

---

4) 영어원문은, “[cooperation] occurs when actors adjust their behavior to the actual or anticipated preferences of others, through a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C. Lindblom,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p. 227. Helen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World Politics* (April 1992), p. 467에서 재인용.

5) 영어원문은, “Cooperation occu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states



이러한 협력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sup>6)</sup> 첫째, 행위자들의 이성적인 행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행위자가 같은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둘째, 협력을 통해 행위자들은 일정한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득은 그 규모나 성질에 있어서 모든 행위자에게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협력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협력의 동기는 단순히 상대방을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기대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은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정책을 조정하는 목표지향적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sup>7)</sup> 협력에 대한 이와같은 정의는 대다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정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공동이익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상호이익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전략은 특정 상황에서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

---

adjust their policies in a coordinated way, such that each state's efforts to pursue its interests facilitate rather than hinder the efforts of other state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Steve Weber,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 6.

- 6) Helen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pp. 467~468.
- 7)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은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줄이거나 상대방이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때 발생하는 경쟁(competition) 또는 갈등(conflict)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한편 군비통제 차원에서 협력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정책조정을, 경쟁은 군비증강이나 동맹형성을 의미한다. Charles Glaser,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4/1995), p. 51.

하에 해당 상황에 내재해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피해가 면서 협력에 우호적인 조건과 요인들을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8)</sup>

대부분의 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개발된 전략들이다. 상호주의의 요체는 “조건성”(contingency)과 “동등성”(equivalence)이다.<sup>9)</sup> 조건성은 상호주의하에서의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보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보상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행위는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협력에는 협력으로 위반에는 위반으로 대응한다는 뜻이다. 동등성은 상호주의에 의거한 행위의 결과 행위자들에 대한 이익배분이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게임의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 행위자들의 힘의 우위)에 따라 이익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모든 행위자가 상호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적절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 연구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협력전략인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ity in tension reduction: GRIT) 전략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sup>10)</sup>

## 나. 투명성

국제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권위있는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조차 공통된 정

8) Alexander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in Alexander George,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692.

9) Robert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pp. 5~7.

10) 협력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p>11)</sup> 학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투명성을 다르게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갤러거(Nancy Gallagher)는 투명성의 증대를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반면에, 플로리니(Ann Florini)는 자신의 행위와 능력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3)</sup> 미첼(Ronald Mitchell)은 투명성의 제고를 레짐에 관련된 정기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보의 획득과 분석 및 배포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up>14)</sup> 투명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서야 학계에서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플로리니(Ann Florini)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비교분석한 논문에서, 투명성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적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sup>15)</sup> 첫째, 검증을 통해 위반행위의 탐지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위반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관련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투명성 제고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자신의 활동과 현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갤러거와 플로리니의 관점을 종합하여 보다 포괄적

- 
- 11) 오레곤대학교 미첼(Ronald Mitchell)교수와의 의견교환, 1998년 10월 11일.  
 12) Nancy Gallagher,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why 'how much?' is not enough,"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18, no.2 (August 1997), p. 139.  
 13) Ann Florini, "A new role for transparenc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18, no.2 (August 1997), p. 51.  
 14) Ronald Mitchell, "Source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2 (1998), p. 109.  
 15) Ann Florini, "A new role for transparency," pp. 59~60.

으로 투명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투명성의 제고란 서로에 대한 정보생산욕구가 존재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상대방의 자신에 관한 정보공개활동 및 제3자에 의한 정보지원활동을 통해 투명성 제고의 대상, 즉 서로에 대한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투명성의 요체는 투명성 제고의 대상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다. 본 연구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정보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제3자의 정보지원활동은 부수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생산활동의 두 가지 기준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는가로 설정하였다. “누가”(from whom)는 정보생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의미한다. 정보생산주체가 제1인칭 정보수집자인 경우 “감시”(monitoring)가, 정보수집대상자인 제2인칭 상대방인 경우 “입증”(demonstration)이 정보생산활동이 된다. 감시와 입증 활동을 통해 정보수집대상자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어떻게”(how)는 정보생산활동이 주체와 대상간에서 “일방적으로”(unilaterally) 혹은 “상호협력적으로”(cooperatively) 이루어지는가를 말한다.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제3자의 정보지원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보생산활동을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일방적 감시(unilateral monitoring: UM), ②협력적 감시(cooperative monitoring: CM), ③일방적 입증(unilateral demonstration: UD), ④협력적 입증(cooperative demonstration: CD). 각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V장에서 논하겠다.

정보생산을 통한 투명성의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지도”와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sup>16)</sup> “인지도”(knowledge level)는 정보생

16) Ronald Mitchell, “Sources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s in international regimes,” pp. 116, 118, 121.

산주체가 정보생산대상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다.<sup>17)</sup> “인센티브”(incentives)는 정보생산주체로 하여금 정보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정보생산주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V장에서 논하겠다.

## 2. 시나이반도의 사례분석

제2절에서는 상호협력에 기초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표적 사례로서 1973년 10월 전쟁을 종식하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합의·이행한 세 차례의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분석할 것이다. 시나이반도의 사례는 20년이 넘게 지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정치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상호협력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온 시나이반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sup>18)</sup> 양국은 일방적인 투명성 제고방안도 상호협력의 틀내에서 활용하였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시나이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증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6개항 협정, 시나이

17) 미첼(Ronald Mitchell)은 인지도를 “능력”(capacity)이라고 표현했다. Ibid., p. 116; 그러나 이는 감시의 경우 정보생산자의 기술적, 인적 감시능력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생산주체의 정보생산목표에 대한 상황파악의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인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8) 시나이정전협정에 대한 국내학계의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빈약한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로는 남만권·김명진, “시나이협정 모델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방논집」, 제32호 (1995년 겨울), pp. 167~198 참조.

정전협정 I, 시나이정전협정 II 및 평화협정 등 네 가지 협정을 합의·이행하였다.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를<sup>19)</sup> 점령하였다. 1973년 10월 아랍동맹은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욘키퍼 전쟁(Yom Kippur War)을 일으켰다. 전쟁이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되었기에 일명 10월 전쟁이라고도 한다. 10월 전쟁은 1973년 11월 11일 6개항 협정(Six Point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6개항 협정을 대체하고 보다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무장관 키신저(Henry Kissinger)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시나이정전협정 I, II의 산파 역할을 했던 키신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두 당사자가 중요성은 크지 않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경우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점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sup>20)</sup> 따라서 시나이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점진적 접근방법의 잇점은 분쟁당사자들이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개발하면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 시나이반도는 수에즈운하(이집트 접경), 지중해, 수에즈만, 아카바만 및 이스라엘 국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3각형 형태의 반도이다. 그 규모는 수에즈운하에서 이스라엘 국경까지 190km, 수에즈운하를 따라 그레이트 비터 호수(Great Bitter Lakes)까지 145km, 지중해변에서 시나이반도의 남단까지 370km에 이른다. 지형은 매우 매마르고 구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시나이반도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세 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동통로가 있는데, 특히 중심부의 기디(Giddi)와 미틀라(Mitla) 통로가 대규모 기계화부대의 이동에 적합한 주요 통로로서 시나이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20) Henry Kissinger, *Years of Upheaval* (Boston: Little Brown, 1982), p. 636.

## 가. 평화조약 체결 이전

### (1) 6개항 협정

10월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유엔안보리를 소집하여 결의안 338호를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338호에서 전쟁을 중단할 것과 1967년 11월 22일 6일전쟁이 끝나고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339호에서 중전을 재차 촉구하면서 사무총장에게 유엔감시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자 이집트의 요청으로 유엔안보리가 10월 24일 재소집되어 유엔휴전감독기구(UN Truce Supervisory Organization: UNTSO) 요원의 배치와 유엔비상군(UN Emergency Force: UNEF) II의 파견을 결정하였으며,<sup>21)</sup> 전쟁은 그 다음날인 10월 25일 중단되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UNEF II 사령관을 의장으로 하는 협상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종전협상을 진행하였다. 1973년 11월 11일 협상이 타결되어 6개항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은 카이로에서 수에즈간 도로의 101km 지점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일명 “101 킬로미터협정”(Kilometer 101 Agreement)이라고도 불리운다.

6개항 협정에는 양측이 적대상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명되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이집트 제3군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둘째, 이스라엘군이 카이로에서 90km 떨어진 전략지점에 주둔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집트는

21) 후에 체결되는 시나이정전협정 II를 이행할 당시에도 124명의 UNTSO 요원이 주둔하였다.

제3군의 포위상태를 오랜 동안 그대로 둘 수 없었고 영토회복이 절실한 과제였다. 이스라엘 역시 100,000명 이상의 유지병력이 필요한 기존의 방어선을 오랜 동안 고수할 수 없었다. 동원체제에 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과다병력을 장기간 동원하는 것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6개항 협정을 새로운 정전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즉각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sup>22)</sup>

## (2) 시나이정전협정 I

시나이정전협정 I(이하 제 I 협정)<sup>23)</sup>은 1974년 1월 18일 체결되었다. 제 I 협정의 성공적 체결은 왕복외교(shuttle diplomacy)를 통해 열성을 갖고 참여한 키신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키신저의 점진적 접근방법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입장차이를 해소하고 타협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이집트 육군원수였던 엘가마시(El-Gamasy) 장군은 군사적 차원의 대화가 매 단계마다 중단되었지만 키신저의 점진적 외교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24)</sup> 키신저는 양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타협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설득, 회유, 압력 등 다양한 외교적 협상기술을 사용하였다.

제 I 협정에는 기습공격의 기회를 제거하고 우발적 전쟁의 발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합의되었다. 제 I 협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군은 수에즈운하에서 20km 정도 후방으로 철수하였으며 양

22)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 올슨(John Olsen)과의 의견교환, 1998년 10월 19일.

23) The Sinai Separation of Forces Agreement.

24) Mohamed Abdel Ghani El-Gamasy, *The October War: Memoirs of Field Marshal El-Gamasy of Egypt*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1993), p. 326.



측사이에 비무장완충지대와 군사력배치제한지대가 설정되었다. 완충지대는 폭이 6~10km, 길이가 165km이며 북쪽의 소금기 있는 습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모래언덕이다.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한 곳씩 설치된 배치제한지대의 폭도 6~10km이며 배치가능한 무력의 상한선은 병력 7,000명, 탱크 300대, 중거리야포 72문이었다. 특히 상대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무기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 I 협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1974년 1월 25일 시작되어 같은 해 3월 4일 완료되었다.

유엔과 미국이 제3자로서 조약이행에 참여했다는 것이 제 I 협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시나이협정의 초기 단계부터 제3자인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집트 양측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sup>25)</sup>

제 I 협정의 검증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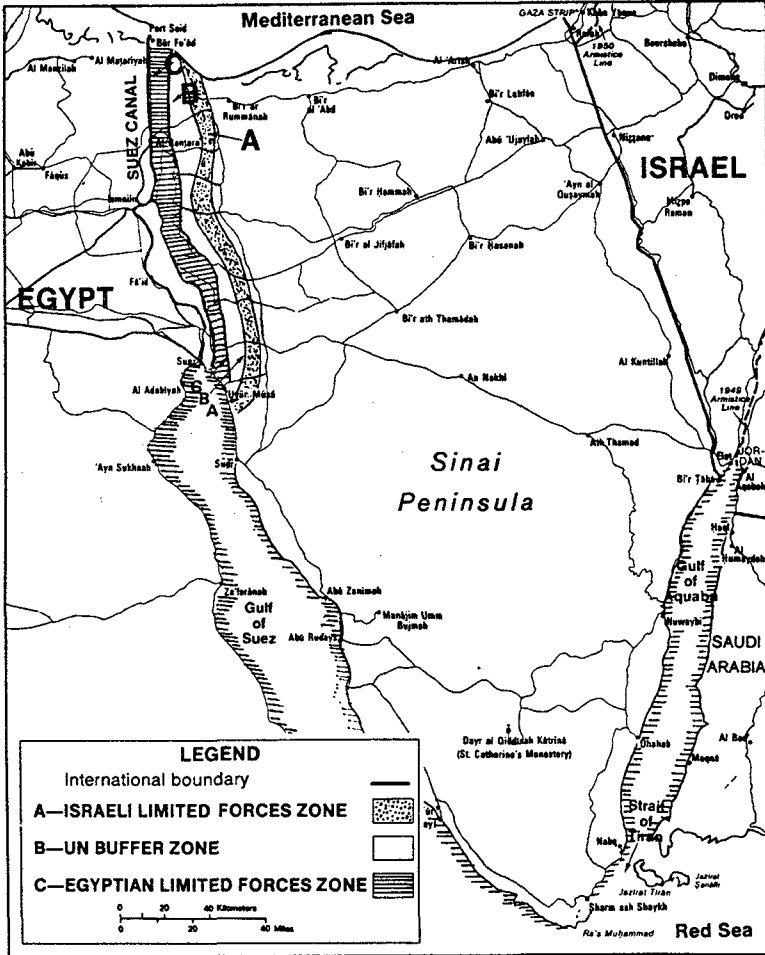
1. 양측이 기존에 수행해 온 NTM에 의한 정찰, 즉 협정이 관할하는 지역내에서의 자국감시수단 운영 및 공중정찰은 그대로 허용되었다.<sup>26)</sup>

2. UNEF II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과정에 대한 감독 및 비무장 완충지대와 배치제한지대내의 병력과 무기에 대한 현장검사, 검문소 운영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였다. UNEF II의 병력은 정원이 7,000명으로 인가되었으나 일부 국가가 철수하고 스웨덴, 인도네시아, 가나, 세네갈 및 핀란드를 중심으로 4,000명선을 유지하였다. UNEF II의 활

25)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Ottawa: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Canada, 1987), pp. 38~39.

26) NTM은 협력적 감시방안은 아니지만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과정에서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제 I 협정하에서의 시나이반도



출처: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Occasional Paper 2*,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89, p. 6.

동은 기술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인적자산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스라엘·이집트의 연락장교가 UNEF II의 검사활동에 동행하였으며, 이는 양국의 신뢰증진에 기여하였다.

3. 미국은 정기적으로 고공 정찰비행을 실시하여 배치제한지대의 군사력 배치상황을 감시하였고 관련 정보를 UNEF II와 이스라엘·이집트에 제공하였다.

제 I 협정은 이스라엘이 “기디”(Giddi)와 “미틀라”(Mitla) 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협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sup>27)</sup> 그러나 제 I 협정은 6개월 협정보다 안정된 관계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제 I 협정을 통해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면서 상대의 의중을 탐색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적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 I 협정은 제3자에 의한 검증과 공증정찰을 허용한 선례가 되었다.

### (3) 시나이정전협정 II

제 I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양측간의 신뢰가 조성되자 시나이정전협정 II(이하 제II협정)가<sup>28)</sup> 1975년 9월 4일 체결되어 1976년 2월 25일 발효되었다. 제II협정의 쟁점은 기디와 미틀라 통로에 대한 통제권 장악과 이스라엘이 운영중인 정보수집소의 철수 문제였다. 제 II 협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이 두 통로에서 철수하여 방어선을 동쪽으로 옮김으로써, 제 I 협정에 비해 폭은 두 배, 면적은 네 배가 되는 광범위한 완충지대가 창설되었다. 이집트의 배치제한지대도 평균폭이

27)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SAND96-2574 (Albuquerque, New Mexic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June 1998), pp. 24~25.

28) The Sinai Interim Agreement.

수에즈운하에서부터 동쪽으로 30km 정도로 확장되었다. 배치제한지대내에서는 병력 8,000명, 탱크 75대, 단거리야포 72문(최대구경 120mm, 최대사거리 12km)으로 제한되었다. 완충지대를 넘어서 상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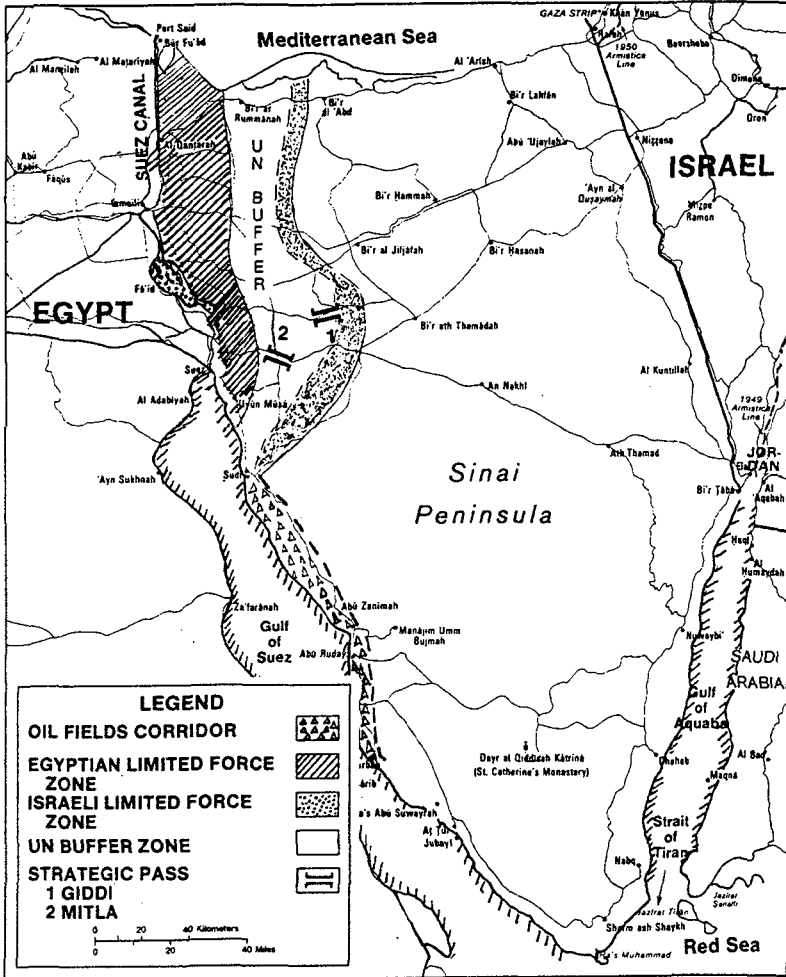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디통로 서쪽 지역에 위치하여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국가감시소(national surveillance station: NSS)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집트도 기디통로의 동쪽 끝에 감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허용되었다. 미국은 1,300만불을 들여서 이집트 정부에 국가감시소를 건설해주었다. 결국 제Ⅱ협정의 핵심내용은 기디와 미트라 통로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대가로 유엔과 미군이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이집트가 자체 국가감시소를 운용하는 것이었다.<sup>29)</sup>

이스라엘 국방장관 페레스(Shimon Peres)는 1975년 3월 이스라엘의 전략적 중심이 좁은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제시된 제Ⅱ협정의 초안이 6시간의 “조기경보”(early warning)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최소한 12시간 이전에 침략여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제Ⅱ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기경보개념이 구체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기디와 미트라 통로에 대한 지상감시지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기경보능력이 논의의 기준이 되었다. 양측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는 최소 조기경보 능력에 대한 공개적 논의는 없었으나 이스라엘의 경우 적어도 12시간을 확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30)</sup>

29) 이스라엘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양국간 군사협력, 원유확보 및 소련의 중동개입시 공동대응 등의 분야에서 별도의 지원과 양보를 획득하였다.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 29.

30)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 Michael Vannoni와 의견교환, 1998년 8월 20일.

<그림 2-2> 제II협정하에서의 시나이반도



출처: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Occasional Paper 2*,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89, p. 8.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요청으로 미국이 검증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제II협정의 부록에 따르면 미국이 수행하도록 부여받은 세 가지 중요한 검증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완충 지대의 미틀라와 기디 통로지역 감시, ②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가감시소 운영 현황에 대한 감독, ③제II협정의 관할영역에 대해 7~10일 간격으로 공중정찰 실시. 사실 미국의 참여결정이 시나이 제II협정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미행정부가 이 세 가지 임무수행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제II협정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sup>31)</sup>

미국은 제II협정에 의거하여 기디와 미틀라를 중심으로 한 감시대상지역에서 지상감시와 조기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975년 11월 14일 미대통령령으로 시나이지원단(Sinai Support Mission: SSM)을 창설하였다. SSM은 포드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결정서(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313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SSM은 감시지역과 통로에 대한 무단침범이나 이에 관련된 준비상황을 이스라엘, 이집트 및 유엔에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SSM 본부는 미국무성에 위치했으며 1982년 9월에 해체될 때까지 미대통령의 특사가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단장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시나이반도 문제에 관한 정부부처간위원회(Sinai Interagency Board)의 자문을 받았다.

SSM의 최우선 임무는 지상감시센서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통신망을 설치할 시나이야전파견대(Sinai Field Mission: SFM)를 구성

---

31)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 34.

하는 것이었다. 미행정부는 SFM이 수행할 감시활동임무를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의뢰하였다.<sup>32)</sup> 민간기업을 선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이스라엘이 당시 국방장관 페레스(Shimon Peres)의 주도아래 이집트의 기습공격에 대비하여 완충지대에 미국 민간인을 상주시켜 조기경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추진하였다.<sup>33)</sup> 둘째, 이스라엘이 점령지역을 유엔에 이양할 예정일인 1976년 2월 22일 이전에 감시활동준비를 마치도록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협상의 주역인 키신저가 제II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미군주둔 문제에 반대하였다.<sup>34)</sup> 그는 대체적으로 시나이반도에 미국인이 상주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넷째, 미의회도 시나이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우려했으며 미행정부의 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하였다.<sup>35)</sup> 월남이 1976년 5월 패망한 이후 미의회가 군사개입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미의회는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국방부와 정보부의 현역직원을 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SM의 창설을 승인하였다.<sup>36)</sup>

SFM이 감시를 담당할 지역은 총 620km<sup>2</sup>이다. 여기에는 약 12.5마일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기디와 미틀라 두 통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가감시소 및 기타 소규모의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다. SFM은

32) 텍사스주의 델라스에 본부를 둔 E-Systems사와 1976년 1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E-Systems사는 전자장비와 항공기부품의 생산과 개발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다.

33)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 28.

34) Ibid., pp. 28~29.

35) Ibid., p. 35.

36) 그러나 국방부나 정보부서에서 1975년 10월 13일 이전에 은퇴한 직원은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상감시를 위해 모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세 개의 감시소(watch station)와<sup>37)</sup> 네 개의 무인센서지대를<sup>38)</sup> 설치하였다. 무인센서지대의 경우, 조기경보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병참상의 요건을 조사하기 위한 부지조사가 1975년 12월 3일 시작되었으며 예정보다 3일 앞선 1976년 2월 19일 센서설치가 완료되었다. 즉 부지조사에서 센서설치까지 단 2개월 반만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특히 4개의 센서지대 현장에서 모든 센서의 설치를 완료하는 데는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 개의 감시소에는 각각 두 명의 요원이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었다.

SFM은 1976년 2월 2일 활동을 개시하였다. SFM은 SSM의 지상 감시기구로서 20명의 국무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2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미국무부의 매니저급이 책임을 맡았다. SFM은 미 공군의 공중정찰이나 이스라엘·이집트 양국의 NTM 활동과는 별도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SFM이 사용한 감시센서는 특이사항의 발생 시 이를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탐지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감시소와 순찰중인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SFM은 지진파, 음향파, 적외선, 자기, 전자기, 압력, 전기 등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였다.<sup>39)</sup>

37) 원래 4개의 감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및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네 번째 감시소의 설치를 포기하고 순찰활동과 TV 카메라(1977년 설치)로 대신하였다.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p. 40~41.

38) 네 개의 무인센서지대는 각각 Giddi East, Giddi West, Mitla East, Mitla West로 불리운다.

39) 시나이반도에서 사용된 센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p. 42~48 참조.



<무인센서>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다음 여섯가지 무인센서가 사용되었는데, 처음 세 가지는 베트남전에서도 이용된 바 있다.

① 소형지진파센서(miniature seismic intrusion detector: MINISID III)

시나이반도의 지형특성에 가장 적합한 센서이며 감시활동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지표면 바로 밑에 설치한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작동하며 지표면을 이동하는 물체에 의한 진동을 탐지한다. 통상 차량의 경우 300m, 사람의 경우 30m가 탐지거리이지만, 사막에서는 500m, 50m까지로 탐지거리가 확대된다.

② 음향부가센서(acoustic add-on unit: AAU)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향파를 탐지하여 송신하는데, 지진파센서와 함께 사용되었다. 즉 지진파센서가 30초 동안 3회 이상의 신호를 수신하면 음향부가센서가 15초동안 작동하여 관련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신호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였다.

③ 자기센서(magnetic intrusion detector: MAGID)

3~4m 반경내에서 소총을 소지한 사람과 15~20m내에서 25톤 트럭의 존재 여부를 탐지한다. 역시 지진파센서와 연계하여 사용되었다. 즉 지진파센서와 자기센서가 동시에 작동하면 신호를 유발한 물체가 차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자기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으면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었다.

④ 방향성적외선침입센서(directional infra-red intrusion detector: DIRID)

적외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침입과 이동경로를 탐지하였다. 도로 양쪽으로 DIRID를 복수로 설치하여 물체의 침입과 이동방향을 동시에 파악하였다.

⑤ 응력감응케이블센서(strain sensitive cable sensor: SSCS)

물체가 가하는 하중을 이용하여 사람이거나 차량의 이동 여부를 탐지하였다.

⑥ 비디오키메라

기다 통로의 서쪽 끝과 SFM의 본부인 감시센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유인센서>

감시소에 근무하는 감시요원은 무인센서가 보내오는 신호를 수신하면 다음과 같은 유인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성격을 평가하였다.

① 고성능쌍안경, 망원경 및 이미지 증배기기

주간 20km, 야간 5km 정도의 시계를 보유하고 있다.

② 수동형적외선스캐너(passive infrared confirming scanner: PICS)

먼지와 안개 등 시계를 제한하는 자연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외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침입여부를 탐지하였다. PICS는 적외선을 이용한 초기의 탐지기로서 오늘날 사용하는 적외선탐지기의 효시였지만 당시에는 신뢰도가 낮아서 1978년 사용을 중단하였다.

SFM은 미육군이 보유한 것 중에서 비밀품이 아니며 수출도 가능한 평범한 센서를 사용하였다. 미군이 보유한 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집트 양측의 반대는 없었다.<sup>40)</sup> 평균 200~300개의 센서가 상시 배치되었다. 센서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수명은 약 12개월 정도이며 요원과 차량이 주기적으로 센서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였다. 센서의 성능은 불량률이 5% 정도였고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24시간내에 교체가 가능하였다. 미육군은 새로운 센서(예: PICS)를 개발하여 시나이반도에서 성능을 시험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40)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 Michael Vannoni와의 의견교환, 1998년 8월 20일.

대해 이스라엘·이집트 정부로부터 항의나 반대는 없었다. 한편 SFM의 요원들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의 담당지역에 배치된 센서의 성능과 불공정성 여부를 교묘하게 시험했다고 한다.<sup>41)</sup>

설치된 센서가 물체를 탐지하는 경우 정보를 즉각 감시소로 송신하며 감시요원은 수신된 정보를 통해 물체의 침입위치, 이동경로 및 속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시소의 감시요원은 망원경을 이용하여 물체의 정확한 성격을 평가하였다. 감시요원이 부당한 침입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사항을 즉시 SFM 본부(감시센터)로 보고하고 SFM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에 공식으로 서면보고하였다. 같은 보고서가 유엔평화유지군 본부, 이스라엘 정부, 이집트 국방부 및 이스라엘과 이집트 주재 미국대사관에도 동시에 보고되는데, 이러한 보고절차는 5분만에 완료되었다.<sup>42)</sup>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가감시소에도 나중에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미국무부는 시나이협정의 이행상황에 관한 주간·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스라엘·이집트 정부에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시나이 감시시스템의 의사소통 경로를 요약하면 외부로부터의 연락은 직접 본부로, 센서의 신호는 감시소를 거쳐서 감시요원에 의해 본부로 전달되는 이중경로를 갖추었다.<sup>43)</sup>

SFM은 센서의 성능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기술적 자산을 만족스럽게 활용할 수는 없었다.<sup>44)</sup> 예를 들어, SFM은 감시활동의 효과와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요인

41)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 54.

42) Ibid., p. 49.

43)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 Michael Vannoni와의 의견교환, 1998년 8월 11일.

44)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11.

력을 줄이기 위해 감시시스템의 중앙집중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인의 상주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감시인원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감시요원의 대폭감축은 시나이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정치적 약속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1978년 3월 1일 제한된 기능의 중앙감시시스템이 설치되었고 1978년 6월 20일에는 기디 서부지역에 원거리통제가 가능한 주야간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제II협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두 가지의 자체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양측이 완충지대내 기디통로의 양쪽 끝단에 국가감시소를 1개소씩 운영한 것이다. 감시소의 기능은 육안 관측과 전자감시에 국한되었으며 상주인원도 2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호신용무기를 제외한 공격용무기의 보유도 금지되었다.<sup>45)</sup> 두 번째 자체 감시활동은 공중정찰이다. 양국은 자국의 공군기지에서 고정익정찰기를 발진시켜 비무장완충지대의 경계선까지는 자유롭게, 완충지대의 중간선까지는 쌍방이 동의하는 일정에 따라 2대의 비행기가 일주일에 최고 7회 정찰활동을 하도록 허용되었다. 정찰비행은 최저 고도 15,000피트를 유지해야 하지만 탑재장비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었다. 준수분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양국이 NTM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sup>46)</sup>

국가감시소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SFM은 국가감시소를 관측할 수 있는 인접장소에 위치한 건물에서 1명의 연락요원

45)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Occasional Paper 2*,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89, p. 9.

46)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 58.

이 상주하여 24시간 감시소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SFM은 국가감시소내의 금지된 무기의 보유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감시장비의 성능을 검사할 권한은 갖지 않았다.<sup>47)</sup> 국가감시소 내부에 대한 검사는 1달에 1회정도 실시되었으며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도 허용되었다. 이스라엘·이집트는 자국이 보유한 감시장비의 유형과 성능을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였다. SFM은 고도의 감시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이 제II협정 체결 이전에 민감한 감시장비를 철수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48)</sup>

한편 미국은 시나이협정 II에 의거하여 공중정찰임무도 수행하였다. 공중정찰은 7~10일에 1회씩 또한 이집트, 이스라엘 및 UNEF II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되었다. 미국의 정찰활동시에도 이스라엘·이집트 양국의 공중정찰에서와 같이 사용되는 항공기와 탑재센서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 미국은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여 이스라엘, 이집트 및 UNEF II에 똑같이 제공하였다.

SFM이 운영하는 지상조기경보시스템과 이집트·이스라엘의 국가감시소 및 관련 당사자들의 공중정찰이 제II협정의 주요 검증수단이었지만 UNEF II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49)</sup> 유엔은 완충지대에 대한 감시와 배치제한지대내의 양측 군부대에 대한 현장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7개국에서 4,2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다. 4대의 헬리콥터와 3대의 경비행기도 추가되었다. UNEF II는 관측소 운영, 안내 및 감시활동을 수행하였지만 기술적 감시수단을 이용하지는 않

47)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 Michael Vannoni와의 의견교환, 1998년 8월 20일.

48)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p. 52, 59.

49)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14.

왔다. 여기에 124명의 UNTSO 요원도 함께 활동하였다. 제 I 협정하에서 미국은 위반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한 항공정찰정보를<sup>50)</sup> UNEF II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제II협정하에서는 UNEF II가 자유롭게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였다. UNEF II의 요원들은 완충지대 내의 모든 검문소와 관측소를 장악하고 완충지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였다. 아울러 배치제한지대에 대해서는 2주일에 한 번씩 현장검사도 실시하였다.<sup>51)</sup> 미국이 제공하는 항공정찰정보가 이러한 현장검사의 효과를 높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UNEF II는 분쟁당사국 및 SFM 요원들이 완충지대를 방문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동행임무도 수행하였다.

유엔과 SFM 및 이집트·이스라엘의 국가감시소는 구체적인 정보 교환 절차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긴밀한 연계하에 각각의 개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시활동의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sup>52)</sup> 예를 들어, UNEF II 요원은 완충지대내의 모든 허가된 이동에 대해 SFM의 감시요원에게 통보하고 감시요원은 이를 다시 국가감시소(NSS)를 감독하는 SFM 연락요원에게 알렸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차량이 국가감시소로 이동하는 경우 NSS까지는 UNEF II 요원이 안내를 맡지만, UNEF II 요원은 NSS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NSS 입구에서의 차량수색은 SFM 연락요원이 담당하였다. SFM과 UNEF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양측사이에 전혀 문제가 발생

50) SR-71기가 70,000피트 상공에서 한 달에 두 번꼴로 정찰을 실시하였다. Ensio Siilasvuo, "Verification activities in UNEF II in Sinai," *Symposium on Verification of Disarmament in Europe, 1985*, Swedish National Defence Research Institute, p. 71.

51) 검사는 UNTSO 요원들이 실시했으며 이스라엘·이집트 양국의 연락요원이 검사에 동행하였다. *Ibid.*, p. 69.

52)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14.

하지 않았다. 유엔관리들은 두 기구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sup>53)</sup>

SFM의 지상감시시스템은 빈번히 발생하는 배경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나이반도에서는 허용된 행위 또는 자연활동에 의해 하루 평균 200여회의 허위경보가 발생하였다. 배경소음의 구체적 사례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순찰, 보급품 공급활동 및 운동과 같은 사생활, 헬리콥터의 소음과 항공기의 초음속 굉음, 겨울철과 야간의 짙은 안개, 지역내의 비교적 활발한 지진활동, 영양, 들쥐, 조류 등 야생동물의 활동, 시나이반도 지역에 거주하는 80,000여명의 유목민들이 저지른 의도적, 비의도적 간섭행위 등을 들 수 있다.<sup>54)</sup>

SFM의 감시시스템은 이러한 배경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반과 그렇지 않은 위반사항을 성공적으로 구별하였다. SFM은 1976년 2월 22일부터 1980년 1월 25일까지 약 4년간 가동되었는데, 90여건의 위반사실이 보고되었지만(이스라엘 책임 67건, 이집트 책임 2건, 19건의 미확인 비행기 및 2건의 사람에 의한 무단침입) 모두 사소한 문제로서 쉽게 해결되었다.<sup>55)</sup> 이스라엘의 위반 횟수가 많은 것은 SFM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조기경보지역의 일부가 이스라엘의 배치 제한지역과 접해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SFM의 활동비용은 1975년부터 1981년 회계연도까지 총 9,270만불이 소요되었다. 최초 년도에 약 2,500만불이 소요되었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건설비용이었다. 운영유지비로는 매년 1,200만불 정도가 지출

53)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n Evaluation of the U.S. Early Warning Systems in the Sinai*, Report ID-77-11, June 6, 1977.

54) 시나이반도에서 감시시스템의 활동에 부담을 준 소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p. 51~52 참조.

55)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19.

되었다.

제 I 협정에 의거하여 협정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공동위원회는 시나이협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제 II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위원회의 역할은 준수분쟁의 해결과 더불어 SFM과 유엔평화유지군이 제공하는 감시보고서를 접수·평가하는 역할로 확대되었다. 공동위원회는 완충지대에서 UNEF II의 대표를 의장으로 하여 매월 회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였다: ①협정의 이행상황 감독, ②유엔과 SFM이 제출하는 감시활동보고서의 평가 및 준수분쟁 해결, ③부대이동 조율 및 감독, ④현장검사 일정 마련.

제 II 협정의 체결 역시 양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서 관료계급과 일반여론 차원에서는 많은 반대에 직면했었다.<sup>56)</sup> 예를 들어, SFM이 고주파수의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데도 관련 담당자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야당이 이집트와의 어떠한 타협에도 반대한다는 기치아래 정치적 공세를 폈다. 이집트의 경우, 사다트대통령이 1982년 피살된 주요 원인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범이슬람교도 차원의 반대가 있었다.

SSM은 이스라엘·이집트 양국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업무수행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동등성의 원칙이 SSM이 수행한 모든 정책과 절차 그리고 대외관계에서 기본이 되었다. 심지어 임무수행중 현지에서의 물품구입과 SFM 요원들의 휴식처 마련과 같은 등 사소한 사안에서도 엄격히 평등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sup>5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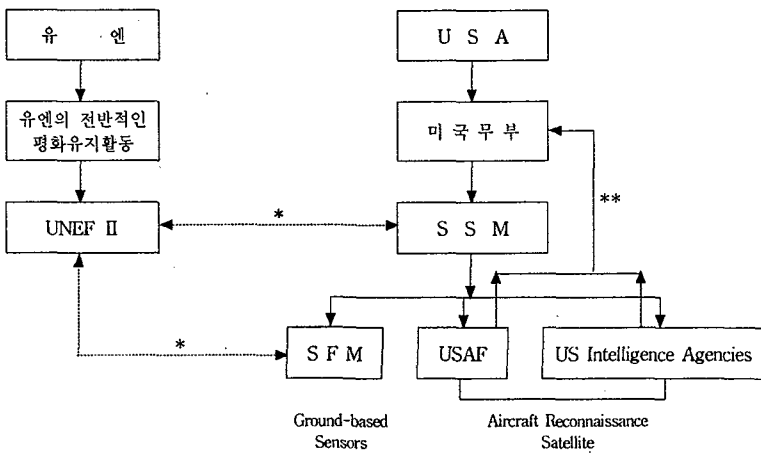
56)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p. 33, 38.

57) *Ibid.*, p. 39.



시나이협정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유엔이 운용한 감시기구간의 관계와 활동내용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 미국·유엔의 감시기구간 협조관계<sup>58)</sup>



———— : 명명계통  
 - - - - - : 유엔과 미국간 협조관계

- \* SSM의 지상감시기구인 SFM의 지상센서가 수집한 정보는 SFM과 SSM을 통해 유엔 및 협정당사자에게 동등하게 공급됨.
- \*\* SSM의 공중정찰기구 역할을 수행한 미공군이 수집한 공중정찰정보와 정보 부서가 확보한 민감한 정보는 미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선별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똑같이 제공됨.

시나이정전협정 I, II에서 사용된 검증시스템을 요약하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59)</sup>

58) 미국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의 Michael Vannoni와의 의견교환, 1998년 8월 7일.  
 59) 본 도표는 다음 논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표 2-2> 시나이정전협정 I, II의 검증체계

구 분	시나이정전협정 I (74.1~75.9)	시나이정전협정 II (75.9~79.3)
<b>A. 지상감시</b>	1) 비무장 완충지대 설정 2) 군사력 배치제한지대 설정	1) 비무장 완충지대 설정 2) 군사력 배치제한지대 설정 3) 이집트 민간인의 수에즈만 운 영에 대한 감시
1) 당사국	- 완충지대와 비무장지대내에서 UNEF II의 활동을 관측·촉진 하기 위해 UNEF II에 자국의 연락작교 배치·동행	- 전략적 조기경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감시소(NSS)를 운영
2) 제3자	- 완충지대에 UNEF II 주둔; 완충 지대와 배치제한지대에서 현장감 사, 검문소 운영, 순찰 실시	1) UNEF II의 완충지대 주둔·관 측소운영·감시, 2주마다 양측 배치제한지대내 군부대에 대한 현장감사 2) UNEF II의 이집트 민간인에 의 한 수에즈만 운영을 감시 3) 완충지대내에서 미국의 지상감 시시스템 운영 a)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SFM이 3개의 유인감시소와 4개의 무인센서지대를 운영 b) SFM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가감시소 운영상태를 검증 (특별감사 포함)
<b>B. 공중감시</b>	- 당사국이나 제3자에 의한 공중 감 시 규정은 없으나 당시 관행이던 공중정찰을 지속	- 협정 관할지역에 대한 공중 정 찰제도 도입
1) 당사국	- 협정관할지역에서의 공중정찰 제한규정은 없음. 각국의 무력 분리선까지 상대방의 간섭없이 비행 실시	- 완충지대 중간까지 합의된 일 정에 따라 공중정찰비행이 허 용됨. 각국의 배치제한지대 최 전방까지 자유로운 비행활동 허용.
2) 제3자	- 협정상 공식적 역할은 없으나 미국이 공중정찰을 수행하고 정보를 UNEF II와 이스라엘· 이집트에 제공	- 7~10일에 1회 또는 이집트, 이 스라엘, UNEF II의 요청에 따 라 미국이 완충지대와 배치제한 지대에 대한 정찰비행 수행
<b>C. 우주감시</b>	- 협정상 공식 명기 안됨. 미국의 위성정보 활용 추정	- 협정상 공식 명기 안됨. 미국의 위성정보 활용 추정
<b>D. 준수분쟁 해결기구</b>	- "101 킬로미터 협정"에 의거하여 유엔 중재하에 이집트와 이스 라엘의 군사대표가 회동	- 정전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 동위원회를 구성

SFM의 감시활동에 대한 미행정부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무부의 한 관리는 시나이반도에 미국인의 상주가 기술적 차원 뿐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중요했으며 이스라엘·이집트 양측은 미국의 존재를 효과적인 억제수단으로 간주했다고 평가하였다.<sup>60)</sup> 미의회의 회계감사국은 SFM의 활동전반을 감사하면서 시나이반도에서 미국의 기술보다는 인적 요소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sup>61)</sup>

시나이반도 지역에서 SFM이 수행한 관찰, 검사 및 보고활동의 중요성은 미국인의 실제 상주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었다. 우리의 견해로는 센서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SFM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인의 존재에 대한 열망이 이러한 가능성을 압도하였다.

1967년 6월 전쟁 이후 12년간 중동에서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했던 핀란드의 실라스브오(Ensio Siilasvuo) 장군은 기술적 요소에 비해 인적 요소가 갖는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그는 SFM의 지상감시센서가 능력면에서 적어도 이스라엘의 그것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이 SFM을 받아들인 이유는 “미국인”(warm American bodies)의 상주를 안전보장장치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62)</sup> 결국 시나이반도에서 제3국의 지상감시센서가 활용된 것은 이스라엘·이집트가 그 정도의 감시장비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국사이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완충역할을 할

60) Edward Kolcum, “New sensors evaluated in Sinai buffer,”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August 23, 1976, pp. 40~42.

61)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n Evaluation of the U.S., Early Warning Systems in the Sinai*, p. 18.

62) Ensio Siilasvuo, *In the Service of Peace in the Middle East: 1967~1979*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 310.

수 있는 제3국 요원의 실제 주둔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3국의 감시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상감시센서의 활용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제3국 감시장비의 허용을 주권상실로 인식하기 보다는 제3국의 요원의 실제주둔에 더하여 완충지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편리한 보조적 방편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SFM의 지상감시센서가 양국의 조기경보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SFM의 지상감시센서는 제3국의 주둔을 통한 완충장치의 확보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조치였지만, 역할의 중요성은 제3국 요원의 실제주둔에 비해 부차적이었다.<sup>63)</sup>

제II협정의 이행은 양국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함으로써 평화체제구축의 초석이 되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레더만(Itshak Lederman)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64)</sup>

제II협정의 신속한 이행과 복잡한 검증체제의 성공적 적용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97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분위기와 신뢰를 조성하였다. 검증체제는 양측에게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필요한 확신을 주었다. 아울러 모든 관련

63) 필자와 같이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에 초청되었던 네처(Gidion Netzer) 이스라엘 육군대령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이스라엘·이집트는 SFM의 감시센서없이도 상대방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집트에 비해 이스라엘의 능력이 훨씬 뛰어났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달성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10월전쟁을 통해 시나이반도를 장악한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집트와의 완충지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조성함으로써,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집트와의 국경대치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네처 대령과의 의견교환, 1998년 11월 2일.

64) Itshak Lederman,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91, pp. 181-182.

당사국들간의 적절한 조율장치와 더불어 조약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복잡한 검증체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기술적 방안과 사람의 활동을 알맞게 조합하는 것이 검증체제를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 나.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두 차례에 걸친 시나이협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국은 잠정적 성격의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축적하게 되었다. 양국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면서 점령지역을 양보하고 간접적인 검증을 수용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본전제는 협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을 정치적,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대부분 위임하여 이행상황을 책임지고 검증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시나이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바탕으로 미국의 중재하에 1978년 9월 17일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과 1979년 3월 26일 평화조약을<sup>65)</sup> 체결하였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평화조약과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의 기본원칙만을 담고 있었다. 기본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세부조약을 체결하는 데 수 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유효기간 무기한의 평화조약은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4개의 완충지역을 구성하며 유엔이 조약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군이 1979년 4월부터 1982년 4월까지 3년안에 시나

65) Treaty of Peace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State of Israel.

이반도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동쪽으로 철수하고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어 집중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덜해짐에 따라 SFM은 1980년 1월 25일 지상감시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감시장비를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최종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1982년 9월 SSM도 공식 해체되었다.

둘째, 4개 지역(A, B, C, D)으로 구성된 배치제한지대를 구축하였다. 각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부과되었다.<sup>66)</sup>

지역 A: 이집트 기계화보병 1개사단의 주둔을 허용하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병력 22,000명, 탱크 230대, 장갑차 540대, 중거리야포 126문, 73mm 방공포 126문 및 지대공 미사일의 보유가 허용되었다.

지역 B: 차량과 소형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 경보병 4개 대대(병력수 4,000명)의 주둔이 허용되었다.

지역 C: 이집트 경찰병력의 주둔만 허용되었다.

지역 D: 이스라엘의 4개 보병대대(병력수 4,000명)와 장갑차 200대의 주둔이 허용되었다. 탱크와 야포는 허용되지 않았고 휴대가능한 소형 지대공미사일은 허용되었다.

셋째, 평화조약의 검증은 각국의 NTM과 유엔을 통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배치제한지대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이 상주하면서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위반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UNEF II는 지역 B, C를 중심으로 검문소 및 관측소의 운영과 순찰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A, B, C, D에 대한 특별검사(challenge inspection)도 48시간 내에 실시되었다.<sup>67)</sup> 한편 양국은 각각 지역 A

66)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pp. 11~12.

67) 양국은 NTM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사항을 발견할 경

와 D에서 국가감시소를 운영하고 경찰비행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중심부의 능선을 따라 지역 C에서 철군완료시까지 4개의 국가감시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평화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운영 문제는 논의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sup>68)</sup> 유엔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중동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독주와 캠프데이비드 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평화유지군 파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1979년 7월 24일 UNEF II의 시나이반도 주둔을 연장하려는 안건이 유엔안보리에서 부결됨으로써 1974년부터 활동해오던 UNEF II의 역할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평화조약의 이행을 감독할 주체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sup>69)</sup>

미국·이스라엘·이집트 3국은 잠정완충지대인 엘-아리쉬(El-Arish) 지역, 즉 지역 C에서 이스라엘의 철군이 시작되자 1979년 8월 18~19일 워싱턴에서 회동하여 SFM이 유엔의 감시활동을 대신하도록 합의하였다.<sup>70)</sup> 이스라엘·이집트 양국은 평화조약에서 SFM을 1980년 1월 부로 해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조약에 규정된 유엔감시군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SFM에 대해 1982년 4월까지 이스라엘의 철군 활동을 감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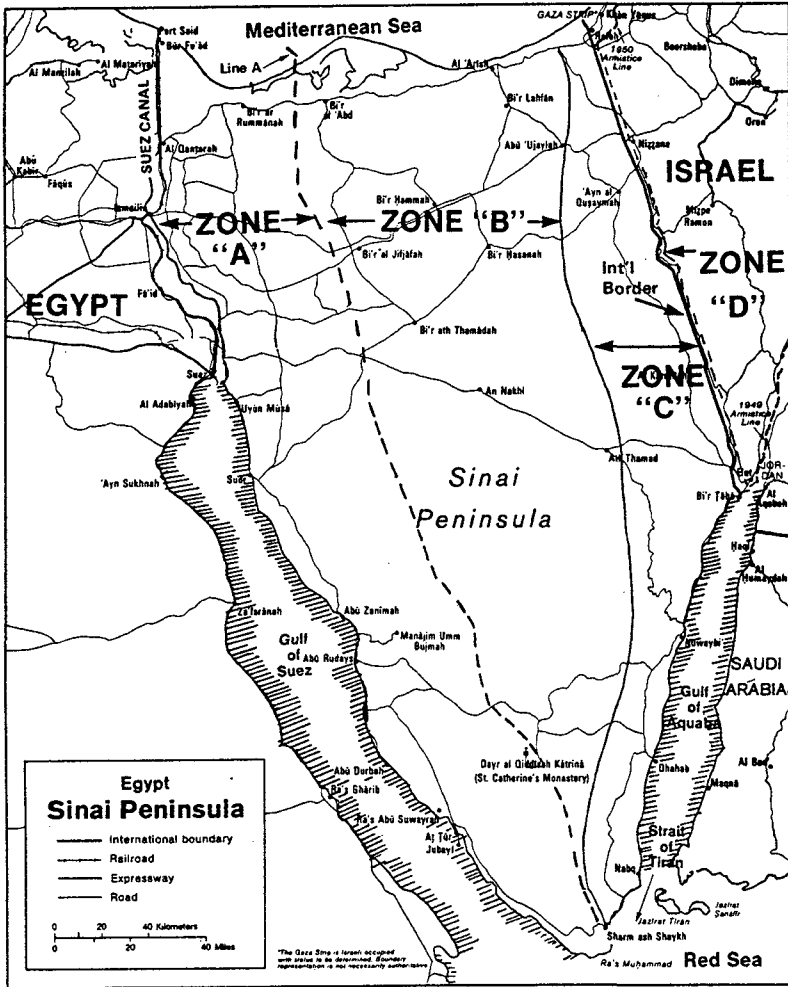
우 특별검사를 요청하였다. Itshak Lederman,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pp. 230~231.

68)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19.

69) 이에 앞서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 평화조약에 대한 검증활동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에게 약속한 바 있다. Mala Tabory,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in the Sinai: Organization, Structure and Func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6), p. 2.

70) The United States Sinai Support Mission, *Peace in the Sinai* (Washington, D.C.: The U.S. Department of State, 1982~83), p. 1.

<그림 2-3> 평화조약하에서의 시나이반도



출처: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Occasional Paper 2*,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89, p. 12.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SFM과 미국의 활동은 과거와 다소 달라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진행되면서 시나이협정에서 SFM의 주요 활동이었던 지상감시센서의 운용이 현장검사로 대체된 것이다. 반면에 SFM에 부여된 새로운 임무는 지역 A, B의 이집트 군사시설과 지역 C내 4곳의 이스라엘 국가감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미국의 공중정찰기능을 위임받아 일주일 간격으로 저공공중정찰을 실시하는 것이다.<sup>71)</sup> 즉 SFM의 감시활동이 지상감시센서의 운영에 중점을 둔 것에서 현장검사와 저공항공정찰 위주로 전환되었다. 지상감시센서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진행되면서 관계가 개선되자 1980년 1월 25일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SFM의 직원은 최고 200명으로 제한되었지만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SFM이 담당해야 하는 관할지역은 시나이반도의 2/3에 해당하는 38,850 km<sup>2</sup>로 확대되었다. SFM은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여 헬리콥터와 이착륙이 용이한(short take-off and landing: STOL) 항공기를 많이 이용하여 검사활동을 수행하였다.<sup>72)</sup>

지역 A, B에 배치된 이집트 군사시설에 대한 현장검사는 2개월에 한 번씩 SFM의 연락요원, SFM의 검사요원 및 이집트군 연락요원 1명 등 모두 3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는 해당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과 규제대상 무기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검사팀을 구성하는 3인은 검사중 개별적으로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종료후 서로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는 검사대상을 2중, 3중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집트로부터 이의제기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sup>73)</sup> 지역 A의 시설을 검사하는 데 이

71)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21.

72) Ibid.

73) The United States Sinai Support Mission, *Peace in the Sinai* (Washington,

를, 지역 B의 경우 하루가 소요되었다. 지역 C내의 이스라엘 국가감시소에 대한 검사는 매달 실시되었다. SFM의 검사요원이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현장에 신속히 파견되어 병력과 무기의 보유상태를 확인하였다. 지역 D의 이스라엘군에 대한 검사는 UNEF II가 담당하였다. 당사국 일방의 요구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특별검사도 허용되었다.<sup>74)</sup>

지역 A와 B에 대한 SFM의 공중정찰은 해당지역에 대한 예정된 현장검사 이전에 이틀 정도 실시되었다.<sup>75)</sup> 공중정찰은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시나이협정과 달리 저공정찰이 허용되었다. 첫째날은 두 지역의 북쪽 지역에 대해, 둘째날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정찰이 실시되었다. 정찰기는 평균 고도 244~305m를 유지하였지만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근접관찰도 실시하였다. 연료주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찰비행중 항공기의 착륙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감시요원들은 카메라와 쌍안경을 사용하였다. SFM은 검사요원들이 특정지역에 전문화되어 야기될 수 있는 지나친 자신감과 자만을 경계하여 검사요원들이 대상지역 전역에서 활동하도록 배려하였다. SFM은 보고양식을 표준화하여 평화조약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를 받아보는 분쟁당사국들이 SFM의 검증활동이 조약이행의 확인과 관계가 없는 첩보수집활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가급적 없애고자 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이집트는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각각 지역 A와 D에서 자유로운 공중정찰활동을

D.C.: The U.S. Department of State, 1982~83), p. 10.

74) 시나이반도에서 실시된 특별검사를 요약하면, 제II협정에서 SFM이 이집트·이스라엘의 국가감시소에 대해서, 평화협정에 의거하여 처음에는 UNEF II가, 나중에는 UNEF II의 임무를 승계한 SFM(지역 A, B, C)과 MFO(지역 A, B, C, D)가 실시하였다.

75)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22.

실시하였다.

준수분쟁해결기구인 공동위원회의 연락임무는 확대되었다. 엘아리쉬(El Arish)와 베르세바(Bersheba)에 양국 군장교를 대표로 하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연락사무소는 자국 외무부 그리고 상대방 연락사무소와 연결된 직통전화를 갖추었다. 연락사무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양국군 고위장교를 대표로 연간 2회, 혹은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공동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양국정부의 장관수준에서 타협점이 찾아졌다.

1980년 4월부터 1982년 4월 25일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철군을 완료하는 동안 평화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준수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SFM에 따르면 총 29건의 사소한 위반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양국 군사조직의 구성과 관련하여 약간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sup>76)</sup> 예를 들어, 사단의 구성과 규모 및 박격포와 야포의 차이와 같은 기술적 차원에서 쌍방이 해석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29건의 위반 가운데 27건이 이집트측, 2건이 이스라엘측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도 시나이협정의 공동위원회를 확대하여 평화조약에서 수립된 공동위원회·연락사무소시스템을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

시나이반도에 대한 유엔평화유지군의 감독이 소련의 거부로 불가능하게 되자 미국과 이스라엘 및 이집트는 대안으로서 다국적 감시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981년 8월 3일 미국이 양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무기한 운영되는 다국적 감시군(Multilateral Force and Observers: MFO)을 창설한다는 내용의 평화협정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82년 4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완료되면서 SFM의 역할과 임

---

76) Ibid.

무가 MFO로 이전되었으며 이 과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SSM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77)</sup> MFO는 시나이반도에 대한 감시와 감독활동을 해오던 미국의 영공정찰과 SFM의 감시 및 현장 검사 역할을 이전받아 지금까지 시나이반도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MFO의 임무는 관측과 보고라는 기본개념하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되었다.<sup>78)</sup> 첫째, 배치제한지대와 양국이 접해있는 국경선, 지역 B와 C의 경계선(B선) 및 지역 C내에서 검문소와 관측초소를 운영하고 항공정찰을 실시한다. 둘째, 배치제한지대에서 조약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한 달에 두 번씩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셋째, 당사국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48시간내에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넷째, 티란해협(Strait of Tiran)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한다.

MFO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화협정 당사자들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 현재 미국, 피지 및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11개국에서 파견된 1896명의 병력과 일부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sup>79)</sup> MFO는 각각 지원기지를 가진 세 개의 팀으로 나누어 배치제한지대에 대한 현장검사와 주기적인 저공정찰비행을 실시한다. MFO는 관측장비를 갖춘 약 35개의 관측초소를 운영하지만 원거리감시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MFO

77) UNEF II에서 MFO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이다. 시나이반도 사례는 당사국들의 의지만 있다면 검증기구와 사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조약이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8)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Servants of Peace* (Rome: MFO, June 1993), p. 13.

79)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Rome: MFO, January 1998), p. 3.

에서 현장검사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군인이 아니라 50명의 민간인(퇴역군인 포함)들이다. 이들은 MFO 주둔지에서 헬리콥터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장검사 활동을 수행한다. 민간인들에 의한 현장검사는 외국의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군사지역을 검사하는 것이 양국군과 민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MFO의 영공정찰은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당사국의 승인하에 검증목적의 저공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MFO와는 별개로 이집트·이스라엘은 NTM을 이용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양국은 지상감시체제를 지역 A와 D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집트의 경우 지역 A까지, 이스라엘의 경우 지역 D까지 항공기에 의한 정찰활동과 자유로운 해안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이집트의 해안순찰은 지역 B에서 경무장함정으로 지역 C에서는 경찰함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평화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검증체계를 요약하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80)</sup>

<표 2-3>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의 복합적 검증체계

구 분	이스라엘군 철수기간 (79.3~82.4)	이스라엘군 철수이후: MFO 시기 (82.4~현재)
A. 지상	4개의 배치제한지역 설정	4개의 배치제한지역 설정
1) 당사국	- 이스라엘 단독: 지역 C에 4개의 국가감시소 운영 (철군완료시 철수) - 양측이 지역 A와 D에서 국가 감시소 운영	- 지역 A와 D에서 각각 국가감시소 운영

80) 본 도표는 다음 논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p. 17~18.

<p>2) 제3자</p>	<p>1) UNEF II(SFM) 이행 감독                  a) 배치제한지대에서 매달 최소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현장검사 실시                  b) 잠정완충지대에 대한 관측 활동                  c) 국경선과 B선 및 C지역내에 관측초소 설치 및 순찰실시                  d) 당사국 일방의 요구 접수후 48시간이내 특별검사 실시</p>	<p>1) MFO가 국경선, B선 및 C지역에서 검문소와 관측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민간인에 의한 현장검사 실시                  a) 배치제한지대 관련 조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최소 매달 두 번씩 현장검사                  b) 당사국 일방의 요구 접수 후 48시간이내 특별검사 실시</p>
<p><b>B. 공중</b></p> <p>1) 당사국</p> <p>2) 제3자</p>	<p>제II협정에 따른 공중감시</p> <p>- 양국이 각각 지역 A와 D에 대한 정찰비행 실시</p> <p>- 이스라엘 철군완료시까지 제II협정에 따라 SFM이 저공정찰비행 실시. 양당사국과 UNEF II가 추가 검사비행 요구 가능</p>	<p>- 양국이 각각 지역 A와 D에 대한 정찰비행 실시</p> <p>- 당사국 승인하에 MFO 항공기에 의한 검증목적의 저공정찰비행 실시</p>
<p><b>C. 해안</b></p>		<p>- 이집트는 지역 A, 이스라엘은 지역 D에서 자유로운 해안순찰</p> <p>- 지역 B, C에서 이집트의 제한된 해안순찰 허용</p>
<p><b>D. 우주감시</b></p>	<p>- 협정상 공식 명기 안됨. 미국의 위성정보 활용 추정</p>	<p>- 협정상 공식 명기 안됨. 미국의 위성정보 활용 추정</p>
<p><b>E. 준수분쟁 해결기구</b></p>	<p>- 공동위원회·연락사무소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p> <p>1) 조약이행의 감독 및 준수분쟁 해결</p> <p>2) 군의 이동을 조율·감독</p> <p>3) UNEF II(SFM)가 보고한 위반사항 토의, 미해결문제를 당사국에게 조회</p> <p>5) UNEF II(SFM)의 임무수행 지원</p> <p>6) 정기 현장검사의 시간표 설정·조정</p>	<p>- MFO는 연락사무소시스템을 통해 양당사국에게 검문소, 관측초소 및 순찰활동의 결과를 요약·보고</p>

MFO의 재정은 이스라엘·이집트와 미국이 각각 31%씩 부담하며 나머지를 스위스, 일본 및 독일의 지원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sup>81)</sup> 이스라엘·이집트는 유엔보다 MFO를 선호하는 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sup>82)</sup> 첫째, 양국이 1/2씩의 재정을 부담함으로써 동등하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이스라엘의 경우 1967년 유엔이 UNEF I을 갑자기 철수하고 2주만에 전쟁이 발발했던 기억 때문에 유엔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특히 강했다.<sup>83)</sup> 셋째, 미의회도 여러 측면에서 유엔을 신뢰하지 못하였다. 넷째, 경제적으로 볼 때 유엔평화유지군보다 MFO의 운영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시나이협정이 이행되면서 군사대치지역이었던 시나이반도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많은 민간인들이 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변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 
- 81) Multinational Force & Observers,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p. 29.
- 82) 샌디아연구소부설 협력감시센터 Michael Vannoni와의 의견교환, 1998년 8월 13일.
- 83) 특히 이스라엘의 야전지휘관들 사이에 유엔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강했다. 1967년 유엔이 이집트 나세르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여 UNEF I을 시나이반도와 가자 지역에서 철수한 지 2주후에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큰 원인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신이 미국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미의회 회계감사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스라엘이 일부 유엔군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양 당사국이 모두 미국이 운영하는 조기경보체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참여는 협정이행의 완전한 일부분이 되었다.”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n Evaluation of the U.S. Early Warning Systems in the Sinai.*

### Ⅲ.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능성

본 장에서는 한반도에서도 시나이반도에서와 같이 분쟁당사자들이 상호협력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진단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 투명성 제고과정을 시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정적 요인들과 반대로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고 우호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들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시나이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교훈들도 한반도의 관점에서 분석·정리하여 두 가지 견해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활용할 것이다.

#### 1. 부정적 요인

##### 가. 북한의 폐쇄성

북한은 지난 반 세기간 군부중심의 전체주의적 통제체제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사회 전반에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남한은 비교적 자유롭고 민주적인 다원주의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북한의 폐쇄성은 국가관계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제조약 체결시 검증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정치체제와 투명성 제고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의 소련과 매우 유사하다. 소련 역시 매우 폐쇄된 체제를 유지했으며 그로 인해 개방과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상호협력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이



행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 체제의 상이점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첫째,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다소의 개방지향적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아직도 북한 당국은 국내통치와 대외관계에서 비밀주의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비밀지향적 태도는 군사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북한의 모든 정책분야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비밀주의는 체제의 강약점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체제를 유지해나가는 편리한 수단이 되어왔다. 이러한 폐쇄주의적 습성은 북한주민들이 인식과 행동의 모든 차원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폐쇄주의는 군사분야에서 정책과 의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비통제조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소련과 같이 북한은 군사분야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검증에 상당한 거부감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분을 합의하면서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참관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실패한 것은 북한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84)</sup>

둘째, 투명성 제고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체제의 특징인 정보의 공개와 언론·출판의 자유는 매우 긍정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내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논의와 각종 의견에 대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부분이 남한 당국의 의도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과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 남한체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에

84) 전성훈, 「군비통제 검증 연구: 이론 및 역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48~149.

대한 정보는 가급적 비밀로 하면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은 남한과 같은 민주적 다원주의 체제가 국제적 규범이나 합의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은 북한의 이러한 인식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민주체제에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여론과 선거제도라는 강력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존재한다. 반면에 전체주의체제에서는 최고의사결정자가 결심만 한다면 신속하고 비밀리에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주체제의 국가는 폐쇄체제의 국가에 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다. 즉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의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입안·집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평화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은 남한의 군사적 의도와 행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방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폐쇄체제의 국가에서는 정책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핵심 엘리트계층의 정권유지와 번영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전체의 이익과 여론의 향배가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으로써, 정권담당자들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민주체제의 정부가 국가보존과 국민생활신장이라는 행정부의 두 가지 임무를 함께 완수할 수 있는 보다 균형된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아무리 안보를 튼튼히 하더라도 국민생활을 낙후시키는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복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안보의 증진이다. 체제의 속성상 다원주의 체제의 행정부가 전체주의 체제의 정부에 비해 군비통제에 보다 적극적이다. 폐쇄주의 국가도 경제적 여건이나 상대방의 무력증강을 차단할 목적으로 군비통제에 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민 전체를 고려한 균형된 정책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군사적 투명성 제고와 군비통제가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 나.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불균형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양국의 정보조직과 기능에 관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룬 논문은 간헐적으로 발표되었지만<sup>85)</sup> 양측의 정보수집능력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증대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민감한 정보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주요 분야별로 양측의 정보수집능력의 비교우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은 개별적인 정보수집능력 문제를 부차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다.

정보수집의 3대 수단은 인적 정보(human intelligence: HUMINT), 영상정보(image intelligence: IMINT) 및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 SIGINT)이다. 신호정보는 크게 통신정보(communication intelligence: COMINT)와 전자정보(electronics intelligence: ELINT)로 구분된다. 영

85) 예를 들어, Desmond Ball, "Asia - signals intelligence in North Korea,"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8, no.1 (January 1, 1996), p. 28; Joseph Bermudez, Jr.,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nd infiltration operations,"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3, no.6 (June 1, 1991), p. 269, 참조.

상정보와 신호정보가 NTM을 구성하는 양대 요소이다.<sup>86)</sup> 인적 정보는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다양한 인적 자산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말한다. 영상정보는 주로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습득·판독한 정보를 의미한다. 통신정보는 다양한 통신수단을 감청하여 습득한 정보를 말하며 전자정보는 통신이외의 전자신호정보를 의미하는데 레이더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호정보의 경우 수신된 신호를 판독하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각 부문별로 남북한의 능력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비교

	남한	북한
인적 정보	×	○
영상 정보	○	×
신호 정보 (통신정보)	○	△
(전자정보)	○	△
(인적 전문성)	△	○

○: 우세, △: 불리, ×: 취약

인적 정보수집능력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다. 남한에서 상당수의 고정간첩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체제의 다원주의적이고 자유스러운 특징도 인적 자원의 정보수집활동을 용

86) Richard Kokoski, "National technical means," in Richard Kokoski and Sergey Koulik (eds.),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p. 18.

이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남한은 인적 정보의 열세를 NTM을 통해 만회하고 있다. 영상정보의 경우 남한의 대북한 우세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남한의 영상정보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의 협조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독자성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한국 국방부는 2005년 발사를 목표로 군용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sup>87)</sup> 통신정보와 전자정보는 기술능력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유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인적 자원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남한측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정보수집 능력은 남한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정보수집에 앞서 있는 반면, 북한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미시적인 정보수집에 뛰어나다고 요약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남한이 집안 밖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북한은 집안내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한반도가 시나이반도와 다른 점 중에서 남북한간의 투명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두 지역의 지형적 차이에 기인한다. 시나이반도의 경우 투명성 제고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가짐으로써 조약의 성공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었으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지형·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간의 이러한 상이점이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87) 배문한 국방과학연구소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중앙일보」, 1998년 11월 4일.

첫째, 시나이반도의 광활한 사막, 산악의 부재, 비교적 좋은 기후조건은 감시활동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였다. 이와 달리 한반도는 산이 많고 산림이 우거져 있으며 하천과 강이 산재해 있고 기후와 습도도 사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지형특성은 기계장비에 의존하는 탐지와 인적자산에 의한 검사 등 전반적인 감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고온다습한 여름과 한랭한 겨울의 기후조건은 감시센서의 정상적인 작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 조건은 사막지대인 시나이반도에 비해 탐지확률, 목표식별능력, 관측범위, 센서운용과 관리, 통신 및 자료송신 등 제반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나이반도는 종전과 동시에 전후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감시장비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자의 역할을 대폭 수용한 투명성 제고체제에 합의할 수 있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미 정전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155마일의 휴전선을 철책으로 막고 병력으로 상주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간 유지되어 온 병력위주의 기존 감시체제를 변경하여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술적 감시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별 무리없이 유지되어 온 전통과 관습을 바꾸는 것 만큼이나 인식과 행동 제 측면에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셋째, 시나이반도는 광범위한 완충지대와 배치제한지대를 갖춤으로써 감시센서를 통한 조기경보를 확보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시나이정전협정 II의 경우, 설혹 감시센서가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완충지대(폭이 12~20km)와 배치제한지대(이집트 30km; 이스라엘 약 10km)를 충분한 완충공간으로 확보

함으로써 양측은 상대방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폭 4km의 완충지대만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조기경보에 실패하는 경우 안보적 위험이 매우 크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감시체계가 확보하고 있는 조기경보수준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수도권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140k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한의 경우 그 간격이 42.5km에 불과하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예비전력의 신속한 동원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군의 이상징후에 대한 조기경보와 탐지를 투명성 제고의 최우선 목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남한의 군당국자들은 병력을 기술장비로 대체하는 것이 안보적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sup>88)</sup>

넷째, 시나이반도의 경우 대규모 부대이동이 가능한 축선이 기디와 미트라 두 곳으로 제한됨으로써 감시자산을 두 곳의 통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탐지의 효과와 효율을 높힐 수 있었다. 반면에 한반도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동통로가 10여개나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sup>89)</sup> 따라서 예상침투로에 대한 기술장비와 감시초소의 설치 및

88) 한반도는 기동공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감시장비(on-site device: OSD)를 상대지역 깊숙이 주요 기동통로상에 설치하여 원거리탐지를 하지 않는 한 OSD의 활용이 조기경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OSD를 파괴하고 기습공격을 단행할 경우 OSD의 파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기동공간이 짧아서 충분한 조기경보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27일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89) 한반도에는 동부지역 네 개(국도 5, 7, 31, 43번), 중부지역 세 개(국도 1, 3, 352번), 서부지역 세 개(국도 1, 51, 52번) 등 10개의 전략적 기동통로가 존재한다. Michael Vannoni, *et al.*, *Confiden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 Conceptual Development for the Cooperative Monitoring of Limited-Force Deployment Zones*, SAND97-0583 (Albuquerque, New Mexic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April 1997), pp. 26~27, Appendix E.

현장검사의 실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시나이반도에 비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이 요구된다.

다섯째,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나이반도와 달리 한반도는 중심이 좁기 때문에 DMZ를 무사히 통과하면 상대방의 전략 요충지에 잠입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sup>90)</sup>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 대규모 기습공격 못지 않게 소규모 인원의 침입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측이 DMZ 전역을 철책과 병력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나이반도의 지형적, 기후적 조건(광활한 사막, 센서기능의 충분한 활용)은 소규모 인원의 침투를 탐지하는 데 매우 유리한 반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이 소규모 인원을 탐지하기 위해 감시센서보다 병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 2. 긍정적 요인

### 가. 남북관계 개선가능성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새정부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sup>91)</sup> 첫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 셋째,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90)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개성은 7.5km, 수도 평양은 140km, 남한의 경우 동두천은 18.5km, 수도 서울은 42.5km 떨어져 있다.

91)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서울: 통일부, 1998).



전제하에,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가 아니라 민족전체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긴장완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견지하되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를 확보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추진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의거한 남북교역의 활성화, 금강산관광 추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1998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상설기구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문제 등에 대해 새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였다.<sup>92)</sup> 김대통령의 8·15 대북제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현재 대미 관계개선이 체제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NPT 탈퇴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간 고위급회담과 함께 미사일 개발문제, 미군유해 송환문제 및 기타 현안에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의 대화가 정례화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북한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2) 「조선중앙방송」, 1998년 8월 20일.

경직된 대남관을 견지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대외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농장의 운영을 변경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sup>93)</sup> 등의 조치에서 북한정권이 어느 정도 실용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94)</sup>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적 소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의 영리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회저변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제도권으로 수용하였다.<sup>95)</sup>

지난 5년간 혹독한 동절기를 경험한 남북관계가 어느 일방의 정책 전환만으로 단시일내에 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성급한 기대일 것이다. 당사자 모두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남북대화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안정과 내부정비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명실상부하게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김정일체제의 전면 등장은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보다 자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남한 정부도 햇볕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sup>96)</sup> 이상의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

93) 북한은 1995년부터 1998년 9월까지 총 9억 5천 98만달러의 외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1998년 10월 21일.

9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Finding Report*, November 12, 1997, p. 14.

95) 국가안전기획부 국희정보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중앙일보」, 1998년 11월 7일.

96)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20일 북한 금창리의 핵시설 의혹과 북한 간첩선의 서해안 침투사건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햇볕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8년 11월 21일.

로의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지난 5년간에 비해 우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나. 한반도 군비통제에 우호적 여건 조성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한반도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① 북·미 기본합의문의 타결과 양국관계의 진전, ②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될 4자 회담의 진행, ③ 남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 동시 가입.

##### (1) 기본합의문 타결과 북·미관계의 점진적 개선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합의문이 타결된 후 양국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북·미 양국은 정치·경제·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한 대화를 진행중에 있다. 양국은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절차를 논의하였으나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설이 늦춰지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리처드슨(Spencer Richardson)을 초대 연락사무소장에 임명한 바 있다.<sup>97)</sup> 미국무부는 1995년 1월 20일 북한에 대해 제1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통신, 금융거래,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등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4월 10일 북·미간에 일본을 경유하는 직통전화 개설되기도 하였다.<sup>98)</sup>

97) 「조선일보」, 1996년 8월 21일.

98)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의 속도와 규모가 자국이 기본합의문을 이행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핵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김창국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1998년 11월 4일 유엔총회 연설, 「중앙

군사분야의 대화는 유해발굴·송환과 미사일수출금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1995년 초부터 유해송환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여 1996년 1월 12~14일 하와이 미태평양사령부 산하의 중앙식별연구소(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에서 제1차 유해송환협상을 개최하였다. 제2차 유해송환협상은 1996년 5월 4~9일 뉴욕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이미 인도된 162구의 유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2백만불을 지급함.<sup>99)</sup> ②6월 상반기중 유해공동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고 연내 공동발굴을 추진함.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1996년 7월 10일부터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제1차 유해발굴작업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의 발굴작업을 통해 수거된 총 29구의 유해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였다.<sup>100)</sup>

북·미 미사일협상은 1996년 4월 20~21일 베를린에서 제1차협상이 개최된 이래 1997년 2월 제2차 협상이<sup>101)</sup>, 1998년 10월 1~2일 뉴욕에서 제3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를 보는 양측의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국가안보의 수단으로 또한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자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일보」, 1998년 11월 6일.

99) 1996년 5월 20일 주한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움즈(Ashton Ormes) 대령이 판문점에서 북한군판문점대표부 박임수 대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선일보」, 1996년 5월 21일.

100) 「중앙일보」, 1998년 11월 7일; 「한국일보」, 1998년 12월 16일.

101) 미행정부는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수출에 대한 대응으로 무기수출통제법과 MTCR 규정에 따라 1996년 5월 26일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북한이 미측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여 1996년 7월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차 미사일협상이 지연된 바 있다.

평화협정 체결 등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사일수출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sup>102)</sup> 1998년 8월 31일 소규모 인공위성을 탑재한 3단계 중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미사일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sup>103)</sup>

한편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미 직접협상을 요구한 이래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집요하게 취해 왔다.<sup>104)</sup> 1996년 2월 28일 북한은 1994년 제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북·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4월 4일 북한은 인민군관문점대표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무장지대의 유지임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 대신 잠정협정을 통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돌발사건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과 북·미군사공동기구를 조직·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998년 6월 23일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이 개최됨으로써 1991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복원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측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관문

102)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수출중단을 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수출중단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Dana Priest and Sandra Sugawara, "N. Korea Missile threatens nuclear pact," *Washington Post*, September 1, 1998, p. A15. 제3차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수출을 동결하는 대가로 3~5년에 걸쳐 10억불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중앙일보」, 1998년 10월 8일.

103) 한창언 북한외무성 미주국장, 「조선일보」, 1998년 10월 3일.

104) 전성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국의 대응전략," 「국방경영정책연구」, 1997년 11월, pp. 6~9.

점 장성급대화를 북·미대화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체결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sup>105)</sup>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외교실무자들이 대표로 참석하고는 있으나 군사분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북·미 군사당국자간의 직접 접촉과 협상의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미간의 관계진전은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4자회담의 진행

한국은 최근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면서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1996년 4월 16일 북한에 대해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되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4개국의 대표들이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논의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sup>106)</sup>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 한·미가 발표한 성명에는 4자회담의 목적과

105)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뉴욕에서 개최된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1993.6.2~11)에서 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①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과 사용위협 금지, ②핵안전협정의 공정한 적용, ③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보장, ④상대방의 주권 존중, ⑤내정 불간섭, ⑥한반도의 평화통일지지. 기본합의문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 금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106)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4자회담 제의」, 제6항 및 제7항.

의제가 매우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회담의 의제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성명서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이 애매하며, 참가국들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107)</sup>

4자회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미는 1997년 3월 5일 뉴욕에서 북한과 함께 3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8월 5일 뉴욕에서 본회담에 앞선 제1차 예비회담을 개최하였다. 이후 세 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8년 1월 제4차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한과 미·중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두 가지를 4자회담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4자회담은 한반도의 군비통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자회담이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이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남북한 제네바 군축회의 동시 가입

남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 동시에 가입하여 군축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양쪽 당사자간의 군비통제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8년 유엔의 「제1차 특별군축회의」(First

107) Seongwhun Cheon, "The four party peace meeting proposal: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for Korean peace & unific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1996 Summer), pp. 172~174.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창설되었다.<sup>108)</sup> 군축회의는 현재 운영되는 3개의 국제군축협의기구 중<sup>109)</sup>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조약을 협상하고 문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축회의는 유엔과는 독립된 기관이나 다음과 같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유엔 사무총장이 군축회의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군축회의의 예산도 유엔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군축회의는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반영하며 합의된 조약문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여 회원국들이 체결·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다. 셋째, 군축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유엔총회에 활동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군축회의의 기존 회원국은 5개 핵보유국을 포함하여 모두 37개국이었다.<sup>110)</sup> 1996년 6월 17일 남북한을 포함하여 모두 23개국<sup>111)</sup> 신규 가입함으로써 현재 총 회원국수는 60개국에 달한다.

남북한이 유일한 범세계적 군축협상기구인 군축회의에 동시에 가

108) 군축회의의 모태는 국제적 차원에서 군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59년 8월에 발족한 「10개국 군축회의」(T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1959~60)와 그 후속협의체인 「18개국 군축회의」(Eighteen-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1962~1969) 및 「군축위원회회의」(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1969~1978)이다. 군축회의는 1983년까지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로 불리었다.

109) 나머지 2개 기구는 「유엔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UNDC)와 「유엔총회 제1위원회」(UNGA First Committee)이다.

110) 알제리, 쿠바, 일본,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케냐, 러시아, 호주, 이디오피아, 멕시코, 스리랑카, 벨기에, 프랑스, 몽고, 스웨덴, 브라질, 독일, 모로코, 영국, 불가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미국, 미얀마, 인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캐나다, 이란, 페루, 자이레, 중국, 이태리, 폴란드 등이다. 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회원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승계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혹 기존 회원국 수가 38개국이라는 혼선이 야기되었다.

111)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북한, 스페인, 벨루로스, 남한, 스위스, 카메룬, 뉴질랜드, 시리아, 칠레, 노르웨이, 터키, 콜롬비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핀란드, 슬로바키아, 베트남, 이라크, 짐바브웨 등이다.



입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남한은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정(Cheical Weapons Convention: CWC) 가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군축회의의 의제는 국제적 군비통제 차원 뿐 아니라 남북한 군비통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축회의에서의 군축협상은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국제군축무대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토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양국내에서 관료집단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군비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군축추세에 부합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양자간의 군비통제 가능성을 증대하게 될 것이다.

#### 다. 시나이반도 사례의 긍정적 교훈

시나이반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교훈은 한반도의 특성에 맞게 군사적 투명성 제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시나이반도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인종적, 종교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토적으로도 갈등을 안고 있었다. 반면에 한반도에서는 이념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종·종교적 요인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경선의 설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sup>112)</sup> 더욱

112) 남북한간에 국경선 설정문제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서해 도서지역이다. 휴전당시 유엔군은 해공군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모든 도서를 장악하였다.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북한은 동해의 경계는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하고, 서해는 5개 도서의 남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합

이 남북한이 반세기전 전쟁을 경험한 바 있지만 불안정하나마 공존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에 부과된 정황적 여건은 중동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쟁당사국들이 전쟁보다는 적어도 현상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상황이 유사하다. 1973년 10월전쟁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이집트 양측은 더 이상의 무력분쟁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였다. 무력대치를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내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sup>113)</sup> 북한이 대남 무력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간헐적으로 감행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목적은 당면한 정치·경제·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력을 회복하고 국력을 신장하는 일이다. 북한의 호전성은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기이다.

셋째, 양측이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위기관리 체제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의 상황이 유사하다. 시나이반도의 경우, 이스라엘·이집트의 최대 관심사는 전쟁 직후 위기관리체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새로운

---

의하였다. 기본합의서 체결시에는 서해 5개도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지 않았으나 불가침 부속합의서 협상시에 북한이 서해 경계선을 직선거리로 하는 문제를 제기하여 추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회담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28일.

113)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24.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전협정이 불안정하게나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조치가 계속됨으로써, 기존의 위기관리체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모두 새로운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반면, 한국은 기존 정전협정의 틀내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넷째, 군사적 대처로 인해 야기되는 긴장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구상·집행되는 기술적 차원의 조치가 갖는 내재적 공통성이다. 지역, 인종, 역사, 문화, 관습, 국력 등 국가구성 요소의 제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정책을 개발·활용하는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집트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과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은 모두 주권과 국민 및 영토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들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를 둔 결과물로서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제3자의 역할은 분쟁당사국들간의 협력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제3자의 역할 역시 분쟁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역할과 기술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모색될 수 있다. 결국 시나이반도의 분쟁당사국들이 검증체제와 제3자의 역할을 신뢰하고 수용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긴장완화에 성공한 경험을 한반도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전쟁이 종식된지 반세기가 되어 가고 있지만 남북한의 경

우에도 양측의 불신과 적대감 그리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감이 상존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양측 군부는 조기경보능력의 확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남침을 경험한 바 있는 남한이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기경보능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4)</sup> 따라서 조기경보능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시나이정전협정 II와 평화조약에서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으로부터 한반도의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한 작업이다.

시나이반도의 사례는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합의·이행함으로써 조기경보능력의 확대라는 쌍방의 관심사항이 해결됨과 동시에 전반적인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나이반도에서 초기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페레스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지적했듯이, 상대방의 조약위반과 무력사용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하에 이스라엘·이집트가 수용한 투명성 제고방안은 전쟁 직후의 적대관계속에서도 제한된 협력을 통해 조기경보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조기경보능력의 제고는 기습공격의 동기를 줄이고 모호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위기감소기능을 수행하였다. 결국 양측이 수용한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은 전쟁 직후의 단기적인 위기관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당사국간의 전반적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뢰구축이 가져오는 부수적 효과는 신뢰가 정착되면 사소한 위반사항이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줄어들

114) 국방부 군비검증단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1998년 5월 9일.

게 된다는 것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사소한 기술적 위반사항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거나 시나이전협정을 훼손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시나이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도 군비통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참여한 군사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이 갖는 신뢰구축기능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가능성 진단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① 북한의 폐쇄성 - 개방확대, 정책투명성 제고 및 검증 을 어렵게 하는 근본요인 ② 남북한의 정보수집능력 불균형 - 북한: 인적 정보 우세 - 남한: 영상·신호정보 우세 ③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① 남북관계 개선가능성 - 북한체제의 안정 및 점진적 개방 가능성 증대 -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② 한반도 군비통제의 우호적 여건 - 북·미관계의 점진적 개선 - 군사문제가 주요 의제인 4자회담 의 진행 - 남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 동시가입
시나이반도	한반도	③ 시나이반도 사례의 긍정적 교훈 - 한반도는 시나이반도와 달리 인종 적, 종교적, 영토적 갈등 없음. - 분쟁당사국들이 전쟁보다는 적어 도 현상유지를 희망 - 분쟁당사국들이 기존의 위기관리 체제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 다는 인식 공유 -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술 적 조치가 갖는 내재적 공통성 - 조기경보능력 확대에 대한 분쟁당 사국 군부의 관심과 이해 일치
- 감시에 유리한 지 형·기후 조건 - 종전을 위한 제도 적 장치의 필요성 절박 -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 - 주요 기동축선이 2개에 불과 - 소규모 침투가 어렵 고 성공해도 안보위 험이 크지 않음.	- 감시에 불리한 지 형·기후 조건 - 정전상태를 안정 적으로 관리 - 완충지대가 매우 협소(조기경보의 중요성 증대) - 주요 기동축선이 10여개 - 소규모 침투가 용 이하고 안보위협 이 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나이반도와 한반도 사이에는 많은 측면에서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군비통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 IV.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수립시 고려사항

시나이반도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완충지대와 배치제한지대로 구성되는 협정의 기본내용이 아니다. 이러한 협정의 주요 내용이야 말로 해당 상황의 특성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시나이반도의 경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은 투명성 제고활동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과 구체적인 투명성 제고방안의 장단점을 정치·외교·군사·기술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로 삼는 것이다. 기본적, 원칙적 차원의 고려사항과 기능적, 기술적 차원의 고려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원칙적 고려사항

#### 가.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 입장 정립

이스라엘·이집트는 적어도 시나이반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정치·군사지도자들은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가 적대세력에게 이로움을 줄 정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정책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up>115)</sup> 양국은 투명성 제고 임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정도로 시나이반도에서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

115)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24.

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북한 모두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의 긴장상태를 감안할 때, 양측은 기존의 방어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조치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정치적 차원에서 개방과 공개의 개념에 기초한 투명성 제고방안이 야기할 수 있는 체제위협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 차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이 김일성 사망과 경제난으로 야기된 체제불안정을 어느 정도 극복함으로써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 새정부의 실용적인 대북정책도 북한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미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통한 양국간 관계개선과 북한에 대한 서방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지원도 북한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북한체제에서도 폐쇄성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 군부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부의 반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부가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용하더라도 군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설득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보다 훨씬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대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군부의 반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남한 군부는 군사력과 정보능력 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용하지 않



을 것이다. 특히 남한은 수도권의 지리적 취약성으로 인한 기습공격의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리하게 만들거나 남한의 방어태세를 취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거부할 것이다. 남한 군부로 하여금 투명성 제고방안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 나. 점진적, 단계적 접근

시나이반도의 사례는 정전협정에서부터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역사적 선례이다. 물론 여기에는 키신저의 점진적 협상철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이집트 양측은 현재의 여건에 합당한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면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점진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정치·군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험을 순차적으로 극복해나갔던 것이다.

샌디아연구소의 비노니(Michael Vannoni)는 점진적 접근법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sup>116)</sup>

지역안보협정의 다양한 선례[시나이 협정을 비롯하여]가 주는 교훈은 건설적이고 협력적이 방안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시나이에서 키신저가 사용한 단계적 접근법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치들을 통해 얻어진 이익의 결과로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약에 포함

116) Michael Vannoni,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pp. 65~66.

된 기술적 기능들이 모든 경우를 완전하게 다룰 필요도 없다. 시나이반도의 감시시스템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 ..., 앞으로 언제 가능할 지 모를 포괄적인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기 보다 제한된 기능이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남북한과 같이 불신이 심화된 관계에서는 특히 협정이행의 초기에 불확실한 상황이 야기되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법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초기 단계에서 군사적으로는 중요성이 없는 합의사항이라도 이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서 투명성을 증대해 나가는 학습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협상초기에는 합의사항이 갖는 내용상의 중요성 보다 상징적 가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합의·이행을 중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협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다 의미있는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 다. 제3자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나이반도의 사례는 분쟁가능성이 높은 국가간에 위기를 관리해 가는 과정에서 제3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이집트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상주와 감시활동이 전쟁가능성을 줄이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제3자의 정치적 지위와 기술적 능력을 적절한 위기관리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은 시나이정전협정과 평화조약을 협상하고 이행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외교적·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특히 두 조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중정찰, SFM 창설 및 다양한 감시센서와 전문인력 제공 등 기술적, 인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적극적 역할은 유엔의 지원과 함께 두 분쟁당사국이 합의한 사항의 성공적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당사국간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미국의 후원과 보장을 확신했기 때문에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보다 위험도가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남북한이 상호협력적인 투명성 제고방안을 합의·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3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도 제3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수준은 낮고 군사대화의 경험은 일천하다. 따라서 양측이 군사문제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며, 준수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될 것이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양측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은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남북한 모두 군부를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거부감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직책으로 국가를 통치할 정도로 군부 의존적이기 때문에 군이 반대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이 군부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과 기

술력을 겸비한 제3자가 교육과 홍보 및 설득을 하고 더 나아가 군부를 안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양측 모두 군비통제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제3자의 협조와 조언은 필수적이다. 특히 협상이 원칙논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구체적 단계로 진입하면 제3자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상쟁점을 타협하고 준수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은 상호협력적으로 감시장비를 운용한 경험이 없고 최첨단 감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한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감시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운용한 경험이 없는 반면, 북한은 기술력도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17)</sup> 기술적으로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제3자가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합의·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3자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제3자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

117) 양측이 쉽게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은 검사요원의 육안에 의한 현장검사이지만 현장검사는 분쟁당사국 요원의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장검사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고 군비통제경험이 축적되어야 실현이 가능하였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강력한 현장검사 위주의 협상을 했으나 빠져런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이 군비통제를 실행할 때 바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술적 검증수단을 주로 활용하는 제한된 방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거나 남북한 당사자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외부의 건설적인 지원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여 외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의사가 표명될 때,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자의 참여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군사정책의 모호성을 없앴으로써 오해와 불신에 의한 전쟁발발을 막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3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제3자가 유엔과 같은 국제기관이 아니라 특정 국가일 경우, 남북한 당국이 안보문제에 제3자의 지나친 개입을 초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체의식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내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남북한이 특정국가를 제3자로 선정하는 데 합의하여도, 시나이반도에서와 같이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요건을 두루 갖춘 제3국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시나이반도의 경우 미국이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두 분쟁당사국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적절한 탐지기술을 보유하고, 양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우에 특정 국가를 제3자로 지목한다면 미국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남한과 오랜 동안 긴밀한 안보협력을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기술적 능력과 경험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 번째 요건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남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술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sup>118)</sup> 재정적 지원은 양측

118) 평화유지 임무를 띠고 분쟁지역에 자발적으로 혹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을 수락하여 참여하는 국가가 인원 뿐아니라 장비와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관

내부에서 제3자의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도 중요하다. 셋째, 남북한간 정보수집능력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제3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표출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남한에 비해 기술적 정보수집능력이 열세에 있는 북한이 오히려 제3자의 기술적 역할에 우호적이 반면 남한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북한의 기술적 정보수집능력의 향상에 반대하면서 인적 정보의 열세를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 라. 건설적인 협상방향 설정

분쟁당사국간의 협상은 실질적 내용을 떠나서 대화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일단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지면 이를 소중히 활용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협상의 가시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의 틀과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과정 자체가 당사국들이 제한된 형태나마 협력을 얼마나 진지하게 원하고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과 대결의 역사로 점철된 남북관계에서는 협상자체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선의와 평화공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 혹은 제3자에 의해 협상의 기회가 만들어질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적대감이 상존함을 감

---

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집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MFO에 참여한 카나다는 CH-135 헬리콥터 9대를 투입하여 활동하였다. MFO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할 때 제공된 장비도 같이 철수하였다.

안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얻는 데 집착하기 보다 대화의 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투명성 제고방안의 협상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긍정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유도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2. 기능적 고려사항

### 가.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극복

시나이반도와 한반도의 상이점 가운데 기술적 차원에서 극복이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형 및 기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감시센서의 적절한 개발과 운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산악지형이 많고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며 관측에 비우호적인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감시센서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것은 현상을 심각히 변경하는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sup>119)</sup> 병력보다는 주요 공격용무기를 일정거리 후방으로 철수하고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완충지대의 협소함은 조기경보능력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거리 감시장비보다는 원거리 감시장비를 상

119) 병력을 기술장비로 대체하고 전방병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는 새로운 부대건설이나 잉여인력의 처리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전방병력을 대거 후방으로 철수할 경우 병력의 과다밀집을 야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축 깊숙히 설치하고 주요 기동통로상에 상주감시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up>120)</sup> 넷째, 한반도상의 기동통로가 시나이반도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는 중대형 지형이기 때문에 황대형 지형에 비해 감시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10여 군데의 기동축선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대규모 기습공격 징후를 효과적으로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sup>121)</sup> 다섯째, 소규모 인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DMZ에 방어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 나. 기술적·인적 요소의 복합체제

시나이반도의 투명성 제고체제는 가용한 기술적 체제에 바탕을 두되 인적자산을 활용한 감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술적, 인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갖추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시나이반도의 투명성 제고체제를 기술집약적 체제라고 규정하였으나<sup>122)</sup> 이러한 견해는 시나이정전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미국인의 상주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나이반도가 기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기술적 감시장비를 많이 활용한 지역임은 틀림없지만 인적요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집약적 체제라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시나이반도에서 사용된 기술적, 인적 요소는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우선 다양한 기술에 바탕을 둔 탐지·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

120) 국방부 당국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29일.

121)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28일.

122)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29.



여 인적 자원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검사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주권침해와 간첩활동에 대한 우려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였다. 시나이반도의 주권에 대한 이집트 국내의 관심에 매우 민감했던 사다트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둔이 정치적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규모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sup>123)</sup> 시나이정전협정 체결의 주역이었던 키신저 역시 미국인의 주둔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미의회도 월남 패망 이후 자국군대의 외국주둔에 조심스러워 하였다. 기술력을 활용한 투명성 제고체제는 외국인 파견단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간섭성(intrusiveness)과 정치적 위협의 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반면에 시나이반도에서 인적 요소의 활용은 제3자가 분쟁지역에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전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기술적 장비에 의해 탐지되는 문제상황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모호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투명성 제고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인적 요소의 활용은 단순히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체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주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술적 정보수집능력이 취약한 북한이 기술감시수단을 주권침해와 간첩행위의 도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기술적 정보수집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3자가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 요원의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 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남북

---

123) Ibid.

한 모두 주권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다. 현장검사에 주로 의존하는 군비통제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적대국 요원에 의한 정보의 지나친 공개와 주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 현장검사에 대단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24)</sup> 이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인적 자산을 통한 세부적인 정보수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모두 첨단감시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막대한 병력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는 점, 양측이 기술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한반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시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의 투명성 제고전략은 기술적, 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검사에 의한 간첩행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검사중에 부수적인 정보수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다. 활동주체의 다층화, 기술수단의 다양화

시나이반도에서는 UNEF II, 미국 및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각각 별도의 활동주체가 되어 지상과 공중에서 다양한 기술적 감시수단을 활용하여 투명성 제고활동에 독자적으로 참여하였다. SFM 요원의 완충지대 방문시 UNEF II가 동행하거나 완충지대내의 활동에 대해 UNEF II가 SFM에 통보하는 등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각 활동주체

124) 국방부 당국자와의 인터뷰. 1998년 5월 9일.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연결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개별주체가 다양한 기술적, 인적수단을 사용하여 투명성 제고활동을 수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기술수단간에 또한 활동주체간에 상호보완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커다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활동주체의 다층화, 기술수단의 다양화 및 적절한 상호 연계를 통해 각 주체와 수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투명성 제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수단의 다양화와 활동주체의 다층화는 단계적·점진적으로 투명성을 증대해 나간다는 원칙적 고려사항에도 일치하는 개념이다.

활동주체의 다층화는 제3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제3자의 역할은 기술과 재정의 지원에서부터 공정한 중재자·감독자, 그리고 시나이반도에서와 같이 독자적인 투명성 제고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강구할 수 있다.

기술수단의 다양화는 이미 성공적으로 합의·이행중인 기술적 방법에 추가하여 새로운 수단을 첨가함으로써 기존의 성공을 바탕으로 보다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투명성 제고의 초기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한된 기술적 방안을 합의·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따른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방법은 남북한간의 협상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추가로 합의된 투명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이행가능성도 높여주게 될 것이다.

활동주체의 다층화와 기술수단의 다양화는 투명성 제고방안의 중복성을 높임으로써 허위경보를 발령하거나 위반의 탐지에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투명성 제고과정에서 중복성은 경제적, 인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NTM 활용의 묵시적 인정

시나이반도의 사례는 분쟁당사국들이 일방적 감시(UM) 방안으로 활용중이던 NTM의 역할을 공식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체제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신뢰구축에 기여한 선례가 되었다. 이스라엘·이집트는 NTM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체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NTM에 의해 습득된 정보는 해당국의 상황판단에 사용되는 통상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준수분쟁을 해결하고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sup>125)</sup> NTM을 준수문제 논의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NTM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물론 기술적 여건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비해 NTM의 능력 면에서 월등히 앞섰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sup>126)</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집트가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이다.<sup>127)</sup> 양측은 정보수집 측면에서 CTEM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CTEM이 성격상 UTEM인 NTM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였다. CTEM과 NTM의 관계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CTEM의 합의 이행과정에서 NTM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이집트는 정전협정과 평화조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한 검증체제(주로 CM 방안으로 구성됨)보다는 자체적인 군사력

125)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p. 17.

126) 이스라엘 육군대령 네처(Gidion Netzer)와의 의견교환, 1998년 11월 3일.

127)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25~26.

과 정보수집에 더 많이 의존하였다.<sup>128)</sup> 따라서 시나이협정의 검증체제의 바탕이 되는 협력적 감시(CM)는 NTM에 기반을 둔 자체적인 정보수집(UM)에 비해 부수적인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 시나이협정의 검증체제는 이스라엘의 경우 정전협정에 대한 여론과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안전판”(safety margin)이었으며 이집트에게는 체면유지용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다.<sup>129)</sup>

남북한이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해 협상하더라도 기술적 우위에 있는 남한이 기존의 NTM 능력을 훼손하는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나이반도에서와 같이 남한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이 NTM의 역할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북한은 NTM 능력이 남한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NTM 능력이 뛰어난 제3자에 의한 감시활동을 허용하면서 이들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할 가능성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제3자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남한과 NTM 능력면에서 전략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여의치 않을 경우 NTM의 활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sup>130)</sup>

128) Itshak Lederman,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p. 222.

129) Ibid.

130) 기술적인 정보수집능력이 뒤떨어지는 국가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국가와의 협상에서 NTM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일 것이다. Ivan Oelrich,

### 마. 준수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이스라엘·이집트간 평화조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전장치를 갖추으로써 협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사항에 대한 이견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sup>131)</sup> 첫째, 지역 A, B의 이집트 군사시설에 대한 검사팀을 SFM 검사요원, SFM 연락요원 및 이집트군 연락요원 3명으로 구성하여 각각 독자적인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종료시 비교·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2중, 3중의 검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둘째, SFM은 검사결과를 표준화된 보고양식에 맞춰 신속히 발표함으로써 조약의 이행과 무관한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공통된 기준에 의거하여 조약의 이행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표준화된 보고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군사기밀사항의 과다 노출을 예방함으로써 양국내에서 평화조약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공동위원회와 연락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조약의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약이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만 조약당사국들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명성 제고의 성공 여부는 위반이나 이견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확·신속하게 공개하여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애매한 상태로 놔두는 것은 잘 알려진 협상전술의 하나이지만 이는 나중에 부작

---

“The changing rules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confidence is still possible,”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0), p. 182.

131) Brian Mandell,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p. 30.

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sup>132)</sup> 애매모호한 상황을 당시의 정치적 필요성이나 협상의 관성에 의해 그대로 두고 지나칠 경우 나중에 다시 제기되거나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 북한과 미국은 기본합의문을 체결하면서 북한의 과거핵의혹 해소를 후일로 연기함으로써 기본합의문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만 하고 구체적 사찰규정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은 협상당사자들에게 대화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적, 인적 수단에 의한 투명성 제고활동 자체 뿐 아니라 조약이행에 대한 확인과 평가에서 오해와 이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강구하고 합의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남북한의 민간인 활용

SFM의 감시활동이 민간인 주도로 운영된 것은 행정상의 문제와 제3국 군대의 주둔이 갖는 정치적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의 참여가 SFM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민간인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투명성 제고활동, 특히 현장검사와 같은 민감한 업무를 군인들이 수행하면서 조성될 수 있는 긴장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투명성 제고활동이 적대관계에서 상호견제와 감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를 위해서라는 긍정적 측면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132) Itshak Lederman,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p. 17.

있다. 셋째, 군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착상태나 불상사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활동중에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군간의 직접적인 현장대결을 피함으로써 사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 군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적어도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긴장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며 이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 제3자의 선정

시나이반도에서 미국과 UNEF II가 제3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집트가 정치적으로 미국과 UNEF II의 역할을 원했고 이들이 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수용가능성과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요건이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제3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가 바람직하다. 첫째, 제3자의 역할이 남북한에 의해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수용가능성이다. 제3자는 남북한을 모두 잘 알고, 양측이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면서 갖게 될 위험과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양자관계를 평화적으로 중재·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제3자는 기술적 능력과 경험을 견비해야 한다. 셋째,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담당할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력위주의 감시체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장비와 재원이 필요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려면 제3자



의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의 대안으로서 한반도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의 KEDO와 유사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기구의 운영과 감시활동은 회원국에서 차출된 인원과 병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도 있다. 이 기구의 명칭을 한반도투명성제고기구(Korean Peninsula Transparency Enhancement Organization: KTEO)라고 명명할 수 있다. 시나이반도의 SFM과 유사한 기능(현장검사와 지상감시센서 운용위주, 위성정찰 활동은 제외)을 수행하게 될 KTEO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투명성 제고활동에 추가하여 활동주체의 다층화 차원에서 강구하는 방안이다. KTEO는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을 기초로하여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과 미·중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고 다른 나라들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KTEO의 직원을 주요 회원국의 민간인들로 구성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에쿠아도르와 페루간의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감시위원회(Military Observer Mission Ecuador-Peru: MOMEP)도 분쟁당사국들과 주요 관련국들이 분쟁해결과 평화유지를 위해서 다자기구를 결성·운용한 성공적인 사례이다.<sup>133)</sup> KTEO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자안보협력을 뒷받침하는 지역차원의 인적·기술적 감시기구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3) MOMEP에는 미국,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보장국(guarantor state)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장국 병력으로 구성된 소규모(수십명 정도)의 현장검사요원들이 양국 국경선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에쿠아도르와 페루의 군사요원들이 현장검사시 참관인으로 동행한다. MOMEP의 활동에 관해서는, David Palmer, "Peru-Ecuador border conflict: missed opportunities, misplaced nationalism and multilateral peacekeeping,"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 World Affairs*, vol.39, no.3 (Fall 1997), pp. 109~148; David Mares, "Deterrence bargaining in the Ecuador-Peru enduring rivalry: designing strategies around military weakness," *Security Studies*, vol.6, no.2 (Winter 1996/97), pp. 91~126 참조.

## V.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구상

### 1. 정보생산활동의 분류

서로에 대한 정보생산욕구가 존재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행위, 정책 및 태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낮추고 확신의 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투명성 제고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투명성 제고의 요체는 상대방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인칭 당사자를 “정보수집자”(information seeker)로 가정할 때, 정보생산활동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적 차이를 바탕으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제2인칭 상대방은 “정보수집대상자”(information seekee)인 상대방이 된다.<sup>134)</sup>

첫째, “감시”(monitoring)와 “입증”(demonstration)의 차이이다. 감시는 정보수집자가 정보수집대상자(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전개하는 정보수집활동을 의미한다. 반면에 입증은 정보수집대상자가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들여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정보수집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활동을 뜻한다.<sup>135)</sup>

134)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양 당사자는 정보생산의 상호주의관계에 놓여 있다. 즉 제2인칭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정보수집자가 되며 제1인칭 당사자가 정보수집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제1인칭 당사자의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135) 감시와 입증의 개념적 구분은 아봇(Kenneth Abbott)이 다음 논문에서 제시한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6 (Winter 1993), pp. 1~5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생산전략은 아봇이 주장하는 바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첫째, 아봇은 감시 대신에 “검증”(verification), 입증 대신에 “확신”(as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보생산의 측면에서 볼 때 감시와 입증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

둘째, 협력과 비협력의 차이이다. 협력은 정보수집자(상대방)의 정보수집(공개)활동에 상대방(정보수집자)이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협력적 요소로 간주된다. 반면에 비협력은 정보생산활동에 일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협력적 활동은 비협력적 활동에 비해 당사자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서로에 대한 정보생산욕구가 존재하는 관련국가간에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일방적 감시(unilateral monitoring: UM), ②협력적 감시(cooperative monitoring: CM), ③일방적 입증(unilateral demonstration: UD), ④협력적 입증(cooperative demonstration: CD). UM과 UD 활동을 구성하는 방안들이 일방적인 투명성 제고방안

---

해주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이들 용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아בות 협력과 비협력의 요소를 정보생산활동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으로 구체화시켰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입증활동의 경우, 상대방의 긍정적 행위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이행되는 조치와 상대방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행되는 조치로 성격이 구분됨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정보교환을 통한 투명성의 증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전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복차원의 조치는 정보생산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넷째, 아בות 감시와 입증을 정보수집의 “전략”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 사례에서(pp. 30~53) “기술”(technique), “절차”(procedure), “장치”(device), “체계”(mechanism), “방안”(measure)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반면, 전략과 이러한 표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시와 입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되는 전략이라기 보다는 “실행방안”(measure)의 집합, 즉 “활동”(activity)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감시와 입증 활동은 각각 다양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 구성된다. 감시와 입증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실행방안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투명성 제고전략이 된다. 다섯째, 아בות 감시와 입증을 상대방의 합의사항 위반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두 가지 위반동기를 상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각각 감시와 입증 활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반의 가능성과 감시와 입증 활동의 대처영역을 너무 단순화시킨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179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UTEM)이 되고, CM과 CD 방안들은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 (CTEM)으로 분류된다.<sup>136)</sup> UM, CM, UD, CD 방안들은 모두 정보생산방안이며 UM과 CM 방안은 정보수집방안, UD와 CD 방안은 정보공개방안으로 분류된다. “정보생산주체”(information producer)는 감시의 경우 1인칭 정보수집자가, 입증의 경우 2인칭 상대방인 정보수집대상자가 된다. 정보수집자는 감시활동을 통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수집대상자는 입증활동을 통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생산대상”(information production objects)은 상대방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가 된다. 즉 제1인칭 정보수집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감시와 상대방의 입증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와 입증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네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활동별로 주요 군비통제조약에서 활용된 방안들을 사례로 들었다.

### 가. 일방적 감시(UM)

정보수집자가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정보수집활동이 일방적 감시이다. UM은 일반적으로 감시의 대상으로서의 조약이나

136)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보수집활동과 해당 정보수집활동에서 활용되는 방안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UM 활동은 일방적인 정보수집이라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특정 UM 방안은 UM 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의 하나를 의미한다. 한편 검증의 요체가 조사(examination)와 입증(demonstration)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활동은 네 가지 활동을 모두 망라하게 된다. 검증의 개념에 대해서는, *Verification in All Aspects: A Comprehensive Study 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Verification Pursuant to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52(0)* (Ottawa: Canadian Government, April 1986) 참조.

합의사항이 없이도 진행되는 통상적인 국가활동으로 간주된다. 국가 기술수단(NTM)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이 UM 활동에 해당된다.

UM 방안이 최초로 실시된 국제조약의 사례로는 1963년에 체결된 핵실험부분금지조약(Limited Test Ban Treaty: LTBT)을 들 수 있다. 미국은 LTBT에 의거하여 소련 국경선 부근에 지진파탐지감시소를 설치하고 항공정찰을 통해 방사능의 발생 여부를 탐지했으며 두 개의 특수 관찰위성을 발사하였다.<sup>137)</sup> LTBT가 지하핵실험을 제한하지 못한 주요 이유의 하나는 당시의 지진파탐지기술로 지하핵실험을 탐지할 수 없다는 우려때문이었다. LTBT이후에 체결된 많은 주요 조약에서 조약당사자들이 NTM을 통해 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138)</sup>

#### 나. 협력적 감시(CM)

정보수집자의 정보생산에 상대방이 직접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수집활동이 협력적 감시이다. 일반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는 합의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협력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CM 방안이 활용되어 왔는데, 크게 정보수집능력을 직접 제고하는 방안들과 정보수집목표의 식별력을 높여서 “감시성”(monitorability)을 향상시키는 방안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보수집자의 감시활동에, 후자는 정보수집대상자의 협력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7) Mark Lowenthal and Joel Wit,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 1985), pp. 153, 155~156.

138) 예를 들어, ABM 조약의 제XII조, SALT II 조약의 제XV조, INF 조약의 제VII조, START I 조약의 제IX조, 해저비핵지대화조약(Seabed Treaty)의 제III조 등이다. 물론 이들 조약 대부분이 고도의 NTM 능력을 보유한 미·소를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1) 정보수집능력 제고 방안

직접적으로 정보수집능력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CM 방안은 다양한 종류의 현장검사(on-site inspection: OSI)이다. 현장검사는 검사의 목적, 대상, 실시방법 및 검사활동의 주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현장검사는 “간섭성”(intrusiveness)이 가장 높은 감시방법이지만 검사의 형태에 따라 간섭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지정된 대상에 대해 지정된 시간에 검사요원을 파견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단순검사에서부터 검사시행자가 시간과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매우 과학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특수한 검사에 이르기까지 간섭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검사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미·소간의 군비통제역사를 볼 때, 현장검사는 간섭성이 높기 때문에 냉전시대에는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정보수집방법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방정책을 표명하고 현장검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검사는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신뢰구축방안에 대한 합의인 스톡홀름협약<sup>139)</sup>에서 군사훈련과 군부대의 이동에 대한 검사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INF 조약에서부터 대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up>140)</sup> START I 조약에서부터는 현장검사가 NTM을 대신하여 주요 검증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서 현장검사는 미·소간의 양자간 조약뿐아니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139) Document of the Stockholm 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September 19, 1986.

140) 물론 이전에 NPT 조약에 가입한 핵비보유국들에 대한 IAEA의 보장조치도 현장검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민간핵시설에 국한된 검사였다. 군사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검사는 INF 조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I: CFE I)과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등 다자간 조약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CWC가 지금까지 체결된 군비통제조약중 가장 강력한 현장검사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심대상 지역을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상시적인 출입구·주변감시(portal-perimeter monitoring)를 실시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현장검사의 한 형태이다. 보통 상주감시소(on-site station: OSS)를 설치하고 검사요원을 상주시키거나 현장검사장비(on-site device: OSD)를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INF 조약에서는 양국의 미사일공장 한 곳씩에 상주감시소를 설치하였다.<sup>141)</sup> START I 조약에서도 이동미사일 생산시설에 대한 상주감시를 허용하고 있다.<sup>142)</sup> IAEA는 주요 원자력시설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IAEA는 또한 특정 시설에 대한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과 격납(seal and containmen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는 현장검사장비만 설치하고 이를 중앙통제소에서 통합·운영하는 것도 CM의 한 방안이다. 시나이반도에서 SFM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완충지대에 지상감시센서를 설치·운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호합의하에 협력공중검사(cooperative aerial inspection)를 실시하는 것도 정보수집능력을 증대하는 CM 방안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CFE I 조약의 당사자들은 조약을 체결하면서 협력공중검사와 병력상한선 문제에 대한 별도의 CFE IA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sup>143)</sup> 그러나 협력공중검

141) INF 조약 제X조.

142) START I 조약 제XI조.

143) CFE I 조약, 제XIV조.

사는 유럽의 안보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보다 포괄적인 영공개방조약으로 대체되었다. 협력공중검사는 정찰위성과 같은 고도의 NTM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대체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로 병력상한선을 규제하는 정치적 합의로서 CFE IA 조약이 1992년 7월 체결되었다.

## (2)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 향상 방안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을 향상시켜서 정보수집자의 정보수집능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절한 CM 방안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군비통제조약 체결시 정보수집목표를 조정하여 “완전금지”(complete ban)에 합의하고 모든 이상징후를 조약위반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sup>144)</sup> 1963년 LTBT도 당시의 감시기술수준에 맞게 지하핵실험을 제외함으로써,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감시대상을 조정함으로써 감시성을 향상시킨 좋은 사례이다.<sup>145)</sup>

상대방이 정보수집자의 NTM을 이용한 UM 활동을 간섭하거나 은폐조치를 이용하여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수동적 방해금지방안(passive non-interference measure)도 소극적 차원에서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을 향상시키는 CM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간섭과 은

144) Ronald Mitchell, “Sources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s in international regimes,” p. 125; E. Barbier, “Elephant ivory and tropical timber: the role of trade interventions in sustainable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vol.4 (Summer 1995), pp. 1~32.

145) 비군사적 분야에서 감시성을 향상시킨 사례로는 Ronald Mitchell, “Sources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s in international regimes,” p. 125; T. Tietenberg and D. Victor,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 tradable entitlement approach to controlling global warming,” Paper prepared for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Laxenburg, Austria: IIASA, 1994 참조.



폐로 인해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SALT I 조약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이 문제에 관해 합의하였다.<sup>146)</sup> 이후 SALT II, INF, START I 및 CFE I 조약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합의되었다.<sup>147)</sup> 한편 INF와 START I 조약에서는 NTM에 의한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 능동적 방해금지방안(active non-interference measure)이 합의되었다. INF 조약에서 미·소는 어느 일방이 규제대상미사일을 은폐할 수 있는 상대방의 미사일기지내 저장소의 모든 지붕을 연간 6회, 제한된 기간동안 개방하여 NTM에 의한 감시활동을 촉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sup>148)</sup> START I 조약도 지정된 기지에 배치된 이동식미사일과 중폭격기에 대해 연간 7회 유사한 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49)</sup>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조약에서 정보수집자가 전환된 무기가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식별조치(identification measure)를 취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정교한 CM 방안이다. SALT II 조약에서는 특정미사일을 탐재할 수 있는 중폭격기에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중폭격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폭격기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폭격기와 수송기의 구분은 무기탐재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는 해당 항공기가 규제무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NT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외관상의 분명한 특징을 갖도록 하였다. SALT II 조약에서는

146) SALT I ABM 조약 제III조, SALT I 잠정협정 제V조.

147) SALT II조약 제XV조, INF 조약 제XV조, START 제IX조, CFE I 조약 제XV조.

148) INF 조약 제III조.

149) START I 조약 제III조, Annex on Agreed Statements.

이를 “기능과 관련된 관찰상의 차이”(functionally related observable differences: FRODs)라고 명명하였다.<sup>150)</sup> START I 조약도 FRODs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중폭격기가 식별가능하도록 만들고 탑재무기의 형태와 모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였다.<sup>151)</sup>

보유한도내에 있는 무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식별조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CM 방안이다. 예를 들어, START I 조약은 모든 이동식 ICBM에 대해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sup>152)</sup> CFE I 조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련번호를 매기는 절차를 활용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sup>153)</sup> 특정장비의 위치와 수량을 상시 파악하기 위해 훼손방지번호표(tamper-proof tags)를 부착하는 방안, 특정운반수단의 핵무기 탑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탐지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도 활용가능한 식별조치 차원의 CM 방안이다.

감시대상이 되는 무기와 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배치·유지하는 것과 같은 위치지정방안(location measures)도 감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CM 방안이다. INF, START I 및 CFE I 조약의 경우 무기의 폐기 및 전환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여 NTM과 OSI에 의한 감시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INF 조약에서는 규제대상 미사일을 모두 지정된 지역에 집결시켜서 집단으로 폐기장소로 옮김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sup>154)</sup> START I 조약은 감시가 어려운 이동

150) SALT II 조약, Agreed Statements Regarding the Treaty. Dean Wilkening, “Monitoring bombers and cruise missiles,”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in William Potter, ed.,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pp. 110~111.

151) START I 조약 제III조, Annex on Terms and Their Definitions.

152) START I 조약, 제IX조, Protocol on Inspections and Continuous Monitoring Activities Relating to Treaty.

153) CFE I 조약, Protocol on Inspection, 제X조 (7)~(8)항.

154) INF 조약, 제VIII, X조.

미사일을 지정된 “규제지역”(restricted area)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규제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5km<sup>2</sup>이하이어야 하며 인가된 숫자 이상의 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물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미사일과 운반수단은 제한된 횟수와 기간안에서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규제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sup>155)</sup> 실전배치되지 않은 미사일과 운반수단은 실전배치된 미사일과 운반수단이 존재하는 기지와 지역에서 적어도 100km 떨어진 “특정장소”(specified sites)에 위치해야 한다.<sup>156)</sup> CFE I 조약의 경우, 현역이 보유하지 않은 규제대상무기를 울타리로 경계선이 확정되어 있고 출입구가 제한된 “지정된 저장소”(designated permanent storage sites)에 두도록 규정하였다.<sup>157)</sup>

최근 들어 군비통제조약에 포함된 검증관련 합의사항의 규모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START I 조약의 경우 현장검사의정서만 181페이지에 달한다. 검증관련 분량의 증대는 대부분 복잡한 현장검사 절차에 기인한다. 조약당사자들은 현장검사요원의 검사권한에 대해서 뿐아니라 검사활동의 범위와 심도를 제한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후자의 주요 이유는 정보수집의 상호주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검증과정에서 상대방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를 부수적으로 수집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sup>158)</sup> 예를 들어 START I 조약에서는 현장검사요원들이 휴대할 수 있는 예비전구의 숫자와 자의 최대 길이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sup>159)</sup> 화학무기금지

155) START I 조약, 제VI조.

156) START I 조약, 제IV조.

157) CFE I 조약, 제II, IV, X, XI조.

158)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p. 28.

159) START I 조약, Protocol on Inspections, Annex 8.

협약과 같이 과학기술의 양면성으로 인해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이 민간차원의 상업활동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특히 상호성에 입각한 검사권한의 제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검증과정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WC에서는 수검국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검사국의 접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검사개념, 즉 “조절된 접근법”(managed access) 개념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일방적 입증(UD)

정보수집의 대상인 상대방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수집자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의 해소를 지원하는 정보공개활동이 일방적 입증이다. 쌍방간에 관련 합의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UD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행사되는 협조적 방안들과 상대방의 비협조적 행위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실시되는 비협조적 조치들로 구분할 수 있다.

협조적 조치의 사례로는, 국방백서, 국방예산, 군사력구조 등 국방력과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 군인사 초청과 군부대 방문 허용 및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 훈련과 이동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참관허용을 들 수 있다.

#### 라. 협력적 입증(CD)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자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즉 협력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정보공개활동이 협력적 입증이다. 일반적으로 입증활동에 관련된 협의를 제외하고

별도의 다른 합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호협의를 통해 정보수집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CD 활동이 UD 활동에 비해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CD도 UD와 같이 선의에 의거한 협력적 방안과 상대방의 비협조 행위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비협조 조치로 구분이 가능하다. CD는 서로 협력을 기대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복성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UD에 비해 관계악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협력적 입증은 일방적 입증에 해당하는 방안들을 상호합의에 의해 제도화, 법제화시킴으로써 UD 방안의 구속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온다.

CD 방안의 많은 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UD 방안을 정보수집자와의 협의하에 실행하는 것이다. 즉 일방적 통보가 상호통보로, 정보의 일방적 공개가 상호교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우선 쌍방합의하에 정보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CD 방안의 하나이다. 군사력의 감축이나 규제에 대한 약속없이 순수하게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자료교환 CD 방안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료교환은 감축이나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군비통제조약의 보조수단으로서 감시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교환된 자료(CD 방안)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절차(CM 방안)를 첨가함으로써 별개의 CD와 CM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ALT II 조약의 경우 양측이 보유한 전략무기에 관하여 상호합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자료를 갱신하기로 약속하였다.<sup>160)</sup> SALT II 조약은 미·소가 전략무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조약

---

160) SALT II 조약, 제XVI, XVII조.

으로서 양측은 주로 NTM 활동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INF 조약도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합의하였다.<sup>161)</sup> START I 조약의 경우에는 미사일, 운반수단, 탄두 및 기지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만 350페이지에 달하며,<sup>162)</sup> 양측은 교환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sup>163)</sup> CFE I 조약 역시 규제대상 무기의 보유, 폐기 및 전환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 교환에 합의하였다.<sup>164)</sup> 이상의 세 가지 조약의 경우, 다양한 UM 및 CM 방안을 통해 교환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주요 무기의 실험데이터를 상호공개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CD 방안으로 간주된다. SALT I, II 조약에서는 탄도미사일의 실험과정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상대방의 감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암호화하여 전송하기로 합의하였는데,<sup>165)</sup> 이는 소극적 차원의 CM 방안(방해금지방안)이다. 그러나 방해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많은 준수분쟁이 야기된 바 있다.<sup>166)</sup> START I 조약에서는 ICBM과 SLBM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 혹은 다른 형태의 간섭없이 그대로 전송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전송 기록을 담은 테이프와 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파격적인 CD 방안에 합의하였다.<sup>167)</sup> 군인사 교류 및 군부

161) INF 조약, 제IX조.

162) START I 조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Data Base.

163) START I 조약 제VIII조.

164) CFE I 조약, 제VIII조.

165) SALT I 잠정협정 제V조, SALT II 조약, 제XV조.

166) Gloria Duffy, *et al.*, *Compliance and the Future of Arms Contro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74-88.

167) START I 조약 제X조, Protocol on Telemetric Information. START I 조약은 또한 연간 제한된 횟수만큼 자료전송의 의무없이 자유롭게 실험을

대 상호방문도 적절한 CD 방안이다.

주요 군사훈련이나 군부대의 이동을 상호통보하는 것은 UD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신뢰를 쌓은 후 CD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에서 1986년 합의된 스톡홀름협약과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하여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엔나협약<sup>168)</sup>이다. 두 협약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훈련과 이동의 횟수를 제한하고 실시 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엔나협약은 스톡홀름협약에 비해 사전통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계획과 군사 예산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정상적 군사활동과 위험한 사태의 발생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체계도 강화하였다. 군사훈련에 대한 규모와 빈도가 아니라 성격에 규제를 가하고 시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의한 조약도 있다. 1989년 미·소가 합의한 위험한 군사활동에 관한 조약<sup>169)</sup>은 레이저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대방 국경선과 군부대 혹은 특별히 주의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 위험한 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기에방방안(crisis prevention measure)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요 군사훈련이나 군부대의 이동에 대한 상호참관도 CD 방안의 하나이다.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협력공중검사(cooperative aerial inspection)와 달리 순수한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Treaty)도 CD의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의 CSCE 회원국들은 1992년 3월 자국의 영토에 대해 다른 조약가맹국들이 간섭없이 영공정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영공개방조약은 고도의 NTM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제X조).

168) Vienna Document of the Negotiations 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signed on November 28, 1994.

169) Agreement Between Government of USA and Government of USSR on Prevention of Dangerous Military Activities, June 12, 1989.

영공정찰을 통해 별다른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국가일수록 CD로서의 의미가 큰 방안이다. 영공정찰을 통해 이미 NTM이 수집한 정보외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한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정보수집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국에 대한 영공정찰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공개방조약 협상시 미국측 협상대표단이 영공개방조약을 정보수집수단이 아니라 긴장완화장치라고 설명한 데에서도 뒷받침된다.<sup>170)</sup> 다만 영공개방조약이 다른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감시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공중검사의 실시를 영공개방조약의 절차에 따른다거나 준수문제를 논의하는 데 영공개방조약에 의거하여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공개방조약이라는 한 가지 방안이 CD와 CM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상시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유용한 CD 방안이다.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수집자의 요구에 의해서건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건, 의사소통채널을 통해 양측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소는 이러한 목적의 핫라인을 1963년 처음으로 개설한 바 있다.<sup>171)</sup> 한편 양국은 INF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1987년 9월 핵위험감소센터(Nuclear Risk Reduction Center: NRRC)를 설립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sup>172)</sup> NRRC는 START I 조약을 비롯하여

170)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p. 40.

17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USA and USSR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Direct Communication Link, June 20, 1963. 핫라인은 1971년 9월 30일과 1984년 7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개선되었다.



이후에 체결된 주요 조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는 것도 CD 방안의 하나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1년에 미·소가 체결한 핵전쟁발발방지에 관한 조약이다.<sup>173)</sup> 양국은 전쟁발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경우에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①우발적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핵폭발의 발생, ②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의 탐지, ③자국국경선을 벗어나 상대측 방향으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의 발사. 이러한 통보는 위기관리 방안(crisis management measure)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된 자문기구도 매우 중요한 CD 방안이다. 준수분쟁해결기구는 정보수집자가 상대방의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중에 갖게 되는 미심쩍은 사항이나 불확실한 점 및 조약상의 모호한 점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해명과 자료제공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의기구가 제도화된 것은 SALT I 및 II 조약부터라고 볼 수 있는 데, 두 조약은 상설협의기구(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를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SCC는 조약이 갖고 있는 모호한 사항과 상황의 변화 등 제반 여건속에서 조약의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안을 담고 있다.<sup>174)</sup> 예

172)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Risk Reduction Centers, September 15, 1987.

173) Agreement on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Outbreak of Nuclear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September 30, 1971.

174) 자문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Antonia Chayes and Abram Chayes, "From law enforcement to dispute settlement: a new approach

를 들어, ABM 조약의 제VIII조는 조약이행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다루기로 함과 아울러 조약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약속하였다. 조약당사국들은 상대방의 이의 제기에 대해 SCC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INF 조약은 SCC 대신에 새로운 자문기구로 상설검증위원회(Standing Verification Committee: SVC)를 설립하였다. SVC는 행정적 측면에서는 SCC의 기능을 대부분 답습했지만 준수분쟁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는 SCC에 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sup>175)</sup> INF 조약에서는 자문기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제기한 문제를 공동으로 다룬다거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표현이 없어진 대신, 준수관련 문제를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다. START I 조약에서는 공동준수검사위원회(Joint Compliance and Inspection Commission: JCIC)라는 새로운 기구가 창설되었다. JCIC의 창설 취지 역시 SVC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JCIC는 긴급한 준수관련 문제를 특별회의를 일정기간 개최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sup>176)</sup> 문제해결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CFE I 조약에서는 공동자문그룹(Joint Consultative Group: JCG)이 설립되었다.<sup>177)</sup> JCG는 SCC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자문기구에 비해 준수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교적 협력적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집자가 갖고 있는 안보적 관심사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논의

---

to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0), pp. 147~164 참조.

175)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p. 52.

176) START I 조약, 제XV조, Protocol on JCIC.

177) CFE I 조약, 제XVI조.

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 CD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적대 관계에서는 나의 전략과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만큼, 쌍방의 관계에서는 불신과 긴장이 고조되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요소를 갖추게 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입증의 한 방법이 된다. 제기된 문제가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항일 경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신뢰구축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오해나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증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건 혹은 상호협력적이건 입증방안이 갖는 취약점은 정보가 정보수집의 대상자에 의해 자체적으로 공개되는 데 따르는 “신뢰성”(credibility) 문제이다. 정보수집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UM과 상호협력적 CM을 통해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긴장완화조치의 일환으로 UD 조치를 구사한 상대방이 공개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CM 방안을 수용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1992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소련이 1972년 세균·독성무기금지협정(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을 위반하여 세균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중단했음을 선언하였다. 미국이 세균무기 개발금지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자 옐친대통령은 CM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①관련 민간 및 군사 시설에 대한 미국과 영국 검사요원의 접근 허용, ②미·영의 참여하에 세균무기 개발의심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③세균무기 개발에 관여한 부서의 폐지, ④세균무기 실험 장소의 폐쇄, ⑤관련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 보고.178)

각 정보생산활동별로 실시가능한 구체적 방안의 예를 <표 5-1>에 정리하였다.

<표 5-1> 정보생산활동별 실시가능한 방안의 사례

정보생산활동 분류	활동별 방안의 사례
U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M</li> </ul>
C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OSI</li> <li>- OSS, OSD, 봉인·격납</li> <li>- 협력공중검사</li> </ul> </li> <li>◦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목표 조정</li> <li>- 수동적·능동적 방해금지방안</li> <li>- 다양한 식별조치</li> <li>- 훼손방지번호표</li> <li>- 위치지정방안</li> </ul> </li> </ul>
U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력·정책 등에 대한 공개</li> <li>◦ 군인사 초청 및 군부대 방문 허용</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통보</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참관 허용</li> </ul>

178) Michael Gordon, "Russia and West reach accord on monitoring germ-weapon ban," *New York Times*, September 15, 1992, p. A6.

정보생산활동 분류	활동별 방안의 사례
C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력·정책에 대한 상호자료교환</li> <li>◦ 주요 무기의 실험데이터 상호공개</li> <li>◦ 군인사 교류 및 군부대 상호방문</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와 빈도 제한</li> <li>- 성격에 대한 규제</li> </ul> </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참관</li> <li>◦ 영공개방조약</li> <li>◦ 상시의사소통채널</li> <li>◦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한 특정사건의 상호통보</li> <li>◦ 준수분쟁에 관한 협의·해결기구</li> <li>◦ 상호 안보적 관심사항 논의</li> </ul>

#### 마. 정보생산활동간의 상호관계

상대방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대한 투명성은 네 가지 정보 생산활동이 함께 작용하면서 증대된다. 상호협력의 정도는 UM 활동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UD 활동이며, CM과 CD 활동의 협력수준이 가장 높다. CM과 CD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장검사는 단순한 자료교환(CD) 보다는 훨씬 많은 협력을 요구하는 CM 방안이다. 반면에 영공개방조약은 수동적인 방해금지방안(CM)보다 강도높은 협력을 요구하는 CD 방안이다. 같은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보생산 활동이 시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기술장비를 사용하여 자신에 관해 획득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CD의 한 방안이라면, 같은 기술장비를 정보수집자가 직접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CM 방안에 해당된다. 이

경우 후자가 전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UM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정보수집활동으로서 투명성 제고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따라서 투명성 제고 문제를 논하면서 UM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특정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UM의 능력은 해당국이 다른 세 가지 정보생산활동에 대해 갖는 입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UM 능력이 뛰어난 국가는 상대방이 취하는 UD와 CD 조치의 신뢰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UM 능력이 뛰어난 만큼, CM 활동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으며 광범위한 CM 방안에 합의하여 자신을 노출시키기 보다 UM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된 제한적인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정보수집은 극대화되고 정보노출은 극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방과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정보수집능력의 우세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UD와 CD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UM과 CM은 모두 정보수집자가 상대방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수집활동이다.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정보수집자는 상대방이 “공세적 위반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하느냐 그렇지 않으나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모든 위반사항을 억제, 탐지한다.<sup>179)</sup> 물론 오늘날 경쟁적 관계의 국가들이 협

179) 이בות은 감시와 입증에 상이한 조약위반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별개의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즉 감시활동의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공세적 위반동기”(offensive defection incentive)를 갖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려 한다는 가정하에 정보수집자가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pp. 16~17). 반면에 입증 활동은 정보수집자가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초래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 예상되는 불이익을 피하

력과 비협력의 동기가 모두 존재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sup>180)</sup> 어느 일방이 “공세적 위반의도”에 입각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위반을 자행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sup>181)</sup> 하지만 우발적 위반이나 오해·오판에 의한 방어적 위반도 정보수집의 중요한 대상임에 틀림없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정보수집자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UM과 CM의 주요 목적은 정보수집대상자의 위반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위반사항을 탐지하고 그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며, 부수적 목적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조약위반의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UM과 CM은 조약의 위반을 탐지하고 위반가능성을 억제하는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조약

---

려는 “방어적 위반동기”(defensive defection incentive)에서 합의사항을 위반하려 한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수집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증진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pp. 20~23).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감시와 입증의 활용 영역을 조약위반동기를 바탕으로 도식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견해이다. 우선 상대방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위반이나 정보수집자에 대한 오해와 오판에 의해 “방어적 위반동기”를 갖고 자행하는 위반의 경우에도, 감시활동을 통해 이러한 위반을 억제 및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감시는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발생하는 위반을 탐지·억제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보수집자가 일방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세적 위반동기”를 갖고 위반을 하려는 경우에도 입증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여 신뢰가 구축될 경우 이러한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입증활동을 통해서 “방어적 위반동기” 뿐만 아니라 “공세적 위반동기”에 의거한 합의사항 위반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80)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pp. 97~103;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pp. 3~4, 32.

181) 예를 들어, 냉전시대에 미·소간의 군비통제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공세적 위반동기에 의한 합의사항 위반가능성을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Kenneth Abbott,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p. 53.

위반동기(공세적, 방어적, 우발적 등)를 줄이는 전략이다.

UD와 CD는 모두 정보수집의 대상인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 행위, 정책 및 태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활동이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동기는 정보수집자의 “방어적 위반동기”에 의거한 위반을 우려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수집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에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대방은 정보수집자의 궁급증을 해소해 주고 정보수집에 드는 노력을 덜어주는 긴장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UD와 CD 활동의 주요 목적은 정보수집자의 위반 동기에 관계없이 자발적 혹은 상호협력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자의 조약위반 가능성을 억제하는 부수적 목적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약위반의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UD와 CD는 정보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수집자의 조약위반동기(방어적, 공세적, 우발적 등)를 줄이는 전략이다.

## 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현재 한반도에는 일방적인 정보생산활동만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남북한간의 투명성 제고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제1인칭 정보수집자인 남한의 관점을 기본관점으로 삼는다. 즉 남한의 감시와 상대방인 북한의 입증활동을 통해 북한의 의도와 행위, 정책 및 태세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전략구상의 초점을 맞춘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이 UM 과 CM 활동이며, 남한을 향한 북한의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활동이 UD와 CD 활동이다.

남한의 UM과 CM 활동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탐지·억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부수적 목적을 거두게 된다. 남한의 UM, CM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지도 향상방안과 남북한의 CM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3자의 인센티브 제공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북한의 UD와 CD 활동의 주요 목적은 북한이 자발적 혹은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남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부수적 목적을 수행한다. 북한의 UD와 C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남한의 정책과 제3자의 인센티브 제공 및 남북한이 이행할 수 있는 CD 활동의 내용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UM과 UD 활동은 UTEM에 해당되고 CM과 CD 활동은 CTEM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다음의 기본전략과 종합전략을 입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첫째, 기본전략은 개별 정보생산활동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협력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UM (상업위성의 공동 활용과 OSD의 비군사적 사용) 및 UD 방안(북한의 UD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남한의 UD 조치)도 상호협력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다. 둘째, 종합전략은 몇 개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실시가능한 정보생산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정보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점진적 실천전략이다.

**가. 기본전략: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활성화**

한반도에서 UM, CM, UD, CD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보생산대상(남한의 경우 정보수집목표, 북한의 경우 정보공개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남북한으로 하여금 정보생산활동(남한의 경우 UM, CM, CD, 북한의 경우 UD, CD, CM)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개별 정보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의 구도를 <표 5-2>에 정리하였다. 기본구도를 바탕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과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남한이 북한에 대해 그리고 제3자가 남북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치·외교·경제·군사적 차원의 반대급부, 그리고 남북한이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방안들이 남북한의 협력정도가 높아짐에 비례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단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점진적 개념을 따르고 있다.

<표 5-2> 한반도에서 개별 정보생산활동 활성화 구도

	인지도 향상	인센티브 제고
U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M 능력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인센티브 상시 존재</li> <li>◦ 남북관계 긴장고조시 또는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할수록 인센티브 증대</li> </ul>

	인지도 향상	인센티브 제고
C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협력: 정보수집능력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OSI</li> <li>- OSS, OSD</li> <li>- 협력공중검사</li> </ul> </li> <li>◦ 간접적 협력: 감시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목표 조정</li> <li>- 수동적·능동적 방해금지방안</li> <li>- 다양한 식별조치</li> <li>- 훼손방지번호표</li> <li>- 위치지정방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인센티브 상시 존재</li> <li>◦ 남북관계 긴장고조시 또는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할수록 인센티브 증대</li> <li>◦ 제3자로부터의 인센티브 제공 중요</li> <li>◦ 부수정보수집 제한 위한 조치 필요</li> </ul>
U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자신에 대한 상황 대부분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방안: 입증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고 손해가 없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에 의한 보상 가능</li> </ul> </li> <li>◦ 소극적 방안: 입증을 통해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비난·규제를 자제</li> <li>◦ 입증방안에 대한 국내 관련세력의 지지획득이 필요</li> <li>◦ 남한의 UD를 통해 북한의 UD 유도</li> </ul>
C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정보공개 목표 선정능력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D와 기본적으로 유사</li> <li>◦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등한 입증방안 실시 (상호 의무행에 의한 보상)</li> </ul>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여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여러 분야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주목한다.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군사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외교·경제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 문제를 기술적, 기능적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관련 당사국들간(특히 남북한과 북·미간)의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sup>182)</sup>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접근법”(comprehensive approach)에 바탕을 둔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포괄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별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1) 일방적 감시 (UM)

#### (가) 인지도 향상

정보수집자(남한)의 상대방(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의 NTM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UM 활동은 상대방과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보생산의 근간이며 투명성 제고과정에서도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UM 능력의 발전을 국가안보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라는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NTM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국가기밀사항으로 간주하

182) 시갈(Leon Sigal)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를 예로 들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Leon Sigal, “For sale: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NAPSNet Special Report*,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vember 11, 1998, 참조.

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NTM에 관련된 많은 기술이 민간차원에서도 활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국력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단시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선진국들의 기술 개발동향과 민감기술의 수출통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UM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나이반도에서도 이스라엘·이집트가 제3자의 감시활동을 수용한 이면에는 자체적인 정보수집능력이 존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과 같이 첨단감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선진기술을 보유한 제3자로부터 NTM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 지원의 예이다. 첩보위성이나 고공정찰비행에 의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경우에 제공하는 것은 간접적 지원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간접적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나 직접적 차원의 지원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83)</sup>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간접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정보협력도 이전과 같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다시 양국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정보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러시아 우주관측센터가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가장 신속히 확인한 것은<sup>184)</sup> 북한측

183) 국방부 당국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28일.

184) *ITAR-TASS News Agency, BBC News*, September 5, 1998.

이 러시아에 발사사실을 사전통보하는<sup>185)</sup> 등 정보분야를 포함하여 양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남북한 모두 고도의 NTM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상업용 인공위성(상업위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상정보습득의 주요 요소는 해상도와 비용이다. 냉전 종식 이후 위성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앞다투어 자국 위성능력의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좋은 해상도의 영상정보를 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상업위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상업위성은 이미 환경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해상도가 뛰어난 상업위성은 군사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상업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위성의 소유국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어느 한쪽의 군사적 동맹국보다는 한반도의 안보현안에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인도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위성정보를 구입하는 것이 양측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 (나) 인센티브 제고

국가관계에 내재하는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상황, 즉 자국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는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수집

---

185)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APSNet Daily Report*, August 31, 1998. 야코블레프(Vladimir Yakovlev) 러시아 로켓트군 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로켓트군의 다른 장교는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상반된 발언을 하였다.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회담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28일.

자의 정보수집 인센티브는 항상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UM 활동 단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고조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관련 당사국간에 긴장이 고조될수록, 또한 상대방의 정치체제가 투명성 제고를 거부하는 폐쇄체제일수록 정보수집자가 UM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는 인센티브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 (2) 협력적 감시 (CM)

한반도에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합의사항이 존재하므로 적어도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CM 활동은 별도의 새로운 합의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군사적으로 중요한 CM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비통제조약이 필요할 것이다. CM 활동은 남북한 협력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합의·이행해 나가야 한다.

### (가) 인지도 향상

인지도 향상방안은 상업위성의 공동 활용과 비군사적 분야의 OSD 사용을 제외하고 군비통제나 군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CM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시의 대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M 활동에서 정보수집자(남한)의 정보수집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행될 수 있다.

첫째,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남북한이 협력하여 남한의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CM 방안중 다양한 현장검사(OSI), 상주감시소(OSS), 현장감사장비(OSD) 및 협력공중검사가 여

기에 해당된다. 봉인·격납은 주로 원자력시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직접적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남북한의 병력 대신에 민간인을 그리고 다자기구인 KTEO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OSI는 크게 검사 대상과 시기의 사전확정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침투성의 정도에 따라 대상과 시기를 사전확정하는 것에서부터 대상과 시기중 하나만 확정하는 방안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검사자가 임의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OSS의 핵심은 인적자산의 현장 상주이다. OSS는 DMZ내 기동축선상의 GOP를 확대개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OSS를 상대 지역 DMZ 한계선을 거쳐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sup>186)</sup> OS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OSD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군사적 분야에서 OSD만 활용하는 방안은 우선 DMZ 일대에서 CM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주요 무기의 후방철수시 저장소를 감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DMZ에서 CM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한이 CM 장비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협력공중검사는 헬기와 초보적인 관측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관측장비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헬기를 정찰항공기로 대체하며 정찰고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간접적 방법으로는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보수집목표 조정, 수동적·능동적 방해금지방안, 다양한 식별 조치, 훼손방지번호표 및 위치지정방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반도에서 정보수집목표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군비통제의 대상을

186)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군당국자들은 NTM이나 협력공중검사 또는 영공개방조약보다 OSI와 OSS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30일.



병력보다 주요 공격용무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sup>187)</sup> 방해금지방안의 예로는 위성이나 항공기에 의한 감시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간 제한된 횟수와 기간 만큼 주요 무기를 공개 배치하고 배치상태에서 은폐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식별조치의 예로는 남북한이 군축에 합의하면서 일부 무기를 평화적 용도로 전환(예: 전투기를 훈련기로 전환)하기로 하는 경우 무장이 불가능하게 외부를 개조하여 식별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훼손방지번호표는 주요 무기에 훼손이 불가능한 번호표를 부착하여 OSI 과정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치지정방안의 사례는 주요 무기의 후방 철수 또는 군축에 합의할 경우 대상 무기의 저장소와 폐기장소를 지정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상업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CM 방안의 일환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측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UIM 활동의 일부를 상호협력 차원에서 CM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영상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우회적 접근법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쌍방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비군사적 현안에서부터 상업위성을 사용한 문제해결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환경분야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후와 농업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국 북동지역의 산업화로 인한 공기오염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북한 모두 자체적인

187) 검증대상으로서의 병력은 수가 많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원거리 정찰 수단에 의한 파악이 어렵고, 민간인으로서의 위장이 용이하다는 단점을 갖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초기단계에서 규제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20, 186.

환경문제를 갖고 있는 등 한반도에서 환경오염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한 상황이므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NGO가<sup>188)</sup> 공기오염과 북한의 홍수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바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는 쌍방의 주요 군사시설과 훈련 및 이동 상황을 상업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정보의 교환을 시작으로 해서 영상 정보에 대한 공동 분석, 기술요원의 공동 교육·훈련, 더 나아가 상업 위성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는 센터를 관문점에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 협력의 증대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OSD를 비군사분야에서 활용하는 것도 CM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우선 환경·농업·기후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진과 감시정보의 상호교환과<sup>189)</sup>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계적을 추적하는 기술(Authenticated Tracking and Monitoring System: ATMS)<sup>190)</sup>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과 같이 현대화된 NTM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조약에서 NTM의 활용을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NTM 능력을 보유한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NT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188) 물론 북한에는 순수한 NGO가 없지만 남북한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북한당국이 NGO로 지정한 단체의 지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189) 일반적으로 지질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나 주요 연구기관은 대부분 지진관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여건이 이렇지 못할 경우,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단체가 이러한 장비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90) ATMS는 이동물체의 안전상황과 위치에 관한 자료를 국제해양위성(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INMARSAT)을 통해 수집하는 기술이다. J. Lee Schoeneman and Eric Fox, *Authenticated Tracking and Monitoring System (ATMS): System Description* (Albuquerque, New Mexic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December 1997).

것이다.<sup>191)</sup> 이스라엘·이집트가 시나이반도의 배치제한지대 전역에 대한 영공정찰을 미국에 의존한 것도 제한된 영역에서 자국의 NTM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완충지대 중간까지만 독자적 정찰 허용)에 제3자를 참여시킨 성공적인 사례이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독자적 정찰 활동을 허용하거나, 미·중 혹은 미·러 정찰정보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이 한반도 전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찰정보를 남북한에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192)</sup> 장기적으로는 지역차원의 위성감시체제를 설립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5년 7월 스웨덴은 국제적인 군비통제조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분쟁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비동맹중립국들이 중심이 되어 인공위성(arms control and conflict observation satellite: ACCOS)을 보유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sup>193)</sup> 특히 4자회담과는 별도로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지역차원의 대화가 진전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정치적 합의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역위성감시센터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엔차원의 감시기구설립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유엔검증전문가그룹은 유엔이 국제적인 군비통제조약, 신뢰구

191) 이 경우 남북한이 제3자로부터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참여가 CM 방안으로 간주된다.

192)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유럽 및 일본의 고위관리들이 위기관리와 평화유지라는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국이 보유한 정찰위성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Cooperative recon gains momentum,"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October 9, 1995, pp. 28~29.

193) Bhupendra Jasani, "Satellite monitoring programmes and prospects," in Bhupendra Jasani and Toshibomi Sakata, eds., *Satellites for Arms Control and Crisis Monitor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41~43.

축방안 및 갈등관리활동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을 갖출 것을 건의한 바 있다.<sup>194)</sup> 제3자가 위성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남북한에 대해 OSD를 상호설치하여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sup>195)</sup> CM 방안중 직접적 협력에 해당하는 OSI, OSS, OSD 및 협력공중검사를 제3자의 참여하에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나이반도에서 SFM의 감시활동과 같이 제3자의 독자적 참여를 허용하고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서부터 제3자의 중재하에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

#### (나) 인센티브 제고

CM 활동의 정보생산주체인 정보수집자(남한)의 인센티브는 UM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기본적인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상대방(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UM에서와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인센티브가 증가할 것이고 체제의 속성상 남한이 북한에 비해 CM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한편 CM 활동의 인센티브는 제3자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남북대화를 유도하면서 남북한 양측에 대해 CM 방안 (특히 OSD의 사용에 대한 협력방안)을 합의·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자는 남북한이 CM

194) *Verification in All Its Aspects, Includ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 of Verification*, UD Document A/50/377, September 22, 1995, paragraph 323.

195) George Lindsey, "Addressing aspects of mutual security and the element of surprise attack within the context of a bilateral Korean Peace Treaty," a paper presented at the 4th North Pacific Arms Control Workshop (NPACW IV) on June 2~5, 1998 at Victoria, Canada, p. 4.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할 수 있다. 첫째, 시나이반도에서 활동중인 MFO나 중남미의 MOMEF, 러시아의 Votkinsk, 미국의 Magna에<sup>196)</sup> 남북한 요원을 초청하여 CM 활동에 대한 양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제3국이나 KTEO가 남북한으로 하여금 CM 관련 기술장비에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실용적인 여건조성 차원의 조치이다. 친숙화 조치는 남북한이 기술적 감시장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한반도와 지형과 기후조건이 유사한 제3국 영토에서 CM 장비를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남북한 공동토의를 주선하여 기술장비의 효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 시범운영 지역을 DMZ로 이전하고 시험운영 결과를 공동토의하는 방안, 더 나아가 남북한이 제3자의 중재하에 주도적으로 DMZ 일부지역에서 CM 장비를 시험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남북한이 CM 장비를 DMZ에서 본격적으로 운용하면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자의 역할이 단순한 권고나 여건조성 차원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의를 수용하는 대가로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경우 제3자가 창출하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반대급부의 예로는 CM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하거나 CM 활동과는 무관한 다른 현안에서 당사국의 이익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시나이반도에서 미국의 중재와 참여는 이러한 다양한 반대급부가 모두 현실화되어 C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다.

196) 미국과 러시아는 1987년 INF 조약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미사일 생산기지의 곳에 상주감시소(OSS)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술적, 재정적, 외교적, 군사적 지원이 CM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TEO의 유사한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기술적 지원은 남북한 기술 요원에 대한 훈련 및 감시장비의 제공과 개발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양측이 자체부담을 통해 현재의 인적 위주의 감시체제와 다른 새로운 방안을 시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3자의 재정적 지원은 남북한의 CM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외교적 지원은 CM 활동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CM 활동을 거부하는 측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군사적 차원의 반대급부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대북 군사력 불사용·불위협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투명성 제고활동을 통한 손실과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정보지원 확대와 한·미 안보동맹 강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CM 활동과 전혀 무관한 기타 현안에서 남북한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도 CM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사안이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미관계의 점진적 개선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진전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CM 활동의 인센티브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바로 정보수집자가 상대방에 관한 부수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를 적절히 제한하

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쌍방의 CM 활동 참여동기를 제고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체결된 군비통제조약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진 사항이다. 예를 들어, START I 조약에서 현장검사요원의 권한과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는 매우 구체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CM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가장 단순한 방안은 검사요원에 의한 보고양식을 표준화하고 가능하면 컴퓨터화하여 CM 활동의 목표를 보고양식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설혹 부수적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최소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sup>197)</sup> 이 방안은 시나이반도에서 활용되어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CWC에서와 같이 검사요원이 민감한 시설과 장비에 접근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검사방법, 즉 “조절된 접근법”(managed access) 개념을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일방적 입증 (UD)

#### (가) 인지도 향상

일방적 입증의 경우에는 정보생산주체가 정보수집대상자인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 자신의 의도와 상황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UD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별도로 높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

197) 비군사적 분야에서 정보공개양식을 단순화하여 부수정보의 노출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정보공개의 인센티브를 제고한 사례에 관해서는 Ronald Mitchell, “Sources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s in international regimes,” p. 126 참조.

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자료확보가 UD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정보공개자인 상대방이 공개할 대상인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만큼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다.<sup>198)</sup>

#### (나) 인센티브 제고

남한을 포함하여 북한의 변화를 희망하는 당사국들이 북한의 UD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UD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북한의 정보공개 조치를 환영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개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쌍방간에 구체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정보수집자)은 북한(상대방)의 UD 조치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응하는 수밖에 없다. 남한이 유사한 UD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우호적인 조치(예: 경제적 지원)를 취할 수 있다. UD 활동의 보상은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UD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제3국이 보전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남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8)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3단계 중거리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4일후, 미사일의 구체적 궤적을 공개하면서 발사의 목적이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평화적인 것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중앙방송」, 1998년 9월 4일. 북한 당국의 발표는 자신들의 과학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만약 이러한 발표가 없었다면 북한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의혹이 훨씬 크게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신속한 발표는 일방적 입증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UD 방안을 통해 정보공개자의 잘못된 점이 드러날 경우 비난과 제재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안이다.<sup>199)</sup>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극적 방안은 정보공개 의욕을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UD 활동을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남한내 보수층의 강력한 비판이 예상되므로 행정부와 대통령이 확고한 대북한 협력의지를 갖고 국민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급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북한에 표명하고 이를 견지해야 한다.

한편 UD 방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방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국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sup>200)</sup>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정권이 UD 방안을 실시하면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사정보의 공개에 대한 북한군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군부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내에서 북한 군부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현재 위상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약속하며, 군부를 협상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적

199) 예를 들어, IAE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 클락(de Klerk)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지만 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남아공과 3년에 걸친 협조 끝에 데 클락 대통령의 발표를 사실로 확인하고 남아공이 더 이상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Rodney Jones and Mark McDonough, *Tracking Nuclear Proliferation: A Guide in Maps and Charts, 1998*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8), p. 243.

200) Ronald Mitchell, "Sources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s in international regimes," p. 118.

차원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북한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문(무기수출 제외)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UD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군사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CM 방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미국이 주된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UD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이 상호협력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UD 방안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UD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센티브 제고전략이다. 이 경우 남한의 목표는 기초적인 신뢰를 조성하고 자신의 UD 방안을 CD 방안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활동을 제도화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남한은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 전략<sup>201)</sup> 개념에 입각하여 제한된 UD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GRIT 전략은 적대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된 당사자들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긴장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면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다. GRIT 전략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관념을 변화시켜서 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다.<sup>202)</sup>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선의와 긴장완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UD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sup>203)</sup>

201) Charles Osgood,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pp. 295~325; Charles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202)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pp. 31~32.

203) GRIT 전략이 실제로 적용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케네디 행정부의 관리는 쿠바미사일 위기시 GRIT 전략의 주요 원칙들이 이용되었다는 점을 오스굿(Charles Osgood)에게 알려주었다. Alexander Georg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p. 706.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규정하는 조약의

남한이 실행할 수 있는 UD 방안으로는 국방백서 발간, 국방예산 및 국방정책 공개, 군사력 현황에 대한 공개, 군인사 초청 및 군부대 방문 허용,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통보 및 연례일정 공개,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참관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남한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치는 국방백서의 발간, 국방예산의 개략적 공개, UN 재래식 무기등록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군사력 현황의 공개,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통보와 참관 허용 등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우려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의 경우, 방어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1982년부터 매년 북한에 통보하고 참관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이 거부하였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체코와 폴란드는 매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참관하였다.<sup>204)</sup>

남한이 UD 활동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UD 활동이 현재 남한이 점유하고 있는 기술적 정보수집 능력의 대북 우위를 손상하는 경우 미국의 추가적인 정보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보력의 상대적 손실감을 느끼게 될 남한 군부의 반대를 무마함으로써 남한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우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남한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계층이 다양하며 여론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북한에 대한 국

---

협상시에도 소련은 스탈린 사후 GRIT 전략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서방 협력조치를 취하였다. Deborah Larson,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7), pp. 34~52.

204) 남북회담사무국 관계자와의 인터뷰, 1998년 10월 28일.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 이후 중단되고 있다.

민 여론, 해당 방안이 야기할 비용과 위험 및 기존의 행위와 태세에 가져올 변화의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즉 국민이 UD 방안을 실시하는 행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국민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UD 방안의 위험과 비용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고, 기존의 태세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협상과 이행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UD 활동의 초기에는 가급적 상징적인 방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4) 협력적 입증 (CD)

협력적 입증도 남북협력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합의·이행되어야 한다.

##### (가) 인지도 향상

UD 활동과 달리 정보수집대상자(북한)가 정보수집자(남한)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공개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CD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sup>205)</sup> 정보수집자와의 협력은 정보공개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판단·결정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정보공개목표의 선정능력을 높이고 입증의 효과를 배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UD에 비해 CD에서 정보수집대상자의 인지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5) 소련붕괴 이후 소련의 핵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조와 노력이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핵물질 보유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Ann Florini, "A new role for transparency," p. 59. 즉 핵물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수집자와 상대방의 협력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한 것이다. 플로리니는 이를 투명성이 달성하는 세 가지 효과중 하나인 공개효과(revelatory effect)라고 표현하였다. Ibid.

## (나) 인센티브 제고

CD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방안은 기본적으로 UD 활동에서와 같다. 다만 차이점은 정보수집의 상호관계에 의거하여 같은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같은 분야에서 동등한 규모로 보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CD에서는 남북한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한 입증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남북한이 상호협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CD 방안으로 국방백서의 내용 상호협의 및 발간, 국방예산과 국방정책 상호공개, 군사력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정보교환, 군인사 교류 및 군부대 상호방문,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세미나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군사교리에 대한 세미나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sup>206)</sup> 남북한은 쌍방의 군사교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

206) 유럽에서 NATO와 WTO간에 1990년 1월과 1991년 10월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군사교리에 대한 세미나의 경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서는 군사력의 형태와 구조(군조직, 명령체계, 인사제도, 군사시설, 전시대비능력 등), 군사훈련, 국방예산 문제 등에 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군조직에 대한 토론에서 군사당국자들은 상대방의 군구성과 배치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군사훈련에 관한 토의에서는 대규모 훈련이 갖는 문제점들이 솔직히 논의되었다. 또한 각국의 국방예산이 어떻게 책정·할당되는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세미나 과정에서의 상호정보교환은 군사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안정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차례의 군사교리 세미나는 단순히 각국의 군사정책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세밀한 수준까지 군사안보문제를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Peter Almqvist, "The Vienna military doctrine seminar: flexible response vs. defensive sufficiency," *Arms Control Today*, vol.20, no.3 (April 1990), pp. 21~25; Wendy Silverman, "Talking 'Sufficiency' in the Hofburg Palace: the second seminar on military doctrine," *Arms Control Today*, vol.21, no.3 (December 1991), pp. 14~17.

이 바람직하다. 국가가 전력을 운용하는 기본지침인 국방정책에 투영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므로써 군사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통보와 연례일정의 상호공개 및 상호참관도 실시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동은 규모와 빈도를 단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훈련·이동의 위험한 성격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군의 대규모 남하와 남한군의 대규모 북상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우발적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약의 내용에는 DMZ 일대에서 군사훈련 금지 및 상대영토를 향한 장거리 투사무기의 실험과 사용의 금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시에 대비한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CD 방안이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의거하여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중단된 적이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바로 직통전화를 가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전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하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화의 장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도를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CD 방안이다.

영공개방조약을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CD 방안이다. 영공개방은 상업위성의 사용에서와 같이 우회적 및 단계적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다. 우선 남북한이 자연재해의 여파와 환경오염의 정도를 관측·평가하기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순수과학적 목적의 영공정찰을 실시한다. 초기에는 남북한의 NGO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군사적 차원에서 우

선 양측의 군사요원을 유럽으로<sup>207)</sup> 초청하여 영공개방조약의 이행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이행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DMZ 일부지역에 대한 헬기검사를 시작으로 하여, 헬기검사를 DMZ 전역으로 확대하고, DMZ에 대한 항공정찰을 시작하면서 헬기검사의 영역을 상대방 영토의 후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항공정찰 영역을 헬기검사 영역만큼 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sup>208)</sup> 이와 함께, “점진적 기술향상 개념”(graduated techniques concept)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사용가능한 감시장비의 수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 안보적 관심사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도 중요한 CD 방안이다. 이 부문에서 가능한 의제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최근 개최된 4자회담에서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CD 조치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한반도에서 실현가능한 세부 정보생산방안들을 각 활동별로 인지도 향상과 인센티브 제고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5-3>과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7) 유럽에서 1992년에 체결된 영공개방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27개 서명국들이 자체적으로 양자간 영공정찰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별도의 영공개방조약을 체결·이행중에 있다.

208) 한반도에서 영공개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Amy Smithson and Seongwhun Cheon, “Open Skies’ over the Korean Peninsula: breaking the impasse,” *Korea and World Affairs* (Spring 1993), pp. 57~77 참조.

<표 5-3> 한반도에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세부 정보생산방안들

	인지도 향상
U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M 능력의 독자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집행</li> <li>◦ NTM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제3자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장비제공, 기술개발 지원</li> <li>- 간접적: 첩보위성·항공정찰 정보제공 활성화</li> </ul> </li> <li>◦ 상업위성 활용</li> </ul>
C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협력: 정보수집능력 확대 (민간인, KTEO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O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과 시기의 사전확정</li> <li>· 대상만 사전확정</li> <li>· 시기만 사전확정</li> <li>· 대상과 시기 모두 검사자가 임의선정</li> </ul> </li> <li>- OSS (OSD와 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내의 기동 축선상의 GOP를 OSS로 확대·개편</li> <li>· OSS를 상대지역 DMZ 한계선으로 전진 배치</li> <li>· OSS의 배치 지점을 상대지역 후방으로 확대</li> </ul> </li> <li>- OSD (군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에서의 CM 장비 활용 (제3자의 인센티브 필요)</li> <li>· 주요 무기의 후방철수시 저장소 감시</li> </ul> </li> <li>- 협력공중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기 및 기초관측장비 사용</li> <li>· 관측장비 수준의 단계적 확대</li> <li>· 정찰항공기 사용, 고고도 유지</li> <li>· 정찰항공기 고도의 단계적 저하</li> </ul> </li> </ul> </li> <li>◦ 간접적 협력: 정보수집목표의 감시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목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비통제합의시 병력보다 주요 공격용무기에 초점</li> </ul> </li> <li>- 수동적·능동적 방해금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무기의 공개 배치 및 은폐물 사용 금지 (횡수와 기간 제한)</li> </ul> </li> <li>- 다양한 식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축·전환합의시 전환대상무기를 식별가능하게 함</li> </ul> </li> <li>- 훼손방지번호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무기에 훼손방지번호표 부착, 위치와 수량 상시 파악</li> </ul> </li> </ul> </li> </ul>



	인지도 향상
C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지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무기의 후방철수 합의를 철수무기의 저장소 지정</li> <li>· 군축·폐기합의시 폐기장소 지정</li> </ul> </li> <li>◦ 상업위성 공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후·농업 분야에서 우선 협력, 친숙도 제고</li> <li>· 상업위성이 촬영한 주요 군사시설의 영상정보 교환</li> <li>· 영상정보 공동 분석</li> <li>· 관련 기술요원의 공동 교육·훈련</li> <li>· 상업위성정보 공동수신·분석 센터 설립</li> </ul> </li> <li>◦ OSD (비군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후·농업 분야에서 우선 협력, 친숙도 제고</li> <li>· 지진파 감시정보의 상호교환</li> <li>· 금강산관광선의 운항궤적 공동추적: ATMS 활용</li> </ul> </li> <li>◦ 제3자의 직접 참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M 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독자 경찰활동</li> <li>· 미·중 또는 미·러 경찰정보협력위원회</li> <li>· 지역위성감시센터 설립 (장기적 구상)</li> </ul> </li> <li>- CM 활동 관련 (직접적 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SI, OSS, OSD, 협력공중검사</li> </ul> </li> </ul> </li> </ul>
UD 활동	◦ 북한이 자국의 군사현황에 대한 점검·확인
CD 활동	◦ 협력을 통한 정보공개목표의 선정능력 제고

<표 5-4> 한반도에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세부 정보생산방안들

	인센티브 제고
UM 활동	◦ 남한의 대북 정보수집 인센티브 상시 존재 (남북관계 긴장고조시 또는 북한이 폐쇄정책을 고수할수록 인센티브 증대)

	인센티브 제고
CM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대북 정보수집 인센티브 상시 존재 및 제3자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li> <li>◦ 제3자가 남북한에 대해 CM 실시를 단순히 권고</li> <li>◦ 제3자가 CM 실시의 여건조성 차원의 조치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FO·MOMEP이 남북한 요원 초청 및 CM 활동에 대한 이해 제고</li> <li>- CM 장비 친숙화 조치 (KTEO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에 의한 제3국 영토에서 CM 장비의 시범운용 및 공동토론</li> <li>· 제3자의 시범운용 지역을 DMZ로 이전 및 공동토론</li> <li>· 제3자의 중재하에 남북한이 DMZ 일부지역에서 CM 장비 시범운용</li> <li>· 남북한이 DMZ에서 CM 장비 본격운용 및 대상지역 단계적 확대</li> </ul> </li> </ul> </li> <li>◦ 제3자의 구체적 반대급부 제공 (미국참여 필요, KTEO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범위한 기술·재정·외교·군사적 반대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남북한 기술요원에 대한 훈련, 감시장비 제공 및 개발지원</li> <li>· 재정: CM 장비 구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li> <li>· 외교: CM의 국제분위기 조성 및 거부측에 대한 외교적 압력 행사</li> <li>· 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군사적 불이익 불발생 보장 (대북 무력불사용·불위협 재확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li> <li>- 대남: 손실·위험 상쇄조치 (미국의 정보지원 확대, 한·미 안보동맹 강화 조치)</li> </ul> </li> </ul> </li> <li>· CM과 무관한 현안에서 남북한의 이익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북·미관계 점진적 개선, 대북 경제제재 완화</li> <li>- 대남: 남한의 대북정책 준중 및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의 조화 유지</li> </ul> </li> </ul> </li> <li>◦ 부수정보수집 방지위한 조치 필요 (OSI에 항상 수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양식 표준화</li> <li>- 검사요원의 권한 제한 (managed access)</li> </ul> </li> </ul>

	인센티브 제고
U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보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이 유사한 UD 조치로 응답</li> <li>- 남한이 다른 분야에서 우호적 조치 실시</li> <li>- 제3자에 의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러가 남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li> </ul> </li> </ul> </li> <li>◦ 소극적 자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협력의지 표명·관철</li> <li>-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표명·견지</li> </ul> </li> <li>◦ 북한정권이 군부의 지지를 획득하도록 군부에 대한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반대급부 제공 (미국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외교: 북한내에서 군부의 지위 인정 및 현재의 위상 불변 공약, 군부를 협상 상대자로 인정, 군부의 국제무대 진출기회 마련</li> <li>- 경제: 대북 경제제재 완화, 군부 주도의 경제부문을 우선적으로 활성화 (무기수출 제외)</li> <li>- 군사: 군사적 불이의 불발생 보장 (대북 무력불사용·불위협 재확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li> </ul> </li> <li>◦ 남한의 UD를 통해 북한의 UD 유도 (GRIT 전략 개념에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백서 발간</li> <li>- 국방예산 및 국방정책 공개</li> <li>- 군사력 현황에 대한 공개</li> <li>- 군인사 초청 및 군부대 방문 허용</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통보 및 연례일정 공개</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참관 허용</li> <li>- 손실·위험 상쇄조치 (미국의 정보지원 확대, 한·미 안보동맹 강화 조치) 및 국민적 지지 확보 요망</li> </ul> </li> </ul>
C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D와 기본적으로 유사 (적극적 보상, 소극적 자제 및 국내지지 획득)</li> <li>◦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등한 입증방안 실시 (상호 의무이행에 의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백서의 내용 상호협의를 발간</li> <li>- 국방예산과 국방정책 상호공개</li> <li>- 군사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교환</li> <li>- 주요 무기의 실험데이터 및 배치계획 상호공개</li> </ul> </li> </ul>

	인센티브 제고
CD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사 교류 및 군부대 상호방문</li> <li>-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세미나 개최</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통보와 연례일정 상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동의 규모와 빈도 규제</li> <li>· 군사훈련·이동의 위험한 성격 규제 (상대방을 향한 대규모 군사이동)</li> </ul> </li> <li>-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참관</li> <li>- 우발적 전쟁방지 위한 조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Z 일대에서 군사훈련 금지</li> <li>· 상대방을 향한 장거리 투사무기 실험·사용 금지</li> </ul> </li> <li>- 위기시에 대비한 의사소통채널 확보</li> <li>- 정전위원회 기능 복원</li> <li>- 군사공동위원회 가동</li> <li>- 영공개방조약 체결 및 단계적 이행 (각 단계별로 사용가능한 감시장비의 수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과학적 목적의 영공정찰비행 공동 실시</li> <li>· 남북한 요원을 유럽에 초청, 영공개방조약의 이행에 대한 이해 제고</li> <li>· DMZ 일부지역에 대한 헬기검사</li> <li>· 헬기검사를 DMZ 전역으로 확대</li> <li>· DMZ에 대한 항공정찰 시작 및 헬기검사 영역을 후방으로 단계적 확대</li> <li>· 항공정찰 영역을 헬기검사 영역만큼 후속적으로 확대</li> </ul> </li> <li>- 서로에 대한 안보관심사항 논의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WMD 보유, 주한미군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li> <li>·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li> </ul> </li> </ul>

**나. 종합전략: 개별 정보생산활동의 통합 운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생산활동 자체를 활성화하는 전략과 더불어 각각의 정보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종합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종합전략은 NTM 능력의 독자적 개발과 같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방안을 제외하고 상호협력을 염두에 두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행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전략이다. 종합전략은 몇 가지 단계를 상정하고 세부 정보생산방안들을 실현가능한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를 마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에 바탕을 두게 되므로 단계별로 세부 정보생산방안을 배치하는 것은 다소의 임의성을 떨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이행수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제1단계는 투명성 제고의 초기단계로서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이 실시된다. 제2단계는 군사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단계로서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방안들이 실시된다. 제1, 2 단계에서는 군비통제와 군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제3단계는 군비통제 단계로서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를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이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일부 공격용무기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한다. 제4단계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군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주요 공격용무기의 감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이상의 네 단계에 걸친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평화공존 체제가 정착된다. 각 단계와 활동별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정보생산방안을 인지도 제고와 인센티브 향상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1단계: 초기 투명성 제고단계

UM 활동에서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상업위성의 사용을 강화해나간다.

CM 활동의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는 남북한이 환경·기후·농업 분야에서 상업위성을 공동사용하면서 비군사적 분야에서부터 영상정보의 공동획득과 사용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한다. 양측의 NGO가 중심이 되어 상업위성을 사용하여 한반도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한다. OSD를 환경과 농업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사용하고 지진과 감시정보를 상호교환하며 금강산관광선에 대한 공동추적을 위해 비정부차원에서 ATMS 기술을 활용한다.

CM 활동의 인센티브 제고 측면에서는 제3자가 남북한에 대해 CM 방안(특히 OSD를 군사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안)의 실시를 권고한다. MFO, MOMEF, Magna 및 Votinski에 남북한 요원을 초청하여 CM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CM 장비의 친숙화 조치로서 제3자가 한반도와 지형과 기후조건이 유사한 제3국 영토에서 CM 장비를 시범운용하고 남북한을 초청하여 그 결과에 대한 공동토의를 가짐으로써 CM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친숙화 조치를 이행하는 데는 KTEO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의 UD 활동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남한은 확고한 대북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소극적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북한이 UD 조치를 취할 경우 남한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우호적인 조치로 응답하겠다는 적극적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견지한다. 아울러 제3국이 북한의 UD 조치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와 함께, 남한은 북한의 UD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UD 방안(국방백서 발간, 군사력 현황과 국방예산에 대한 개략적 공개,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통보, 연례일정 공개 및 참관 허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새로운 UD 방안을 실시한다: 국방정책 공개, 군인사 초청 및 군부대 방문 허용, 주요 군사훈련·이동의 연례일정 공개.

CD 활동에서는 위기에 대비한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남북한이 1992년 설치하기로 합의한 군사직통전화선을 조속히 가설한다. 한편 제1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중요한 CD 방안이 바로 영공개방이다. 남북한의 NGO가 환경오염의 평가와 대책마련을 위한 순수과학적 목적의 자료수집을 위해 제한된 영공정찰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군사분야에서는 양국 군사요원을 영공개방을 실시중인 유럽에 초청하여 영공개방조약의 이행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아울러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안보적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WMD 보유와 주한미군의 핵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 (2) 제2단계: 군사적 투명성 강화단계

UM 활동에서는 제3자(주로 미국)가 남한에 대해 첩보위성과 항공정찰에 의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한다.

CM 활동의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는 남북한이 DMZ내 기동축선상의 GOP를 OSS로 확대·개편하고, DMZ내에서 CM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상업위성이 촬영한 주요 군사시설과 군사훈련 및 이동에 관한 영상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OSS의 설치에는 제3자의 직접 참여도 가능하며 CM 장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제3자

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CM 활동의 인센티브 제고 측면에서는 CM 장비의 친숙화 조치로서 제3자의 CM 장비 시범운용 지역을 DMZ로 이전하고 제1단계에서와 같이 장비의 운용결과에 대한 공동토론을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자의 주선하에 남북한이 DMZ 일부지역에서 CM 장비를 시험운용한다. CM 장비의 친숙화 조치에는 KTEO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단계에서 CM 활동의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며 KTEO의 활용 또한 가능하다. 우선 기술적 차원에서 남북한 기술요원에 대한 훈련과 감시장비의 제공 및 개발을 지원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CM 실시를 위한 국제분위기를 조성하며 거부측에 대한 외교적 압력도 행사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예: 대북 무력불사용·불위협 재확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남한에 대해서는 발생가능한 손실과 위협을 상쇄하는 조치(예: 미국의 정보지원 확대, 한·미 안보동맹 강화 조치)를 취한다. CM과 무관한 현안에서 남북한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인센티브 제고의 방법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의 점진적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시행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의 대북 정책을 존중하고 북·미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진전간의 조화를 유지한다.

북한의 UD 활동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실시중인 사항외에 미국의 참여하에 북한군부에 대한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군부가 UD 활동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외교적으로 북한내에서 군부의 지위를 인정하고 현재의 위상에 변화가 없음을 약속하며 군부를 협상상대자로 인정하고 군부



의 국제무대 진출기회를 마련한다. 경제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하되 군부가 관할하는 경제부문(무기수출 제외)을 우선적으로 활성화 한다. 군사적으로 UD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군사적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CM 활동에서와 같은 반대급부를 제 공한다. UD 활동으로 인해 남한이 받을 수 있는 손실과 위협을 상쇄 하기 위한 조치가 CM 활동에서와 같이 취해진다. 아울러 남한이 UD 및 CD 활동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국민 흥 보를 강화한다.

CD 활동에서는 남북한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입증 방안을 실시한다: 국방백서의 내용 상호협의·발간, 국방예산과 국방 정책 상호공개, 군사력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정보교환, 군인사 교류 및 군부대 상호방문, 국방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세미나 개최, 주 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통보와 연례일정 상호공개(규모와 빈 도 및 위험한 성격도 규제), 주요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상호참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 복원과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DMZ 일부 지역에서 헬기를 사용한 군사적 목적의 영공개방 실시.

### (3) 제3단계: 군비통제 실시단계

UM 활동에서는 제3자(주로 미국)가 남한의 NTM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CM 활동의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첫째,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 간접적 방안이 실시된다. 직접적 방안으로 OSI (우선 대상과 시기를 사전확정하고 후에 대상만 사전확정하는 방법으로 발전), OSS를 상대 지역 DMZ 한계선으로 전진 배치, 주요 무기의 후방철수시 저장소 감

시를 위한 OSD 활용; 협력공중검사(우선 헬기와 기초관측장비를 사용하고 후에 관측장비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을 실시한다. 직접적 방안을 실시하는 데는 민간인과 KTEO의 활용도 가능하다. 간접적 방안으로 군비통제의 대상을 병력보다 주요 공격용무기로 선정, 주요 무기의 공개배치 및 은폐물 사용 금지(횟수와 기간을 제한), 주요 무기의 후방철수 합의시 철수무기의 저장소 지정 방안을 실시한다. 둘째, 상업위성의 공동활용 분야에서는 주요 군사시설에 관한 영상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관련 기술요원을 공동으로 교육·훈련시킨다. 셋째, 제3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미국의 독자정찰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남북한이 동등하게 공유한다. OSI, OSS, OSD 및 협력공중검사에서도 제3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CM 활동의 인센티브 제고 측면에서는 CM 장비에 대한 친숙화 조치의 가장 발전된 단계로 남북한이 DMZ에서 CM 장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친숙화조치를 이행하는 데는 KTEO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3단계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반대급부는 재정적 지원이다. 즉 CM 장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구입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KTEO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3 단계에서는 OSI가 실시됨으로써 부수정보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고양식을 표준화하고 가능하면 컴퓨터화하며 검사요원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3단계에서부터는 남북한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UD 활동이 실시되지 않는다.

CD 방안으로서 우발적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DMZ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금지 및 상대방을 향한 장거리 투사무기

의 사용과 실험 금지 포함), 제2단계에서 시작한 영공개방을 확대한다 (우선 헬기검사를 DMZ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후 DMZ에 대한 항공정찰을 시작하면서 헬기검사 영역을 후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4) 제4단계: 군사력 감축단계

UM 활동에서는 기존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외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

CM 활동의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은 제3단계에서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첫째, 제3단계에서 합의한 방안에 추가하여 군축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직간접적 방안이 실시된다. 직접적 방안으로 OSI (우선 시기만 사전확정하고 후에 대상과 시기를 모두 임의 선정하는 방법으로 발전), OSS의 배치지점을 상대지역 후방으로 확대, 협력공중검사(정찰항공기의 사용 시작, 후에 항공기 고도를 단계적으로 낮춤) 방안을 실시한다. 직접적 방안을 실시하는 데는 민간인과 KTEO의 활용도 가능하다. 간접적 방안으로 군축·전환합의시 전환대상무기를 식별가능하게 하고, 주요 무기에 훼손방지번호표를 부착하고 OSI 과정에서 점검하며, 군축·폐기합의시 폐기장소를 지정한다. 둘째, 상업위성의 공동활용 분야에서는 상업위성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센터를 판문점에 설립·운영한다. 셋째, 제3자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 혹은 미·러 정찰정보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이 한반도 지역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남북한측에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OSI, OSS 및 협력공중검사에서도 제3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CM 활동의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는 기존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새로운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4단계에서 실시하는 CD 방안으로서 이행중인 영공개방협정을 발전시켜서 항공정찰 영역을 상대지역 후방으로 확대된 헬기정찰영역 만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5) 제5단계: 평화공존체제 정착단계

제5단계에서는 CM 활동의 인지도 향상측면에서 제3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서 지역위성감시센터를 설립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지역평화체제 수립의 계기로 발전시킨다.

## VI. 결 론

1999년은 남북한이 각각 독립정부를 세운 지 반세기를 넘기는 첫 해임과 동시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에서 1년이 모자라는 해이다. 그 동안의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혼재하는 적대적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북한이 반세기 동안의 대결과과정에서 간헐적으로 협력을 추구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류·협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에 비하여 군사적 차원의 대화는 매우 제한되었다. 양측은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사협상을 진행한 바 없으며 제한적인 신뢰구축방안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생산육구가 존재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의 개념적 틀을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이 실천할 수 있는 포괄적 투명성 제고전략(CTES)을 제시하였다. CTES는 남북한이 처한 현 상황에서 바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임과 동시에, 앞으로 체결될 군비통제조약의 검증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주요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정치, 외교, 경제적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의지만으로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 군비통제와 군축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이행되거나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

서 개선되어 온 다양한 투명성 제고방안들을 네 가지 정보생산활동의 인지도 제고와 인센티브 향상이라는 논리적 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구성은 군사문제전문가들 뿐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다양한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각 방안들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적 투명성 제고방안들을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단계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재구성함으로써 구체적인 투명성 제고방안들을 실현가능성에 맞추어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래식 군사력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핵·화학·세균무기와 미사일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생산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투명성 제고전략을 이행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진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투명성 제고기술을 연구·개발중인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초청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군사적 투명성 제고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유관부처의 담당자들과 여러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적실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약 어 정 리

AAU	음향부가센서(Acoustic Add-on Unit)
ABM 조약	탄도미사일요격체제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TMS	이동물체추적감시기술(Authenticated Tracking and Monitoring System)
BTWC	세균·독성무기금지협정(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CBM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
CD	협력적 입증(Cooperative Demonstration)
CFE 조약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CM	협력적 감시(Cooperative Monitoring)
COMINT	통신정보(Communication Intelligence)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TEM	상호협력적 투명성 제고방안(Cooperative Transparency Enhancing Measure)
CTES	포괄적 투명성 제고전략(Comprehensive Transparency Enhancing Strategy)
CWC	화학무기금지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DIRID	방향성적외선침입센서(Directional Infra-red Intrusion Detector)
DMZ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ELINT	전자정보(Electronics Intelligence)
FROD	기능과 관련된 관찰상의 차이(Functionally Related Observable Differences)
GOP	경계·관측초소(Guard and Observation Post)
GRIT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상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HUMINT	인적 정보(Human Intelligence)
IAEA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MINT	영상정보(Image Intelligence)
INF	중거리 핵미사일폐기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 Europe)
INMARSAT	국제해양위성(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JCG	공동자문그룹(Joint Consultative Group)
JCIC	공동준수검사위원회(Joint Compliance and Inspection Commission)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TEO	한반도투명성제고기구(Korean Peninsula Transparency Enhancement Organization)
LTBT	핵실험부분금지조약(Limited Test Ban Treaty)
MAGID	자기센서(Magnetic Intrusion Detector)
MFO	다국적 감시군(Multilateral Force and Observers)
MINISID	소형지진파센서(Miniature Seismic Intrusion Detector)
MOMEPE	에쿠아도르·페루간 국경분쟁감시위원회(Military Observer Mission Ecuador-Peru)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RRC	핵위험감소센터(Nuclear Risk Reduction Center)
NSS	국가감시소(National Surveillance Station)
NTM	국가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OSD	현장검사장비(On-site Device)
OSI	현장검사(On-site Inspection)
OSS	상주감시소(On-site Station)
PICS	수동형적외선스캐너(Passive Infrared Confirming Scanner)
SALT	전략무기제한조약(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CC	상설협의기구(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FM	시나이야전파견대(Sinai Field Mission)
SIGINT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SCS	응력감응케이블센서(Strain Sensitive Cable Sensor)
SSM	시나이지원단(Sinai Support Mission)
START	전략무기감축조약(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STOL	이착륙이 용이한(Short Take-Off and Landing)
SVC	상설검증위원회(Standing Verification Committee)
UD	일방적 입증(Unilateral Demonstration)
UM	일방적 감시(Unilateral Monitoring)
UNEF	유엔비상군(UN Emergency Force)
UNSCOM	유엔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ssion)
UTEM	일방적 투명성 제고방안(Unilateral Transparency Enhancing Measure)
UNTSO	유엔휴전감독기구(UN Truce Supervisory Organization)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군비통제 검증 연구: 이론 및 역사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Duffy, Gloria *et al.* *Compliance and the Future of Arms Contro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El-Gamasy, Mohamed Abdel Ghani. *The October War: Memoirs of Field Marshal El-Gamasy of Egypt*.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1993.
- Jasani, Bhupendra and Toshiborni Sakata. eds. *Satellites for Arms Control and Crisis Monitor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Jones, Rodney and Mark McDonough. *Tracking Nuclear Proliferation: A Guide in Maps and Charts, 1998*.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8.
- Kissinger, Henry. *Years of Upheaval*. Boston: Little Brown, 1982.
- Lederman, Itshak.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Ph.D. Thesis. University of

- Maryland College Park, 1991.
- Lindblom, C.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 Mandell, Brian. *The Sinai Experience: Lessons in Multimethod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Ottawa: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Canada, 1987.
- Osgood, Charles.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 Schoeneman, J. Lee and Eric Fox, *Authenticated Tracking and Monitoring System (ATMS): System Description* (Albuquerque, New Mexic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December 1997).
- Siilasvuo, Ensio. *In the Service of Peace in the Middle East: 1967~1979*.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Tabory, Mala.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in the Sinai: Organization, Structure and Func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6.
- The United States Sinai Support Mission. *Peace in the Sinai*. Washington, D.C.: The U.S. Department of State, 1982~83.
- Vannoni, Michael. *Sensors in the Sinai: A Precedent for Regional Cooperative Monitoring*, SAND96-2574. Albuquerque, New Mexic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June 1998.
- \_\_\_\_\_, et al. *Confiden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 Conceptual Development for the Cooperative Monitoring of Limited-Force Deployment Zones*, SAND97-0583. Albuquerque, New Mexico: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April 1997.

Weber, Steve. *Cooperation and Discord in U.S.-Soviet Arms Contro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2. 논 문

남만권·김명진. “시나이협정 모델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방논집」, 제32호, 1995년 겨울.

전성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국의 대응전략.” 「국방경영정책 연구」, 1997년 11월.

Abbott, Kenneth. “‘Trust but verify’: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in arms control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6, Winter 1993.

Almquist, Peter. “The Vienna military doctrine seminar: flexible response vs. defensive sufficiency.”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3, April 1990.

Ball, Desmond. “Asia - signals intelligence in North Korea.”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8, no. 1, January 1, 1996.

Barbier, E. “Elephant ivory and tropical timber: the role of trade interventions in sustainable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vol. 4, Summer 1995.

Bermudez, Jr, Joseph.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nd infiltration operations.”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3, no. 6, June 1, 1991.

Chayes, Antonia and Abram Chayes. “From law enforcement to

dispute settlement: a new approach to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0.

Cheon, Seongwhun. "Financial crisis, arms control and ver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pared for the Fourth North Pacific Arms Control Workshop (NPACW IV) on *From Armistice to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Modelling Options for Effective On-going and Verification (OMV) of Compliance with Treaty Obligations*, sponsored by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Canada to be held from June 1~5, 1998 at Dunsmuir Lodge,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Canada.

\_\_\_\_\_. "The four party peace meeting proposal: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for Korean peace & unific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1996 Summer.

Florini, Ann. "A new role for transparenc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8, no. 2, August 1997.

Gallagher, Nancy.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why 'how much?' is not enough."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8, no. 2, August 1997.

George, Alexander. "Strategies for facilitating cooperation." in Alexander George, Philip Farley and Alexander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and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Glaser, Charles.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4/1995.

- Keohane, Robert.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 Kokoski, Richard. "National technical means." in Richard Kokoski and Sergey Koulik, eds.,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 Kolcum, Edward. "New sensors evaluated in Sinai buffer."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August 23, 1976.
- Larson, Deborah. "Crisis prevention and the Austrian State Trea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7.
- Lederman, Itshak. "The Arab-Israeli experience in verification and its relevance to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Occasional Paper 2*,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89.
- Lindsey, George. "Addressing aspects of mutual security and the element of surprise attack within the context of a bilateral Korean Peace Treaty." a paper presented at the 4th North Pacific Arms Control Workshop (NPACW IV) on June 2~5, 1998 at Victoria, Canada.
- Lowenthal, Mark and Joel Wit.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 1985.
- Mares, David. "Deterrence bargaining in the Ecuador-Peru enduring rivalry: designing strategies around military weakness." *Security Studies*, vol. 6, no. 2, Winter 1996/97.

- Milner, Helen.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strengths and weakness." *World Politics*, April 1992.
- Mitchell, Ronald. "Source of transparency: inform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2, 1998.
- Oelrich, Ivan. "The changing rules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confidence is still possible."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0.
- Osgood, Charles. "Suggestions for winning the real war with communis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December 1959, pp. 295~325.
- Palmer, David. "Peru-Ecuador border conflict: missed opportunities, misplaced nationalism and multilateral peacekeeping."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 World Affairs*, vol. 39, no. 3, Fall 1997.
- Sigal, Leon. "For sale: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NAPSNet Special Report*,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vember 11, 1998.
- Siilasvuo, Ensio. "Verification activities in UNEF II in Sinai." *Symposium on Verification of Disarmament in Europe, 1985*, Swedish National Defence Research Institute.
- Silverman, Wendy. "Talking 'Sufficiency' in the Hofburg Palace: the second seminar on military doctrine."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3, December 1991.
- Smithson, Amy and Seongwhun Cheon. "'Open Skies' over the Korean Peninsula: breaking the impasse." *Korea and*

*World Affairs*, Spring 1993.

Tietenberg, T. and D. Victor.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 tradable entitlement approach to controlling global warming." Paper prepared for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Laxenburg, Austria: IIASA, 1994.

Wilkening, Dean. "Monitoring bombers and cruise missiles."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in William Potter, ed.,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3. 기 타

<신문, 잡지 및 방송>

「시사저널」.

「조선중앙방송」.

「조선일보」.

「중앙일보」.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BBC News*.

*ITAR-TASS News Agency*.

Cheon, Seongwhun. "Crisis on Korean Peninsula." *Korea Herald*, April 15, 1998.

Gordon, Michael. "Russia and West reach accord on monitoring germ-weapon ban." *New York Times*, September 15, 1992, p. A6.



- Priest, Dana and Sandra Sugawara. "N. Korea Missile threatens nuclear pact." *Washington Post*, September 1, 1998, p. A15.
- Sanger, David. "North Korea site an A-Bomb plant, U.S. agencies say." *New York Times*, August 17, 1998.

<기타 문건>

-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1998년 4월.
-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n Evaluation of the U.S. Early Warning Systems in the Sinai*, Report ID-77-11. June 6, 1977.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Finding Report*. November 12, 1997.
-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 Rome: MFO, January 1998.
-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The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Servants of Peace*. June 1993, Rome.
- Verification in All Its Aspects, Includ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 of Verification*, UD Document A/50/377. September 22, 1995.
- Verification in All Aspects: A Comprehensive Study 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Verification Pursuant to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52(0)*. Ottawa: Canadian Government, April 1986.

## 부록 I. 시나이정전협정 I

1974. 1. 18 체결

- A.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유엔안보리가 요구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휴전을 엄격히 준수하며, 본 협정 서명 직후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모든 군사적 및 준군사적 행위를 삼가한다.
- B.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군사력은 다음 원칙에 따라 분리 배치된다.
1. 스웨즈운하의 동쪽에 배치된 모든 이집트군은 별첨 지도상에 A선으로 표시된 경계선의 서쪽에 재배치된다. 스웨즈운하와 비터호수의 서쪽에 배치된 모든 이스라엘군은 별첨 지도상에 B선으로 표시된 경계선의 동쪽으로 재배치된다.
  2. 이스라엘과 이집트 경계선 사이의 지역은 완충지대(Zone of Disengagement)로 불리우며, 이 지대에는 유엔비상군(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이 주둔한다.
  3. 이집트 경계선과 스웨즈운하 사이의 지역은 무기와 부대의 배치가 제한된다.
  4. 이스라엘 경계선(별첨 지도상의 B선)과 별첨 지도상에 C선으로 표시된 경계선 사이의 지역에는 무기와 부대의 배치가 제한된다.
  5. 상기 3항과 4항에 언급한 제한사항들은 UNEF에 의한 검사대상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대한 UNEF 연락장교의 배치와 UNEF 활동에 관한 기존절차는 계속 적용된다.
  6. 양측의 공군은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기측 경계선까지 비행할 수 있다.

- C. 본 협정에 규정된 군사력분리에 관한 세부 이행사항은 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회동하는 이스라엘·이집트 군사대표단에 의해 마련된다. 이들 대표단은 UNEF의 호위하에 Kilometer 101 협상에 의하여 본 협정이 서명된 후 48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양측 대표단은 5일 이내에 이 임무를 완료한다. 군사력분리작업은 군사대표단의 실무작업 완료후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본 협정 서명이후 7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군사력분리과정은 작업 개시후 4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D. 본 협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최종적인 평화협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안보리결의 338호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제네바회의의 기본틀 내에서 하나의 최종적이고 공정하며 공고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 부록 II. 시나이정전협정 II

1975. 9. 4 체결

### 1. 이집트·이스라엘 협약 부문

이집트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제 1 조

중동지역 국가간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이 아닌 군사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 제네바 평화회의의 틀에 기초하여 1974년 1월 18일 양국이 체결한 1차 협정에서 1973년 10월 22일의 안보리결의안 338호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공고한 평화정착에 도달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본 협정은 그러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 2 조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군사적 봉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제 3 조

- (1) 양측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정전협정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하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및 준군사적 행위를 삼간다.
- (2) 양측은 또한 부록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의정서로 명명하며 본 협정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

제 4 조

A. 양측의 군사력을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배치한다.

- (1) 모든 이스라엘군은 별첨 약도상에 J선과 M선으로 지정된 경계선의 동쪽에 배치된다.
- (2) 모든 이집트군은 별첨 약도상에 E선으로 지정된 경계선의 서쪽에 배치된다.
- (3) 별첨 약도상에 E선과 F선으로 지정된 두 경계선 사이의 지역과 J선과 K선으로 지정된 두 경계선 사이의 지역에는 무기와 부대의 배치가 제한된다.
- (4) 상기 (3)에서 언급한 지역내에서의 무기와 부대에 대한 배치 제한은 별첨 부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합의한다.
- (5) 별첨 약도상에 E선과 J선으로 지정된 두 경계선 사이의 지역은 완충지대가 된다. 이 지대에서는 유엔비상군(UN Emergency Forces)이 1974년 1월 18일 이스라엘·이집트간 협정에 따라 그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6) 별첨 약도상에 지정된 바와 같이 E선의 남쪽과 M선의 서쪽 지역에는 별첨 부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사력 배치를 금지한다.

B. 새로운 경계선에 관한 세부사항, 부대의 재배치와 재배치 시간, 무기와 부대의 제한, 공중정찰, 조기경보·감시장치의 운용과 도로의 사용, 유엔비상군의 기능 및 기타사항은 본 협정 부록의 규정과 별첨 약도를 참고하여 정해지며 본 협정의 일부로서 양측이 체결할 의정서의 내용이 된다.

### 제 5 조

유엔비상군은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본부대로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활동의 기본지침은 매년 확정된다.

### 제 6 조

양측은 본 협정을 준수하는 기간 동안 하나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유엔비상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임무의 주요 협조자 자격으로서 활동한다. 공동위원회는 별도의 의정서에서 수립된 절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 제 7 조

군사적 용도가 아닌 화물의 이스라엘 지역 통과는 스웨즈운하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 제 8 조

- (1) 양측은 본 협정을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한다.
- (2) 양측은 유엔 안보리결의안 338호에 의거하여 제네바 평화회의의 틀내에서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 제 9 조

본 협정은 서명 직후부터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2.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미국측 제안

이스라엘·이집트간의 협정(이하 기본협정으로 명명) 제4조와 관련된 조기경보체제에 관하여 기본협정의 일부로써 미국은 다음사항을 제안한다:

### [1]

별첨 약도에 제시된 지역내에서 기본협정 제4조에 따라 수립될 조기경보체제는 미국이 책임지며 세부지침은 다음사항을 따른다.

- A. 전략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2개의 국가감시소(national surveillance station)를 운영하되 1개는 이집트요원이, 다른 1개는 이스라엘요원이 운영한다. 이들의 위치는 기본협정의 별첨 약도에 표기된 바와 같다. 각 국가감시소에는 250명 이내의 기술·행정요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해당 국가감시소내에 육안관측과 기술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B. 미국은 국가감시소의 전술조기경보와 검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감시소를 합의된 약도에 표기한 바와 같이 미들라·기디 도로상에 설치한다. 이들 감시소는 미국의 민간요원이 운용한다. 또한 기디·미들라 도로의 양끝과 감시소 부근의 도로상에 4개의 무인센서지대를 설치한다.

### [2]

미국 국적의 민간요원들은 국가감시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A. 미국 국적의 감시요원은 상기 [1] A에서 언급한 2개의 국가감시소의 운영과 주변의 이동상태를 검증하고 인가된 육안관찰 및 기술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의심스러운 사항을 탐지할 경우 이를 즉시 기본협정 당사국과 UNEF에 보고한다.
- B. 미국 국적의 요원은 상기 [1]B에서 언급한 각 감시소에 주둔하여 각 통로상에서 UNEF가 아닌 다른 부대의 이동과 이동준비 상태를 즉시 기본협정 당사국과 UNEF에게 보고한다.
- C. 본 제안이 규정한 기능에 할당되는 미국 국적의 민간요원 수는 200명 이내여야 한다. 오직 민간요원만이 본 제안이 규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3]

본 제안이 규정한 국가감시소 및 기타 관련시설에서 방어를 위한 소형무기 이외에 다른 어떤 무기도 반입·사용할 수 없다.

[4]

조기경보체제에 종사하는 미국 국적의 감시요원은 해당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허락된다

[5]

미국과 그 요원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6]

미국 국적의 감시요원은 해당지역의 범죄, 민법,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하여 사법권의 면책을 받으며, 1957년 2월 13일 UNEF 협정이 규정한 기타 면책특권을 갖는다.



[7]

미국은 기본협정 기간내에 위에 언급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확인한다.

[8]

미국은 본 제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또는 업무지속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자국 요원을 철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미국은 기본협정 당사국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에 이를 통고한다. 만약 기본협정 당사국들이 미국에게 본 제안에 따른 임무를 종결하도록 요청할 경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자신의 임무종결로 간주한다.

[9]

감시소의 위치에 관한 기술적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3. 시나이정전협정 부록

시나이정전협정 서명후 5일 이내에,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의정서를 준비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두 당사국의 군사실무팀이 만난다. 협정의정서의 준비와 그 이행을 촉진하고 휴전상태의 면밀한 준수와 기타 합의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두 당사국은 실무팀을 위한 지침으로서 기본협정의 일부가 되는 다음 원칙에 합의하였다.

## 1. 선과 지역의 정의

기본협정 제4조에 언급된 부대배치선, 부대·무기의 배치제한지역, E선의 남쪽과 M선의 서쪽 해당지역, 기타 지정지역, 일반적인 사용도로 및 기타사항은 별첨 약도(1:10만 미국판)상에 표기된다.

## 2. 완충지대

- (1) 완충지대에 대한 접근은 실무단과 UNEF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UNEF의 통제를 받는다.
- (2) 각 당사국의 항공기는 각 당사국의 전방 경계선까지 자유로운 비행이 허락된다. 각 당사국의 정찰기는 합의된 계획표에 따라 E선과 J선 사이의 완충지대 중간선까지는 비행이 가능하다.
- (3) E선과 J선 사이의 완충지대 내에서, 본 협정의 일부인 별도의 제안이 세부적으로 명기한 바와 같이, 미국 민간요원에게 위임된 조기경보체제가 기본협정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4) 인가된 요원은 조기경보체제 안팎으로의 이동을 위해 완충지대로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이동의 통제는 UNEF에 의해 수행된다.

## 3. E선의 남쪽지역과 M선의 서쪽지역

- (1) 이 지역에서 유엔비상군은 여하한 유형의 정규군사력, 준군사력 및 군사시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갖는다.
- (2) 이집트민간인과 제3국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전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완충지대 2A, 2B 및 UN기지 이외에 위에 언급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생업에 종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집트의 민정경찰은 의정서가 규정한 무기와 장비를 소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정상적인 민간경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3) 이 지역에 대한 지상, 공중, 또는 해상 경로상의 출입은 UNEF의 체크포인트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UNEF는 의정서에 명시된 정확한 위치에 따라 도로, 지역을 분리하는 경계선과 기타 지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 (4) 영공과 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수단은 실무팀이 합의한 대로 해당 지역의 민간활동에 포함되는 비무장 이집트 민간선박과 비무장 민간헬기·수송기로 제한한다.
- (5) 이스라엘측은 기존의 모든 민간시설과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한다.
- (6) 스웨즈만에 인접한 해안도로의 일반적인 사용절차는 실무팀과 의정서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

#### 4. 공중감시

이미 실시중인 절차와 동일하게 협정 대상지역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공중정찰을 실시한다. 공중정찰임무는 각 당사국 또는 UNEF의 사전 요청에 의거 통상 7일에서 10일에 한번 정도 수행된다. 미국은 임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이스라엘, 이집트, 중동의 유엔평화유지단 단장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 5. 부대와 무기의 제한

- (1) 배치제한지역 내에서 부대·무기에 대한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8개 보병대대
  - 전차 75대
  - 야포 60문(구경 120mm 이상 박격포 포함, 사거리 12km 이하)
  - 병력 8,000명 이하
  - 상대방의 경계선에 도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무기 배치금지
  - J선과 K선 사이의 지역, A선과 E선 사이의 지역에 합의된 수준 이상의 부대와 군사시설의 구축 금지
- (2) 부대·무기 배치제한지역 이외의 주요 제한사항
  - 지역내 상대방 경계선에 도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무기의 배치 금지
  - K선 동쪽과 F선 서쪽 10km까지의 지역에 대공미사일 배치 금지
- (3) 유엔평화유지군은 이들 지역내에 합의된 배치제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실시한다.

## 6. 이행과정

기본협정, 부록 및 의정서가 규정한 부대 재배치의 세부 이행절차와 시간, 유전지대의 반환 및 기타 조정사항은 실무팀에 의해 결정된다. 실무팀은 이집트 부대의 E선까지의 단계별 이동과 이스라엘 부대의 J선까지의 단계별 이동을 포함한 모든 단계별 부대재배치 과정

을 결정한다. 그 첫 단계는 유전지대와 부대시설을 이집트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필요한 기술자의 참여로 의정서 서명 이후 2주 내에 개시되고 개시후 8주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세부 작업단계는 실무팀에서 수립한다.

부대재배치의 이행은 의정서 서명후 5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부록 III.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1979. 3. 26 체결

### 1. 평화조약 본문

#### 前文

유엔안보리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기초로 하여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항구적인 중동평화 확립의 긴급한 필요성을 확신하고 1978년 9월 17일의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중동평화의 기틀을 견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위에서 적절히 표현된 기틀이 이스라엘·이집트간의 평화에 바탕을 두고 평화교섭을 이행하려는 다른 아랍제국과 이스라엘간의 평화에도 기초인 점에 유의하고, 중동 제국간의 전쟁상태를 종결시켜서 동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평화의 확립을 추구하며,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평화조약 체결이 이 지역의 전면적 평화와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일보임을 확신하고, 분쟁에 관련된 다른 아랍국가들이 상기 원칙에 의거하여 이스라엘과의 평화교섭에 참가하기를 호소한다.

동시에 유엔헌장과 평화 시기의 국제관계를 규정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관련국들이 우호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이집트·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기틀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은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 제 1 조

1.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양국간의 전쟁상태는 종결되고  
평화가 확립된다.
2. 이스라엘은 부속의정서에 따라 자국의 모든 군대와 민간인을 시나  
이반도로부터 이집트와 구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간의 국경선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이집트는 시나이반도에서 완전한 주권을 회  
복한다.
3. 부속의정서상에 규정한 잠정철수 완료와 동시에 양국은 제3조 3항  
에 의거하여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한다.

### 제 2 조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항구적인 국경은 가자지구의 최종적인 지위  
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부속의정서 II의 지도표시에 따라서  
이집트와 구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간에 승인된 국경선으로 한다.  
양국은 이 국경선에 대한 불가침선언을 확인한다. 쌍방은 영해, 영공  
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영토보전을 존중한다.

### 제 3 조

1. 양국은 유엔헌장과 평화시의 국제관계를 규정한 국제법의 모든 원  
칙을 상호 적용한다. 특히,
  - A. 양국은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이를  
존중하며,
  - B. 양국은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이를 존중하며,
  - C. 양국은 무력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않으며 당사국간의 모  
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주민, 시민, 재산에 관한 교전, 적대, 폭력행위나 위협이 자국 영토, 자국이 관할하고 있는 군대, 또는 자국 영토 내에 주둔하는 어떤 군대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국에 대한 교전, 적대, 전복, 폭력행위나 위협을 위한 결사, 교사, 선동, 원조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행위를 범한 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한다.
3. 쌍방은 양국간에 수립되는 정상적인 관계가 완전한 승인, 외교적·경제적·문화적 관계수립, 경제적 배척의 종식 및 국민과 재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차별적인 장벽의 철폐를 포함하며, 양국 시민이 적절한 법적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합의한다. 본 조약의 기타사항의 이행과 병행하여 이러한 관계의 달성과정은 부속의정서 III에 설명되어 있다.

#### 제 4 조

1. 상호주의를 기초로 하여 양국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영토내의 배치제한지대, 유엔군 및 감시요원(그 성격과 시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속의정서 I에 기술), 기타 양국이 합의한 안전보장조치를 포함하여 쌍방 합의에 의거한 안전보장조치를 확립한다.
2. 양국은 부속의정서 I에 규정된 지역에 대한 유엔파견단의 주둔에 합의한다. 양국은 유엔파견단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유엔파견단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해 승인되고,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철수할 수 없음에 합의한다.
3. 본 조약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의정서 I의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4. 본 조약의 1, 2항에 규정된 안전보장조치는 당사국 일방의 요청으로 재검토되고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된다.

### 제 5 조

1.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과 이스라엘로 출입하는 선박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888년 콘스탄티노플조약에 따라 스웨즈운하 및 동 운하에 이르는 스웨즈만과 지중해에 대한 자유항해권을 갖는다. 이스라엘 국민, 선박 및 화물은 이스라엘로 출입하는 인원, 선박 및 화물과 함께 운하사용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2. 양국은 티란해협 및 아카바만을 모든 국가에 대하여 방해받지도 않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제수로로 간주한다. 양국은 티란해협과 아카바만을 통과하여 양국으로 향하는 항해와 비행의 권리를 존중한다.

### 제 6 조

1. 본 조약은 유엔헌장에 따른 양국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해석도 할 수 없다.
2. 양국은 특정 제3자가 행동을 취하든 취하지 않든간에 또한 본 조약 이외의 어떠한 문서로부터도 독립하여, 본 조약이 규정한 쌍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3. 쌍방은 각각 가입하고 있는 다자조약의 규정을 양국관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유엔사무총장과 조약의 수탁기관에 적절히 통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양국은 본 조약과 상반되는 어떠한 의무도 갖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5. 본 조약에 따른 양국의 의무와 기타 의무 사이에 대립이 발생할 경우, 유엔헌장 제103조에 따라 본 조약에 의한 의무가 구속력을 갖고 이행되어야 한다.

### 제 7 조

1. 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2.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분쟁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 제 8 조

1. 양국은 모든 재산권청구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 9 조

1. 본 조약은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한다.
2. 본 조약은 1975년 9월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정전협정을 대체한다.
3. 본 조약의 모든 문서, 부속의정서 및 지도는 본 조약을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4. 유엔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필하기 위하여 본 조약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각각 정본인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 본으로 1979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체결한다. 해석상 어떤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 2. 평화조약 부속의정서 1

### 이스라엘 철수와 안전보장조치에 관한 의정서

#### 제 1 조 철수의 개념

1.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와 민간인을 시나이반도에서 철수시키는 작업을 본 조약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한다.
2.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수는 당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의정서와 지도 #1에 따라 결정된 군사적 조치와 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시나이반도 철수는 다음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A. 지도 #2에 표시된 엘 아리쉬 동쪽에서 라스무하마드에 이르는 선까지의 중간철수는 본 조약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 B. 시나이반도에서 국경선까지의 최종철수는 본 조약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한다.
4. 철수기간중의 활동과 일정을 감시·조정하고, 제3항에서 확인된 기간 내에 필요한 계획과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약 비준서 교환 직후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본 공동위원회에 관해서는 부속문서 제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공동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철수가 완료될 때 해체된다.

#### 제 2 조 최종 철수선과 지역의 확정

1. 최종철수 완료후에 이스라엘·이집트 쌍방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도에 표시된 여러 경계선과 지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된다.

A. 지역 A

- (1) 지역 A는 지도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A선의 서쪽, 스웨즈운 하의 동쪽 및 스웨즈만 연안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 (2) 지역 A에는 이집트군 기계화보병 1개사단과 그에 따른 장비 및 야전축성이 설치된다.
- (3) 기계화보병사단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3개 기계화보병여단
  - 1개 기갑여단
  - 126문 이하의 야포를 보유한 7개 야전포병대대
  - 개인용 지대공미사일과 구경 37mm 이상의 대공포 126문 이하를 보유한 7개 대공포대대
  - 230대 이하의 전차
  - 480대 이하의 각종 병력수송용 장갑차량
  - 총 22,000명 이하의 병력

B. 지역 B

- (1) 지역 B는 지도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동쪽은 B선, 서쪽은 A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 (2) 경화기와 차량을 보유한 이집트 4개 국경경비대대가 지역 B 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민정경찰을 지원하고 안전보장을 담당한다.
- (3) B 지역의 해안에는 제한된 사거리의 소형무기만을 보유한 지 상국경경비대의 해안경계초소를 설치할 수 있다.
- (4) 지역 B에는 위의 4개 국경경비대대용 군사시설이 설치된다.

C. 지역 C

- (1) 지역 C는 지도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서쪽은 B선, 동쪽은

국경선 및 아카바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 (2) 지역 C에는 유엔군과 이집트 민정경찰만이 주둔할 수 있다.
- (3) 이 지역에서 이집트 민정경찰은 경무장한 상태로 정상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 (4) 지역 C에는 유엔군이 배치되어 이 부록의 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5) 유엔군은 지도 #1에 표시한 주둔지역에 위치한 다음 캠프에 주로 주둔하되 상세한 위치는 이집트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a) 지중해와 국경선 인접해서 20km에 지점에 위치한 시나이 지역
  - (b) 사람 엘 사이크 지역

D. 지역 D

- (1) 지역 D는 지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쪽은 D선과 서쪽은 국경선으로 둘러 쌓인 지역이다.
  - (2) 이 지역에는 제한된 이스라엘의 군사력, 즉 4개의 보병대대와 그 군사시설, 야전축성 및 유엔참관단이 배치된다.
  - (3) 지역 D의 이스라엘 군사력에는 전차, 야포 및 대공미사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개인용 지대공 미사일은 가능)
  - (4) 이스라엘의 4개 보병대대는 장갑차 180대와 병력 4,000명으로 구성된다.
2. 국경선을 넘어 상대방측으로의 입국은 양측이 지정한 입국검문소의 통제하에 검문소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그같은 입국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3. 이 부록에서 특별히 허용한 야전축성, 군사시설, 병력 및 무기만이 이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 제 3 조 항공레짐

1.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정찰기의 비행은 각각 지역 A와 D에서만 가능하다.
2. 오직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비무장항공기만 각각 지역 A와 D에 주둔할 수 있다.
3. 지역 B에서는 이집트의 비무장 수송기만 이착륙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운영·유지할 수 있는 비무장수송기는 최대 8대이다. 이집트 국경수비대는 지역 B에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무장헬기를 보유할 수 있다.
4. 이집트 민정경찰은 지역 C에서 정상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무장헬기를 보유할 수 있다.
5. 배치제한지대에는 민간비행장만 건설할 수 있다.
6. 이 조약의 각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이 부록에 의해서 특별히 허용되는 군사항공정찰만 배치제한지대와 양국의 영해와 영공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 4 조 해상레짐

1. 이스라엘·이집트는 각각 지역 A와 D의 해안을 따라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함정을 운용할 수 있다.
2. 이집트의 경무장한 해안경비정은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B 지역 영해에 주둔하여 작전할 수 있다.
3. 소형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경무장한 이집트 민정경찰은 지역 C의 영해 내에서 정상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4. 이 부록의 어떠한 규정도 상대방의 함정 무해통항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5. 지역 내에는 오직 민간용 항구와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6. 이 조약의 타 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부록에서 특별히 허용된 해군활동만 이 지역과 영해에서 허용된다.

### 제 5 조 조기경보체제

이스라엘·이집트는 각각 지역 A와 D에 조기경보체제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 6 조 유엔활동

1. 양국은 이 부록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병력과 참관단을 보내줄 것과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유엔에 요청할 수 있다.
2. 유엔군과 참관단에 대하여 양국은 필요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 a. 국경선과 B선, 그리고 C지역 내에서의 검문소 운영, 정찰을 위한 순찰 및 관측소 운영
  - b. 이 부록의 이행에 대한 주기적 검증은 양국이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월 2회 이상 실시
  - c. 상대방의 요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추가 검증 실시
  - d. 평화조약 제5조에 따라 티란해협의 항해자유 보장
3. 본 조에서 합의한 사항은 지역 A, B, C에서는 유엔군이 수행하고, 지역 D에서는 유엔참관단이 수행한다.
4. 유엔검사팀에는 양국의 연락장교가 동반한다.
5. 유엔군과 참관단은 활동결과를 양측에 통보한다.
6. 유엔군과 참관단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시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7. 유엔군과 참관단에게 국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8. 양국은 유엔군과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는 국가에 관해 합의한다. 유엔군과 참관단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차출한다.
9. 양국은 유엔이 그 책임의 효과적 수행을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지휘협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

### 제 7 조 연락체제

1. 공동위원회가 해체되는 즉시 양국간 연락체제가 수립된다. 이 체제는 부록의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이행중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기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양측의 군 고위당국자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실수나 오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 이집트의 연락사무소는 엘아리쉬에, 이스라엘의 연락사무소는 베르세바에 각각 둔다. 연락사무소는 1명의 책임자를 두고 그 예하에 다수의 지원장교를 둔다.
3. 두 사무소간에는 직통전화를 설치하며 또한 유엔군사령부와도 직통전화를 가설한다.

### 제 8 조 전쟁기념물 존중

각국은 상대방이 장병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쟁기념물 즉, 이스라엘이 시나이지역에 세운 것과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세운 것을 좋은 상태로 보존할 것을 약속하고 이러한 유적지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 제 9 조 경과조치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의 철수와 최종철수에 앞서 양측 군과 유엔이 취하는 행동은 첨부된 별첨과 지도 #2 및 #3에 따른다.

## 3. 평화조약 부속의정서 1의 부속문서

### 시나이반도에서의 행동규정

#### 제 1 조 철수원칙

1. 이스라엘군의 시나이반도 철수는 부속의정서 1의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철수에 관한 설명과 철수시기는 본 부속문서에 포함된다. 그 이상 상세한 것은 최소한 각 단계별 철수 1개월 전에 공동위원회가 결정하여 중동주둔 유엔군 수석조정관에게 제출한다.
2. 쌍방은 일련의 군사행동에 관하여 다음 원칙에 합의한다
  - A. 본 조약 제9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5년 9월 이스라엘·이집트 간의 정전협정으로 정해진 현재의 경계선으로부터 잠정철수선까지 이스라엘이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본 부속문서에 별도로 규정된 군사조치를 제외하고 동 정전협정에 바탕을 둔 모든 군사협정은 효력을 지속한다
  - B.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면 유엔군은 양국군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지도 #2, #3에 각각 표시된 잠정완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철수지역에 주둔한다. 유엔군의 배치는 동 지역으로의 다른 어떤 요원의 활동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C. 지역 A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면 그 이후 7일 이내에 본 부속문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집트군이 배치된다.
- D. 지역 A 또는 지역 B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면 그 이후 7일 이내에 본 부속문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에 표시된 잠정완충지대까지 이집트 국경부대가 배치될 수 있고, 국경부대는 부속의정서 1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E. 유엔군이 주둔한 후에는 정상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집트 민정경찰이 이 지역으로 진입한다.
- F. 이집트의 해군부대는 본 부속문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스웨즈만에 배치된다.
- G. 이스라엘이 잠정철수선까지 철수를 완료하면 상기 활동을 제외한 이집트군의 배치와 부속의정서 1에 규정된 활동이 철수지역에서 실시된다.

### 제 2 조 잠정철수단계

- 1. 잠정철수선까지의 철수는 본 조항에 규정되고 지도 #3에 표시된 세부단계를 통해 실시된다. 각 세부단계는 본 조약비준서 교환일로부터 규정된 시한내에 완수되어야 한다.
  - A. 제1단계: 이스라엘군은 2개월 이내에 지도 #3에 I 지역으로 표시된 엘아리쉬시와 비행장을 포함한 엘아리쉬 지역에서 철수한다.
  - B. 제2단계: 이스라엘군은 3개월 이내에 1975년 정전협정선과 지도 #3에 II 지역의 A선 간의 지역에서 철수한다.
  - C. 제3단계: 이스라엘군은 5개월 이내에 지도 #3에 III 지역으로

표시된 II지역의 동부 및 남부지역에 철수한다.

- D. 제4단계: 이스라엘군은 7개월 이내에 지도 #3에 IV지역으로 표시된 시나이반도 남단에서 철수한다.
  - E. 제5단계: 이스라엘군은 9개월 이내에 지도 #3에 V지역으로 표시된 산타카트리나지역과 기디 및 미틀라 지역을 포함한 잠정철수선 서쪽의 기타지역에서 철수한다. 이로써 잠정철수선까지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완료된다.
2.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에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 A. 잠정철수 완료시까지 I 지역내 지역 A에는 1975년 정전협정에 따른 시나이반도 주둔 이집트군의 1/2 이하를 배치한다. 그 이후 부속의정서 1의 제2조에 규정된 이집트군은 잠정완충지역 경계선까지 지역 A에 배치된다.
  - B. 2~4단계 철수가 각각 완료되면 II, III, IV지역의 연안을 따라 부속의정서 1의 제4조에 규정된 이집트 해군의 활동이 개시된다.
  - C. 1단계 철수가 완료되면 부속의정서 1의 제2조에 규정된 이집트 국정부대중 1개 대대가 I 지역에 배치된다. 2단계 철수가 완료되면 두 번째 대대가 II 지역에 배치된다. 3단계 철수가 완료되면 세 번째 대대가 III 지역에 배치된다.
3. 1975년 정전협정상의 완충지역인 I 지역내의 유엔군은 1단계 철수가 완료되면 상기 이집트군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재배치되거나 본 부속문서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잠정철수 완료시까지 잔여지역에서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 활동을 감독한다.
4. 이스라엘 호송대는 이스라엘군의 병력과 장비를 소개시키기 위하여 잠정철수 완료시까지 엘아리쉬 동부의 주요 도로교차점 남쪽과 동쪽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동 호송대는 이집트 연락단과 유엔군에 4시간 이전에 통보하고 주간에만 통과하며, 유엔군의 호위

를 받고 일정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는다.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집트 연락장교가 호위대에 동승한다. 공동위원회는 호송을 위한 다른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제 3 조 유엔군

1. 양국은 이스라엘의 최종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본 부속문서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의 배치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현 유엔비상군의 재배치에 합의한다.
2. 유엔군은 본 부속문서 규정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본 조약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3. 본 부속문서 1조와 2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군이 배치될 때, 유엔군은 본 부속문서에 따라 배치제한지대에 검문소, 정찰대, 감시소를 설치한다. 잠정완충지대에서 유엔군의 기능은 본 부속문서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 제 4 조 공동위원회와 연락업무

1. 본 조약 제4조에 언급된 공동위원회는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나이지역에서 최종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활동한다.
2. 공동위원회는 고위장교를 수석으로 하는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유엔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때나 당사국 일방이 유엔의 출석을 요구할 때 유엔대표를 초청한다.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공동위원회는 부속의정서 1과 본 부속문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을 감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간 합의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A. 본 부속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행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 B. 부속의정서 1과 본 부속문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권고하고, 유엔군과 참관단이 보고하는 모든 위반사항을 토의하며, 미해결사항은 이스라엘·이집트 정부에 통보한다.
  - C. 유엔군과 참관단의 임무 완수를 지원하며, 부속의정서 1과 본 부속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가 통보했을 때 정기적인 검사일정을 결정한다.
  - D. 부속의정서 1과 본 부속문서에 규정된 국경선과 모든 경계선 및 각 지역을 확정한다.
  - E. 시나이반도의 주요시설과 인도를 감독한다.
  - F. 이집트·이스라엘 양국 군인들의 행방불명과 유해의 발견 및 반환에 관한 조치를 결정한다.
  - G. 부속의정서 III의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엘아리쉬·라스무하마드선을 따라 검문소를 설치·운용한다.
  - H. 상설연락단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이집트 대표 각 1명으로 합동연락단을 구성하며 상설연락단은 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 I. 조약을 이행하는 유엔군지휘관과 연락을 취하며, 공동위원회를 통해 특정지역에 주둔한 유엔군 및 특정지역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참관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내의 조정·협력태세를 유지한다.
  - J. 양국이 합의하에 제시하는 기타 문제를 토의한다.
4. 공동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매월 1회 개최한다. 당사국 어느 일방 또는 유엔군지휘관이 특별회의를 요청해 올 경우 그 회의는 24시간 이내에 소집된다.

5. 공동위원회는 잠정철수 완료시까지의 완충지대내에서 그 후에는 엘아리쉬와 베르세바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회 회의는 본 조약 발효후 2주일 이내에 개최된다.

### 제 5 조 잠정완충지대와 그 역할에 관한 규정

1. 유엔군이 이스라엘·이집트 양측을 분리시키기 위해 설정한 잠정완충지대는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잠정철수선 후방에서의 배치가 완료된 후, 지도 #2에 표시된 잠정철수선 서쪽에 인접하여 설정된다. 소형무기를 휴대한 이집트 민정경찰은 이 지역내에서 일상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2. 유엔군은 본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잠정완충지대내에서 검문소, 경찰대 및 감시소를 운영한다.
3. 양국이 합의하고 공동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결정된 사항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측 요원은 지도 #2에 T1, T2, T3, T4로 지정된 4개의 특정지점에서 다음 원칙하에 군사기술시설을 운영한다.
  - A. 기술시설에는 자체방호용으로 필요한 소화기(연발권총, 라이플총, 경기관총, 수류탄, 탄약)로 무장한 기술·행정요원이 배치된다. 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T1: 150명 이내
    - T2 및 T3: 350명 이내
    - T4: 200명 이내
  - B. 이스라엘 요원은 개인용무기의 휴대가 허용된 장교를 제외하고는 시설지역 외부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C. 이스라엘·이집트 쌍방이 인정하는 제3자만이 완충지대내의 기술시설을 출입·조사한다. 제3자는 적어도 매월 1회씩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 조사는 이들 시설, 무기, 인원의 운영성

격을 검증한다. 제3자는 동 시설내의 육안 및 전자정찰 또는 통신기능에 변동이 있을 때에 즉시 쌍방에 통보한다.

D. 동 시설에 대한 보급, 기술, 관리 목적의 방문과 인원 및 장비의 교체는 유엔군의 검사를 받은 이후 검문소로부터 기술시설 지역까지 유엔군의 호위하에 이루어진다.

E. 이스라엘이 동 시설과 요원의 적절한 활동에 필요한 물자들을 기술시설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F.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 사항이 허용된다.

(1) 동 시설내에서 소형무기, 일반 용기는 물론 시설유지에 필요한 관리용 차량과 이동식 장비를 유지한다. 차량은 일체 무장하지 않는다.

(2) 동 시설과 완충지대내에 동 시설을 위한 도로, 수도, 통신용 케이블을 유지한다. 3개 시설지점에서 동 시설을 유지하는 데 2대 이내의 비무장차량, 중장비를 포함하여 필요 장비를 휴대한 12명 이내의 비무장요원의 배치가 허용된다. 이에 대한 정비작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매주 3회 실시하고, 4시간 전에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정비단은 유엔군의 호위를 받는다.

G. 기술시설에 대한 출입은 주간에만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1) T1: 유엔검문소를 통과하고 지도 #2에 표시된 아부아베일과 161km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경유한다.

(2) T1, T2: 유엔검문소를 통과하고 완충지대를 거쳐 지도 #2에 표시된 제벨카트리나로 향하는 도로를 경유한다.

(3) T2, T3, T4: 공동위원회가 합의한 비행약도를 따라 회랑지대를 비행하는 헬리콥터를 이용한다. 헬리콥터는 시설의

부에 위치한 착륙장에서 유엔군의 검문을 받는다.

H. 이스라엘은 시설의 출입을 필요로 하는 계획된 행동을 최소한 4시간 이전에 유엔군에 통보한다.

I. 이스라엘은 유엔군에 통보를 받은 후 언제라도 환자와 부상자를 소개시킬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와 의료진을 호출할 수 있다.

4. 본 조항의 상기 원칙과 양 당사자간의 조정이 필요한 기타사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한다.
5. 이스라엘군이 잠정철수선으로부터 철수했을 경우 혹은 양국이 합의한 시기에 기술시설을 철수시킨다.

#### 제 6 조 유엔활동

시설과 군사장애물의 처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양국간에 결정된다.

1. 이집트측의 관리로 넘어가는 구조물과 물품에 관하여 합의하고 관리이양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모든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2주전까지 이스라엘·이집트의 연락·기술반이 모든 해당 기지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 때 이스라엘은 각 기지내의 시설과 물품의 처분계획을 신고한다.
2. 이스라엘은 그들이 동의한 하부구조물, 시설, 기타사항(특히 공항, 수로, 급수시설, 항구)을 기존상태대로 이집트에게 이양할 것을 보장한다.
3. 이스라엘이 엘아리쉬와 엘토르 주변의 군용수원을 양도할 때 이집트 기술반은 공동위원회가 사전 결정한 질서있는 절차에 따라 이 시설과 부속장비를 인수한다. 공동위원회에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선 안으로 철수하는 동안 모든 급수지에서 현 시점에서 가능한 만큼의 물을 계속



공급할 것을 보증한다.

4. 이스라엘은 철수하려는 지역과 인접지역에서 다음 사항에 따라 장애물이나 지뢰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장애물을 최선을 다하여 제거 혹은 파괴한다.
  - A. 우선 인구밀집지역, 도로, 주요기지, 설비의 주변지역에 있는 군사장애물을 제거한다.
  - B. 철수 이전에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지뢰에 대하여 이스라엘군은 유엔군 진주 15일전까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집트와 유엔에게 상세한 지도를 제공한다.
  - C. 유엔군이 사전 제출된 이집트의 계획에 따라 장애물 제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지역으로 진주한 이후에 이집트 군사 기술자가 동 지역으로 진입한다.

#### 제 7 조 정찰활동

1. 철수기간중 동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활동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A. 양국은 이스라엘이 최종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사전 결정된 합의에 따라 정찰비행을 계속하도록 미국에 요청한다.
  - B. 병력과 무기에 대한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비행은 한정된 군사지역에서 군비제한상태를 감시하며, 부속의정서 1의 제2조와 본 부속문서 제2조 및 지도 #2, #3에 나타난 지역에서 철수한 이스라엘 병력이 경계선 후방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 C. 부속의정서 1과 본 부속문서에서 양국이 규정한 주요 부분에 관해서만 보고된다.
2. 양국은 기대와 미들라 동쪽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사전합의에 의해 시나이파견대가 활동을 계속하도록 요청한다.

### 제 8 조 이집트의 주권행사

이집트는 본 조약 제1조에 규정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동시에 시나이반도내의 철수지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발간예정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	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b>■ 연례정세보고서</b>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b>■ 학술회의 총서</b>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b>■ 통일문화시리즈</b>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b>■ 논총</b>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전화: 901-2559, FAX: 901-2547)

